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925-01



#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 결과보고서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일러두기

- 본 보고서는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과업 내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의 연구정보 유출 피해 경험 관련 항목의 조사결과는 전체 응답 기업 중 연구정보 유출을 경험한 기업이 없어 본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 본 조사의 기준시점은 2021년 말 기준, 최근 5년간('17~'21년)입니다.
- 척도 문항의 경우 평가점수(5점, 11점 척도)를 100점 또는 1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문에 제시된 차트 및 통계표의 수치는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 항목의 합이 전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조사 결과 값이 0이거나 0의 근사 값인 경우
  - [-] 응답자가 없어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은 경우
- 통계표 내 배경색과 밑줄로 표시된 강조 표시는 세부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응답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분형 문항의 경우, 기준이 되는 항목에 한해 응답자 특성별로 다음과 같이 강조 표시를 적용하였습니다.  
(단, 사례수가 (0), (1)인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사례수 (5) 미만은 결과 해석 시 주의를 요합니다.)
  - 연구보안 예산 규모 : 연구보안 예산 규모별 5개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1개 집단
  - 보안 담당조직 : 보안 담당조직별 3개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1개 집단
  -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별 5개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1개 집단
- 본 조사결과를 유사 조사 또는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응답 대상 기준, 보기항목 구성 및 문항 내용에 차이가 있고,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 목차

<b>PART 01</b>	<b>조사결과 요약</b>	<b>1</b>
----------------	----------------	----------

<b>PART 02</b>	<b>조사개요</b>	<b>5</b>
----------------	-------------	----------

1. 조사 목적 및 법적 근거	7
2. 조사 설계	8
3. 표본 설계	11
4. 용어 정의	13

<b>PART 03</b>	<b>조사결과</b>	<b>15</b>
----------------	-------------	-----------

1. 기관 일반현황	17
1-1) 설립연도	17
1-2) 기관 소재지	18
1-3) 기관 형태	19
1-4) 연구개발비	20
2. 연구정보 관리 일반현황	21
2-1)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21
2-2)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22
2-3)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23
3. 연구정보 보호(관리) 활동 현황	24
3-1-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24
3-1-2)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25
3-1-3)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26
3-1-4)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	27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3-2) 연구정보 보호 수준 .....	28
3-3-1)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	29
3-3-2) 연구보안 교육 주기 .....	30
3-4-1)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	31
3-4-2)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	32
3-5)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	33
3-6)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 ...	34
3-6-1)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	35
3-7)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	36
3-8)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	37
3-9) 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	38
3-9-1) 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	39
3-10) 외국인의 연구 참여 여부 .....	40
3-11)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	41
3-12)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	42
3-13) 외국인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	43
3-14)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	44
3-15)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	45
3-16)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	46
3-17)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	47
3-18)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	48
3-18-1)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	49

# 목차

4. 연구정보 보안 인프라 현황 .....	50
4-1)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	50
4-1-1)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 .....	51
4-2-1)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전담인력 .....	52
4-2-2)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검임인력 .....	53
4-2-3)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	54
4-3)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 .....	55
4-3-1)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형태 .....	56
4-4)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직무교육 내용 .....	57
4-5)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순위 ..	58
4-5-1)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2순위 ..	59
4-6-1)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	60
4-6-2)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	61
4-7)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	62
5. 연구정보 보호 관련 정책수요 .....	63
5-1)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순위 .....	63
5-1-1)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2순위 .....	64
5-2)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순위 .....	65
5-2-1)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2순위 .....	66
5-3)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요 .....	67
6. 연구기관 영업비밀 인지도 .....	68
6-1)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	68
6-1-1)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 ..	69
6-1-2)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	70
6-1-3)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	71
6-1-4)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 .....	72
6-2)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	73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부록

75

첨부1. 통계표 ..... 77

첨부2. 조사표 ..... 107

P A R T

01

## 조사결과 요약

PART 01. 조사결과 요약

PART 02.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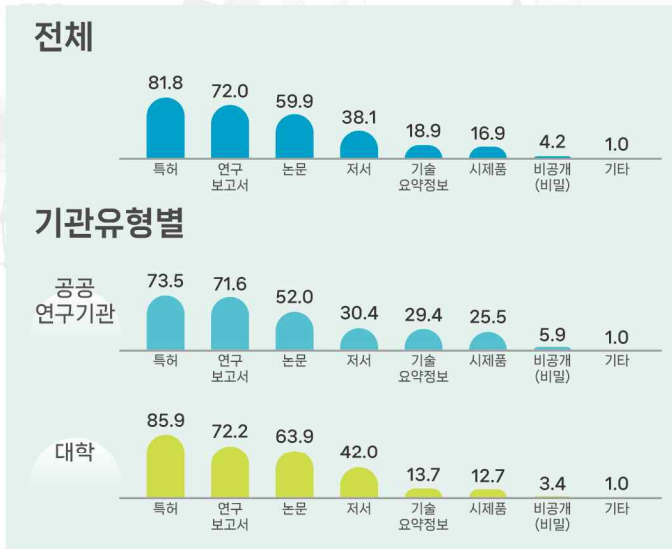
PART 03.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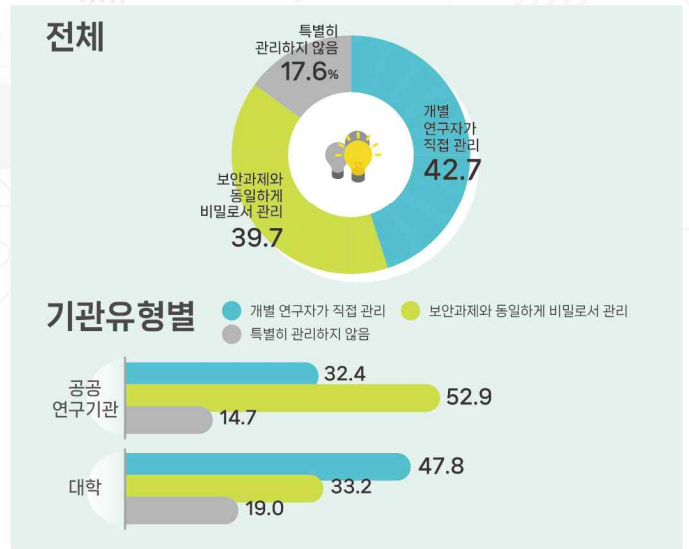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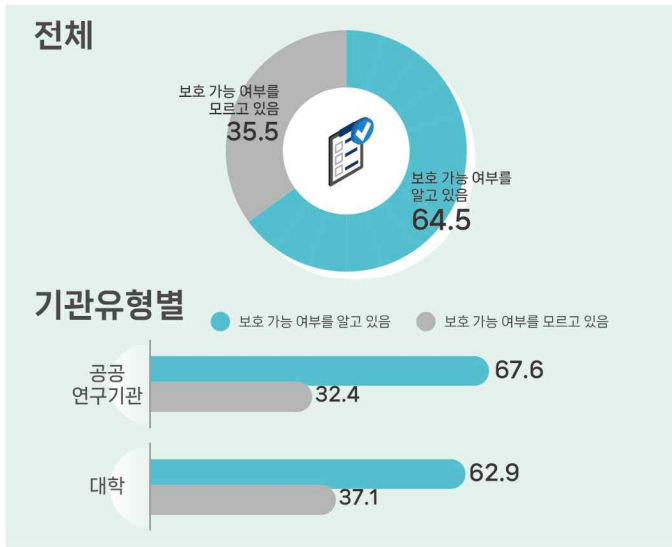
## ☀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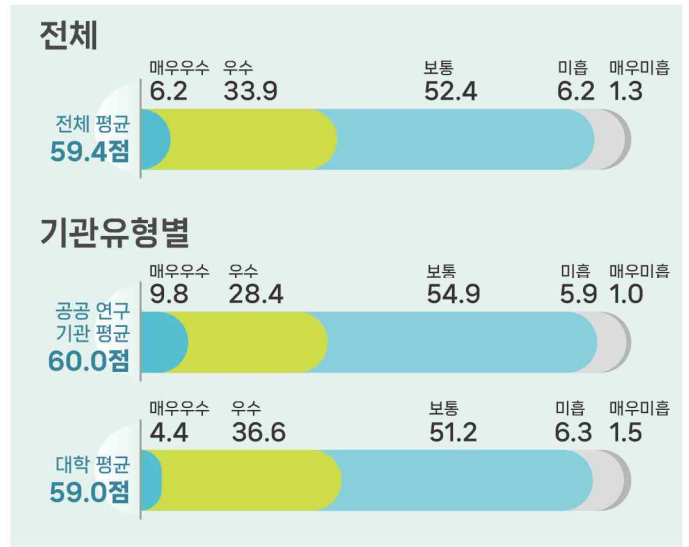
## ☀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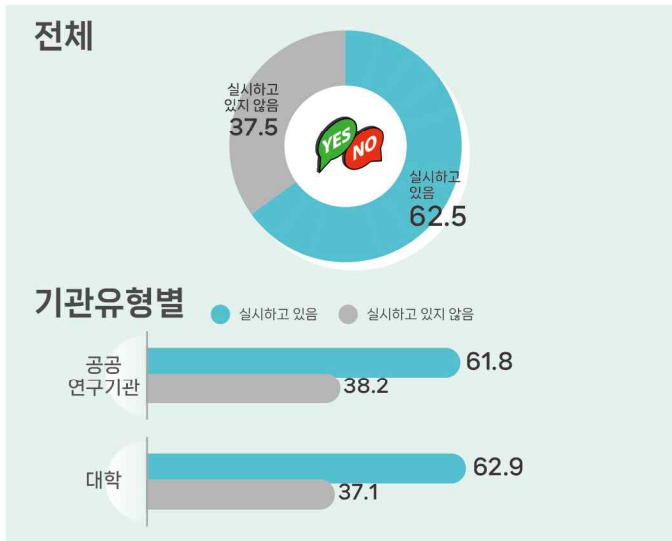
## ☀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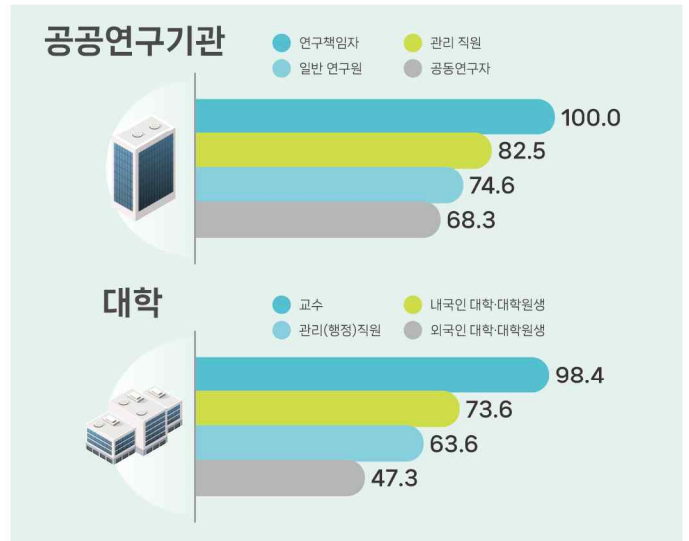
## ☀ 연구정보 보호 수준 (단위: %)



## ☀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단위: %)



## ☀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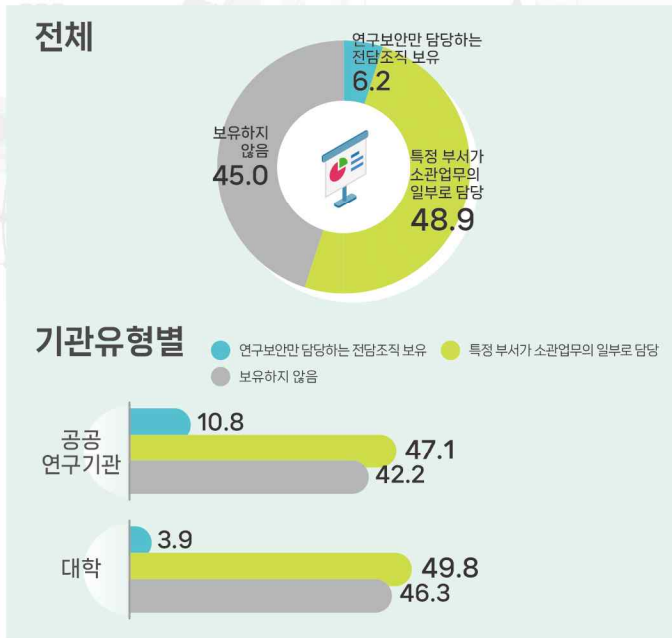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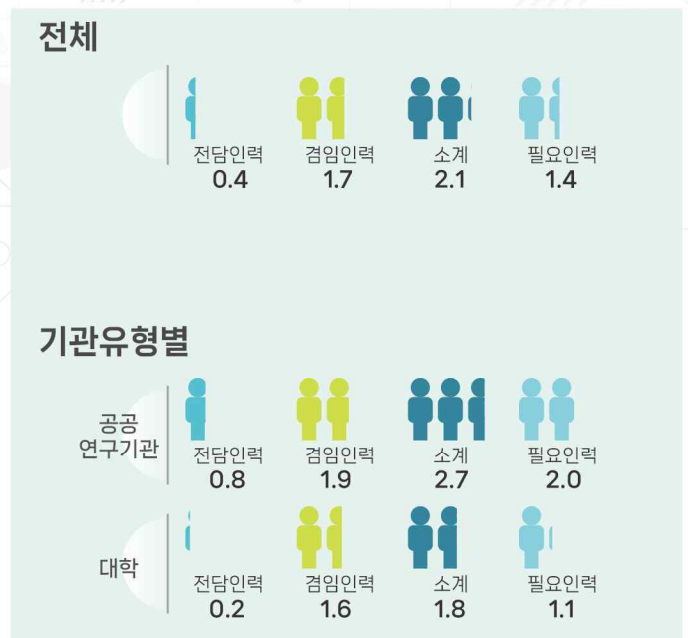
##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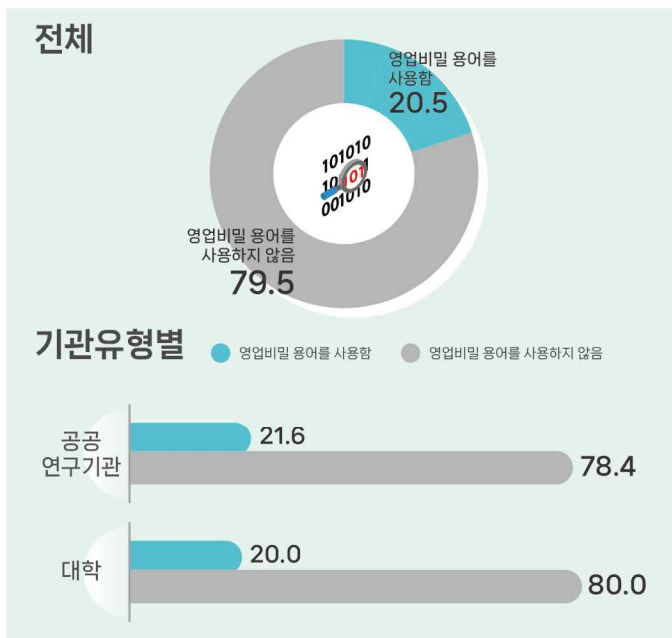
##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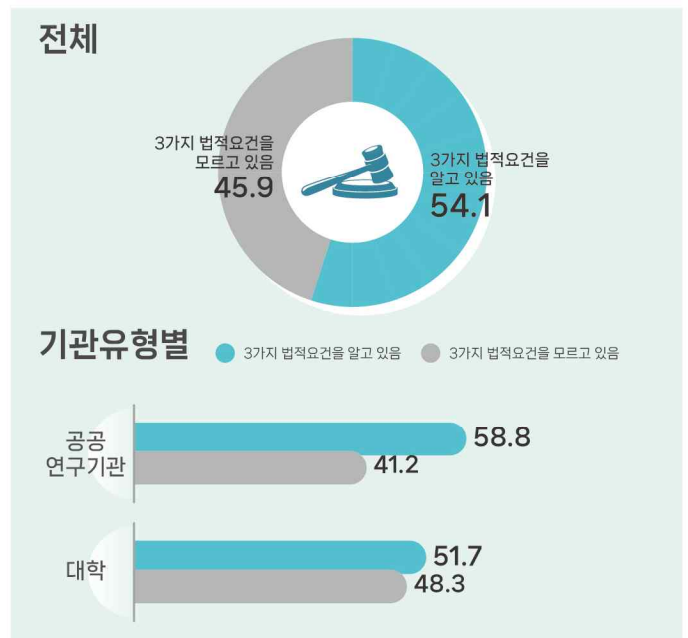
##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단위: %)



##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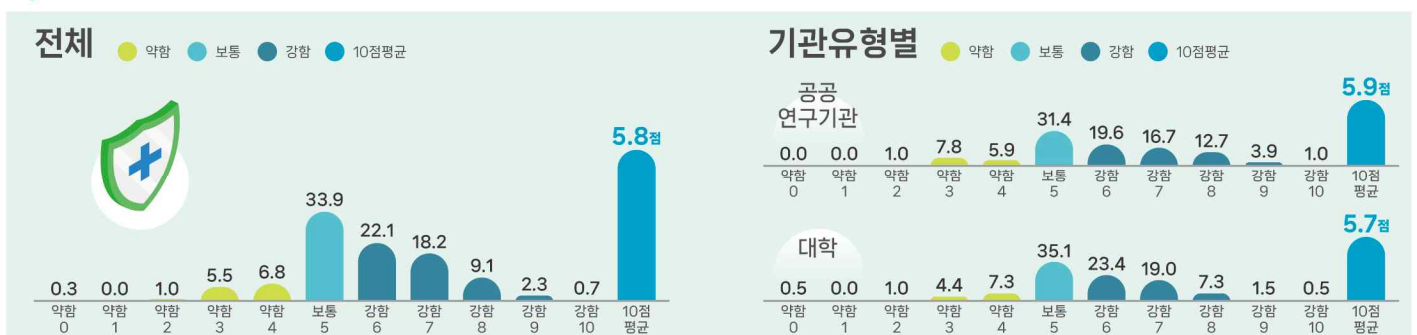
(단위: %)



\*3가지 법적요건 : 비공시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단위: %)



PART

02

## 조사개요

PART 01. 조사결과 요약

**PART 02. 조사개요**

PART 03. 조사결과

PART  
02 조사개요

---

제1절 조사 목적 및 법적 근거

제2절 조사 설계

제3절 표본 설계

제4절 용어 정의

## 제1절 조사 목적 및 법적 근거

### 1-1 조사 목적

-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파악
- 지식재산 보호 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정보 제공 및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 지원

[표 2-1] 조사 연혁

구 분	2021년	2022년
세부 내용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조사 실시 - 총 105개 기관 조사 참여 (대학 54개, 공공연구기관 51개 확보)	본 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 문항 보완 및 표본 수를 확대함 - 총 307개 기관 조사 참여 (대학 205개, 공공연구기관 102개 확보)

### 1-2 법적 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의4에 의거하여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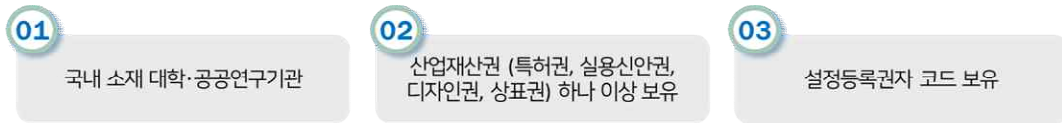
-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 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절 조사 설계

### 2-1 조사의 범위 및 대상

- 국내에 소재한 대학·공공연구기관 중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설정등록권자 코드를 보유한 기관

[그림 2-1] 조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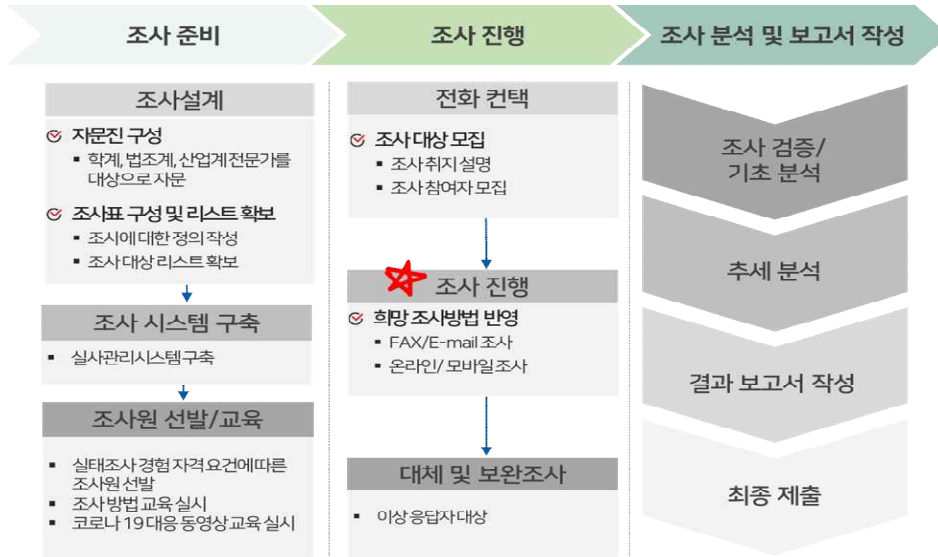


- 특허청에서 제공한(산업재산권 보유 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 530개 명부 활용

### 2-2 조사 방법 및 수행절차

- 전문 조사원을 통한 비대면(전화, 온라인, 팩스) 조사

[그림 2-2] 조사 진행 방법



### 2-3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 기간

- 조사 기준시점 : 2021년 말 기준
- 조사 기간 : 2022년 8월 중순 ~ 9월 초순 (약 0.5개월)

## 2-4 조사 항목

-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 PART I. 기관 일반현황: 기관 특성별 현황 파악을 위한 항목 구성
  - PART II. 연구정보 관리 일반현황: 연구정보 관리 방법 및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 파악
  - PART III. 연구정보 보호(관리) 활동 현황: 실제 수행하는 보호 활동 및 연구보안 교육 파악
  - PART IV. 연구정보 보안 인프라 현황: 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 연구보안 예산 파악
  - PART V. 연구정보 보호 관련 정책수요: 연구정보 관련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파악
  - PART VI. 연구정보 유출 피해경험: 연구정보 유출 피해 현황 파악
  - PART VII. 연구기관 영업비밀 인지도: 영업비밀 정의, 법적요건 인지도, 영업비밀 보호 수준 파악

[표 2-2]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 주요 조사 내용 (1)

구분	세부 내용
I. 기관 일반현황	- 기관명 / 설립연도 / 기관 소재지 / 기관형태 / 연구개발비
II. 연구정보 관리 일반현황	-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및 '부산물' 관리 방법 -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III. 연구정보 보호(관리) 활동 현황	- 비밀관리활동 현황 (실제수행하고 있는 비밀 활동: 출입통제, 자료관리, 인적관리, 기술적관리 / 연구정보 보호 수준)  - 연구보안 교육 현황 (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주기 / 교육 대상자 / 교육 내용 / 교육 도움 정도 / 교육 미도움 이유)  - 국제공동연구 관리 현황 (실적 유무 / 보안규정 보유 여부 / 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 외국인 연구원(유학생) 관리 현황 (외국인 연구 참여 여부 /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 출입증 발급 여부)  -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현황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 퇴직 후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 포함 여부 / 대응방법 / 미대응 이유)

[표 2-3]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 주요 조사 내용 (2)

구 분	세부 내용
<b>IV. 연구정보 보안 인프라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 (담당조직 보유 여부 / 조직 형태 / 인력 현황 / 직무교육 실시 여부 / 교육 형태 / 교육 내용 /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li> <li>- 연구보안 예산 (연구비 총액 대비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규모 /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li> </ul>
<b>V. 연구정보 보호 관련 정책수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li> <li>-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li> <li>-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요</li> </ul>
<b>VI. 연구정보 유출 피해경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정보 유출 피해 현황 (피해 경험 여부 / 피해 경험 지역 / 유출 국가 / 국내·해외 피해 건수 / 피해 연구 분야 / 유출 주체 / 유출 연구정보 종류 / 피해 경로 / 피해 발생 방법 / 연구정보 피해 주체 / 침해 해외기업 국적 / 피해 대응 방법 / 피해 규모 / 투입자원 대비 피해규모 비중)</li> </ul>
<b>VII. 연구기관 영업비밀 인지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li> <li>-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li> <li>-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li> <li>-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li> <li>-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li> <li>-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li> </ul>

## 제3절 표본 설계

## 3-1 모집단 및 표본틀

- 특허청에서 제공한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공공연구기관 명부를 활용, 530개 기관을 모집단으로 함
- 표본의 배분 : 보유한 530개 기관의 모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할당을 시행함
- 530개의 모집단 기관 중 총 307개 기관이 조사에 참여함

[표 2-4] 모집단 및 표본틀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모집단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구기관	-
조사 모집단		특허청 제공(산업재산권 보유 기관) 명부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정등록권자코드를 보유한 530개 기관
표본틀		특허청 제공(산업재산권 보유 기관) 명부	-
표본설계	산업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기관	대학/공공연구기관	-
조사 규모		300개 이상	-
표본 배분법		비례할당 표본 배분	-

### 3-2 유형별 모집단 및 회수 분포

○ 기관유형 : 대학, 공공연구기관

[표 2-5] 기관유형별 분포

기관	모집단 수(N)	조사 완료 수(n)	조사 완료 %	모집단 대비 완료 %
대학	334	205	66.8%	61.4%
공공연구기관	196	102	33.2%	52.0%
<b>전체</b>	<b>530</b>	<b>307</b>	<b>100.0%</b>	<b>57.9%</b>

주) \* 조사 완료 % : 기관유형별 조사 완료 수 / 총 조사 완료 수  
 \* 모집단 대비 완료 % : 기관유형별 조사 완료 수(n) / 기관유형별 모집단 수(N)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 2건 미만, 2건~5건 미만, 5~10건 미만, 10건~50건 미만, 50건 이상

[표 2-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 분포

보유건수	모집단 수(N)	조사 완료 수(n)	조사 완료 %	모집단 대비 완료 %
2건 미만	81	49	16.0%	60.5%
2건~5건 미만	118	71	23.1%	60.2%
5건~10건 미만	93	52	16.9%	55.9%
10건~50건 미만	140	73	23.8%	52.1%
50건 이상~100건 미만	30	21	6.8%	70.0%
100건 이상~500건 미만	31	21	6.8%	67.7%
500건 이상~1000건 미만	13	8	2.6%	61.5%
1000건 이상	24	12	3.9%	50.0%
<b>전체</b>	<b>530</b>	<b>307</b>	<b>100.0%</b>	<b>57.9%</b>

주) \* 조사 완료 %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 조사 완료 수 / 총 조사 완료 수  
 \* 모집단 대비 완료 %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 조사 완료 수(n)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 모집단 수(N)

## 제4절 용어 정의

○ **산업재산권** : 본 조사에서 다루는 산업재산권의 범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의미함.

1. 특허권 : 발명수준이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것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
2. 실용신안권 :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
3. 상표권 : 자기의 상품(서비스)과 타인의 상품(서비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 단체표장, 증명표장 등 포함)
4. 디자인권 : 물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적 형상·모양·색채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

○ **영업비밀** : (1)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2)비밀로 관리되며(비밀관리성) (3)경제적 가치를 지닌(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함. 영업비밀은 3가지 법적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어야만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관련 예시로는, 연구개발·생산방법, 설계도 등의 기술정보와 고객 및 거래처 정보, 원가정보, 마케팅 전략 등의 경영정보가 있음.

○ **비밀관리활동** : 비밀관리활동이란 내·외부 인력의 접근권한 설정, 소지품 검사, 문서의 보안등급 지정 등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는 노력과 직결되는 활동임. 법적 분쟁상황에서 영업비밀의 3가지 법적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중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비밀관리활동은 영업비밀 보호활동 중 가장 중요함.

○ **연구보안** : 연구기획, 수행, 성과창출 등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수행 중 혹은 수행결과로 도출된 연구정보 및 성과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활동.

○ **국제공동연구** : 서로 다른 국가에 소속된 연구주체가 동일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자금·인력·시설·기자재·정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함.

○ **보안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과제.

○ **일반과제 등** : 보안과제를 제외한 일반과제 및 기타 과제.

○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 : 연구 기획, 수행, 성과창출 등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수행 중 혹은 수행결과로 도출된 연구정보 및 성과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

○ **전담인력** : 보안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

- **겸임인력** : 기타 부서 업무(총무, 인사, R&D 기획 등)를 하면서 보안 관련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
- **필요인력** : 보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데 필요한 전체 전담 인력(전담인력 + 부족 인력).
- **전자문서 관리** : 문서보안시스템, USB 등 승인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외부로 e-mail 발송 차단 등의 관리 활동.
- **비전자문서 관리** : 내부문서·자료의 복사, 반출, 폐기 등의 관리 활동.
- **연구개발비** : 새로운 기술,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행해진 조사·연구 활동에 지출된 비용으로 간접비는 제외함.
- **내용증명**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 활용됨.
- **경고장** : 권리자가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그 침해사실을 통지하여 침해를 중지시키거나, 계속적인 침해행위 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
- **민사소송** :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
- **형사고소·고발**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산업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신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신고, 검찰·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됨).
- **디지털포렌식** :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행해진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디지털 기기에서 수집, 분석, 보존한 디지털데이터가 법적 증거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 영업비밀 유출 정황이 있거나 피해가 의심되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경우 디지털기기를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P A R T

03

## 조사결과

PART 01. 조사결과 요약

PART 02. 조사개요

PART 03. 조사결과

PART  
03 조사결과

---

- 제1절 기관 일반현황
- 제2절 연구정보 관리 일반현황
- 제3절 연구정보 보호(관리) 활동 현황
- 제4절 연구정보 보안 인프라 현황
- 제5절 연구정보 보호 관련 정책수요
- 제6절 연구기관 영업비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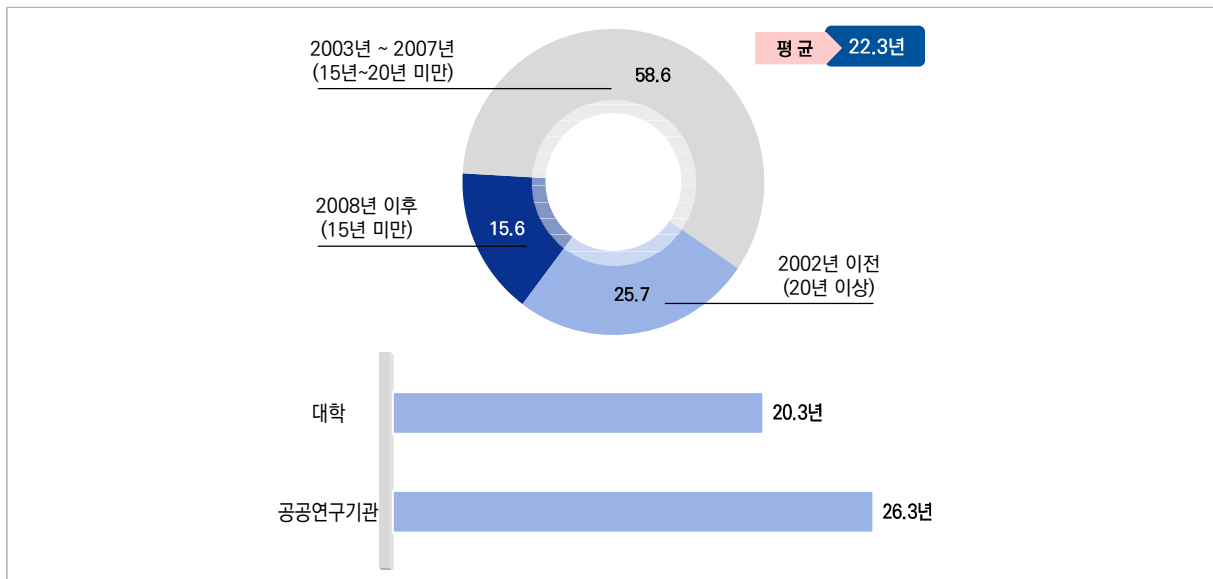
# 제1절 기관 일반현황

## 1-1 [기관 일반현황] 설립연도

- 설립연도는 '2003년 ~ 2007년'(15 ~ 20년 미만)에 응답한 기관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2002년 이전'(25.7%), '2008년 이후'(15.6%) 순으로 나타남
- 설립연도를 기준으로 한 업력의 평균은 22.3년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보다 평균 업력이 약 4.2년 더 많음

〈그림 3-1〉 설립연도

(단위 : %, 년)



[BASE: 전체(n=307)]

[표 3-1] 설립연도

(단위 : 개, %, 년)

구분	사례수	2008년 이후 (15년 미만)	2003년~2007년 (15년~20년 미만)	2002년 이전 (20년 이상)	평균 (업력)
<b>전 체</b>	<b>(307)</b>	<b>15.6</b>	<b>58.6</b>	<b>25.7</b>	<b>22.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7.5	15.7	56.9	26.3
대학	(205)	9.8	80.0	10.2	20.3
연구보안					
예산 없음	(146)	19.9	56.2	24.0	22.4
예산 규모					
5천만원 미만	(126)	11.9	64.3	23.8	21.1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1.4	35.7	42.9	23.4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9	52.9	41.2	28.1
10억원 이상	(4)	0.0	75.0	25.0	25.3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22.5	55.8	21.7	21.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10.0	63.3	26.7	22.8
전담조직 보유	(19)	10.5	42.1	47.4	25.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8.4	40.8	40.8	23.4
2건~5건 미만	(71)	18.3	59.2	22.5	19.6
5건~10건 미만	(52)	19.2	67.3	13.5	20.3
10건~50건 미만	(73)	11.0	63.0	26.0	24.8
50건 이상	(62)	12.9	59.7	27.4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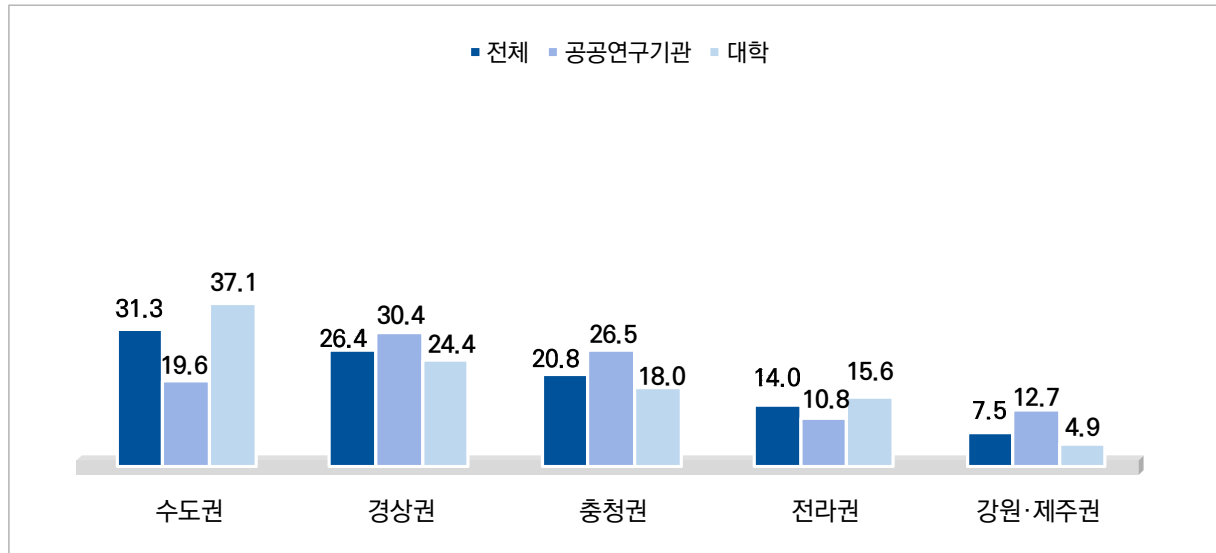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1-2 [기관 일반현황] 기관 소재지

- 기관 소재지는 '수도권' 소재의 기관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경상권'(26.4%), '충청권'(20.8%), '전라권'(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기관 소재지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2] 기관 소재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제주권
전 체		(307)	31.3	26.4	20.8	14.0	7.5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19.6	30.4	26.5	10.8	12.7
	대학	(205)	37.1	24.4	18.0	15.6	4.9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34.2	25.3	17.1	15.8	7.5
	5천만원 미만	(126)	29.4	26.2	25.4	12.7	6.3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35.7	21.4	14.3	14.3	1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23.5	41.2	23.5	5.9	5.9
	10억원 이상	(4)	0.0	25.0	25.0	25.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32.6	29.7	15.2	13.8	8.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30.7	24.7	23.3	16.0	5.3
	전담조직 보유	(19)	26.3	15.8	42.1	0.0	15.8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26.5	26.5	18.4	18.4	10.2
	2건~5건 미만	(71)	36.6	21.1	22.5	11.3	8.5
	5건~10건 미만	(52)	42.3	25.0	15.4	9.6	7.7
	10건~50건 미만	(73)	27.4	27.4	23.3	15.1	6.8
	50건 이상	(62)	24.2	32.3	22.6	16.1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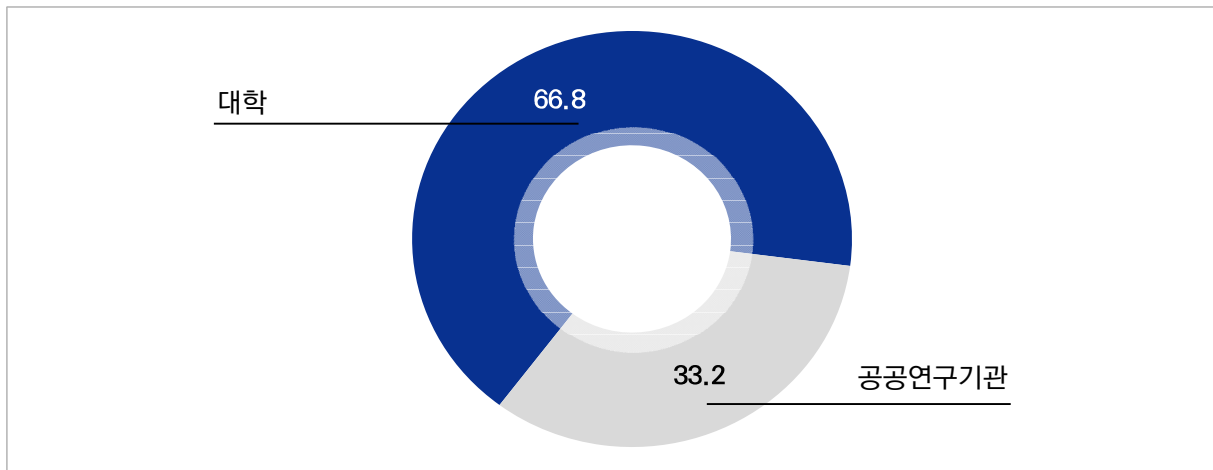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1-3 [기관 일반현황] 기관 형태

- 기관 형태는 '대학'이 66.8% '공공연구기관'이 33.2%로 나타남
- 연구보안 예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의 경우 '대학'의 비율이 75.0%로 가장 높은 반면, '5천만원 ~ 1억원 미만'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비율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 기관 형태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3] 기관 형태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 체		(307)	66.8	33.2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0.0	100.0
	대학	(205)	100.0	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67.8	32.2
	5천만원 미만	(126)	71.4	28.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8.6	71.4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2.9	47.1
	10억원 이상	(4)	75.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68.8	31.2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68.0	32.0
	전담조직 보유	(19)	42.1	57.9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3.1	46.9
	2건~5건 미만	(71)	67.6	32.4
	5건~10건 미만	(52)	67.3	32.7
	10건~50건 미만	(73)	72.6	27.4
	50건 이상	(62)	69.4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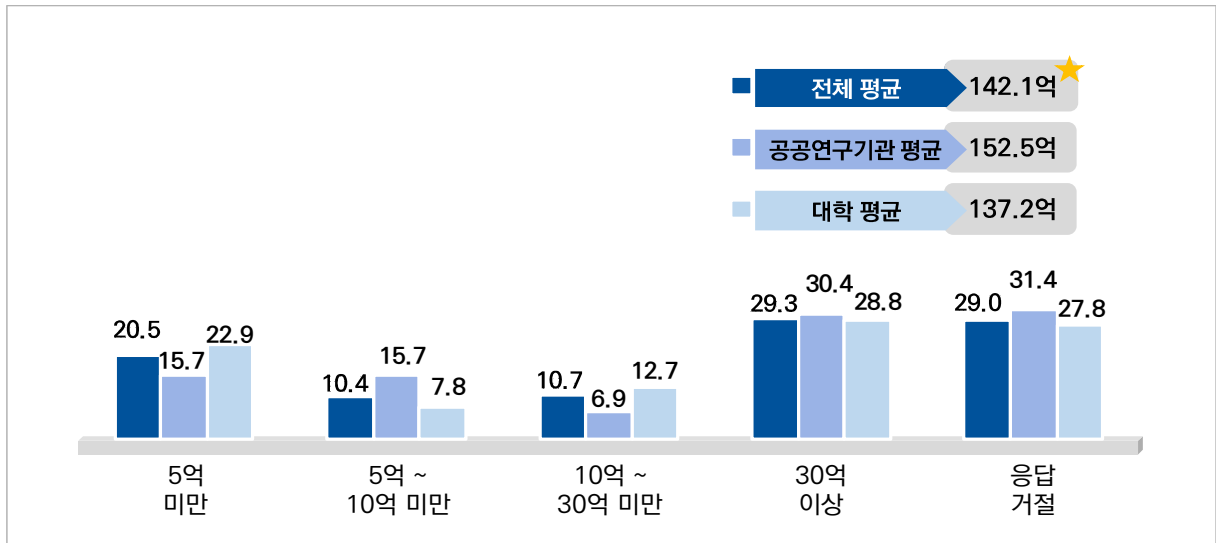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1-4 [기관 일반현황]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는 '30억 이상'에 응답한 기관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5억 미만'(20.5%), '10억~30억 미만'(10.7%), '5억~10억 미만'(10.4%) 순으로 나타남
  - 전체 307개 응답 기관 중 29.0%는 연구개발비 응답을 거절한 기관임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보안담당조직 미보유'의 경우 '5억 미만'(22.5%)이 가장 높은 반면,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과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는 '30억 이상'(각 37.3%, 36.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구개발비의 평균은 142.1억으로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152.5억으로 '대학'보다 약 15.3억 더 많음

〈그림 3-4〉 연구개발비

(단위 : %, 억)



[BASE: 전체(n=307)]

[표 3-4] 연구개발비

(단위 : 개, %, 억 원)

구분	사례수	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30억 미만	30억 이상	응답 거절	평균 (연구개발비)
<b>전체</b>	<b>(307)</b>	<b>20.5</b>	<b>10.4</b>	<b>10.7</b>	<b>29.3</b>	<b>29.0</b>	<b>142.1</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15.7	15.7	6.9	30.4	31.4	152.5
대학	(205)	22.9	7.8	12.7	28.8	27.8	137.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21.9	4.8	10.3	15.8	47.3	152.3
5천만원 미만	(126)	24.6	12.7	11.9	38.9	11.9	98.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42.9	7.1	21.4	28.6	122.4
1억원 ~ 10억원 미만	(17)	0.0	11.8	11.8	70.6	5.9	359.9
10억원 이상	(4)	0.0	25.0	0.0	75.0	0.0	347.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22.5	6.5	11.6	19.6	39.9	125.2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0.0	13.3	8.0	37.3	21.3	166.1
전담조직 보유	(19)	10.5	15.8	26.3	36.8	10.5	58.2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36.7	6.1	6.1	22.4	28.6	48.6
2건~5건 미만	(71)	26.8	11.3	4.2	9.9	47.9	50.9
5건~10건 미만	(52)	23.1	13.5	7.7	28.8	26.9	139.4
10건~50건 미만	(73)	11.0	16.4	21.9	35.6	15.1	216.4
50건 이상	(62)	9.7	3.2	11.3	50.0	25.8	188.6

[BASE: 전체(n=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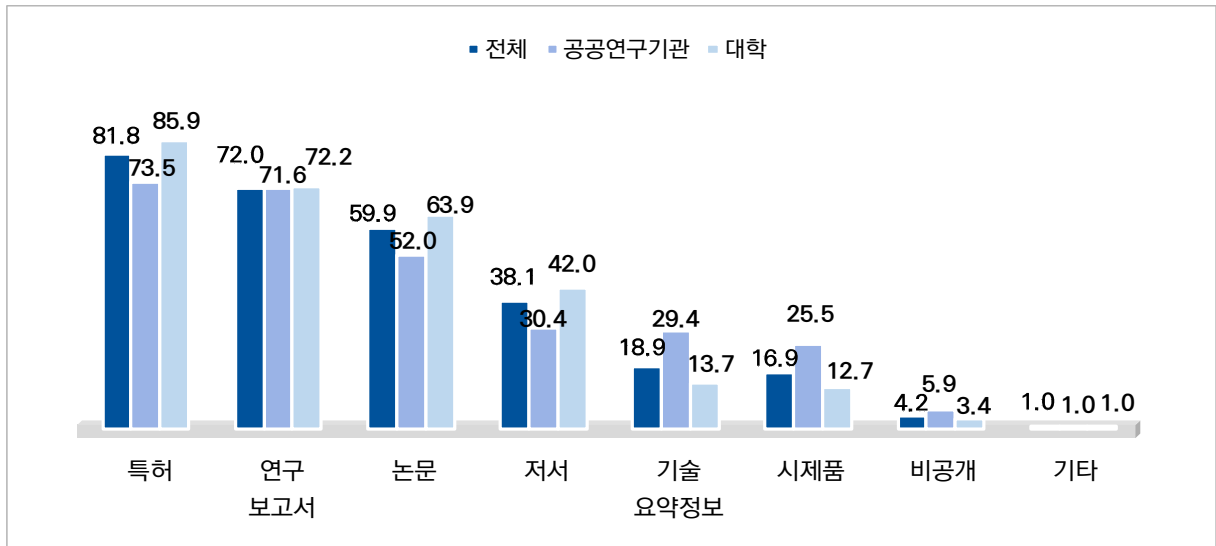
## 제2절 연구정보 관리 일반현황

### 2-1 [문 2-1]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특허'에 응답한 기관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연구보고서'(72.0%), '논문'(59.9%), '저서'(3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대학보다 '기술요약정보'(29.4%), '시제품'(25.5%)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3-5〉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전체(n=307)]

[표 3-5]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특허	연구 보고서	논문	저서	기술 요약 정보	시제품	비공개 (비밀)	기타	
<b>전체</b>	<b>(307)</b>	<b>81.8</b>	<b>72.0</b>	<b>59.9</b>	<b>38.1</b>	<b>18.9</b>	<b>16.9</b>	<b>4.2</b>	<b>1.0</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73.5	71.6	52.0	30.4	29.4	25.5	5.9	1.0
	대학	(205)	85.9	72.2	63.9	42.0	13.7	12.7	3.4	1.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74.7	67.8	50.7	26.0	9.6	11.0	1.4	0.7
	5천만원 미만	(126)	88.1	76.2	67.5	46.8	25.4	17.5	3.2	0.8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85.7	50.0	42.9	42.9	50.0	28.6	21.4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94.1	94.1	94.1	70.6	23.5	47.1	17.6	0.0
	10억원 이상	(4)	75.0	75.0	75.0	50.0	25.0	50.0	25.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77.5	66.7	50.7	21.7	10.9	9.4	2.2	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84.0	76.7	67.3	51.3	23.3	23.3	4.0	2.0
	전담조직 보유	(19)	94.7	73.7	68.4	52.6	42.1	21.1	21.1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9.4	71.4	46.9	30.6	22.4	14.3	2.0	2.0
	2건~5건 미만	(71)	80.3	63.4	47.9	25.4	16.9	9.9	0.0	0.0
	5건~10건 미만	(52)	75.0	71.2	61.5	32.7	19.2	13.5	11.5	1.9
	10건~50건 미만	(73)	86.3	78.1	58.9	43.8	16.4	13.7	5.5	1.4
	50건 이상	(62)	93.5	75.8	83.9	56.5	21.0	33.9	3.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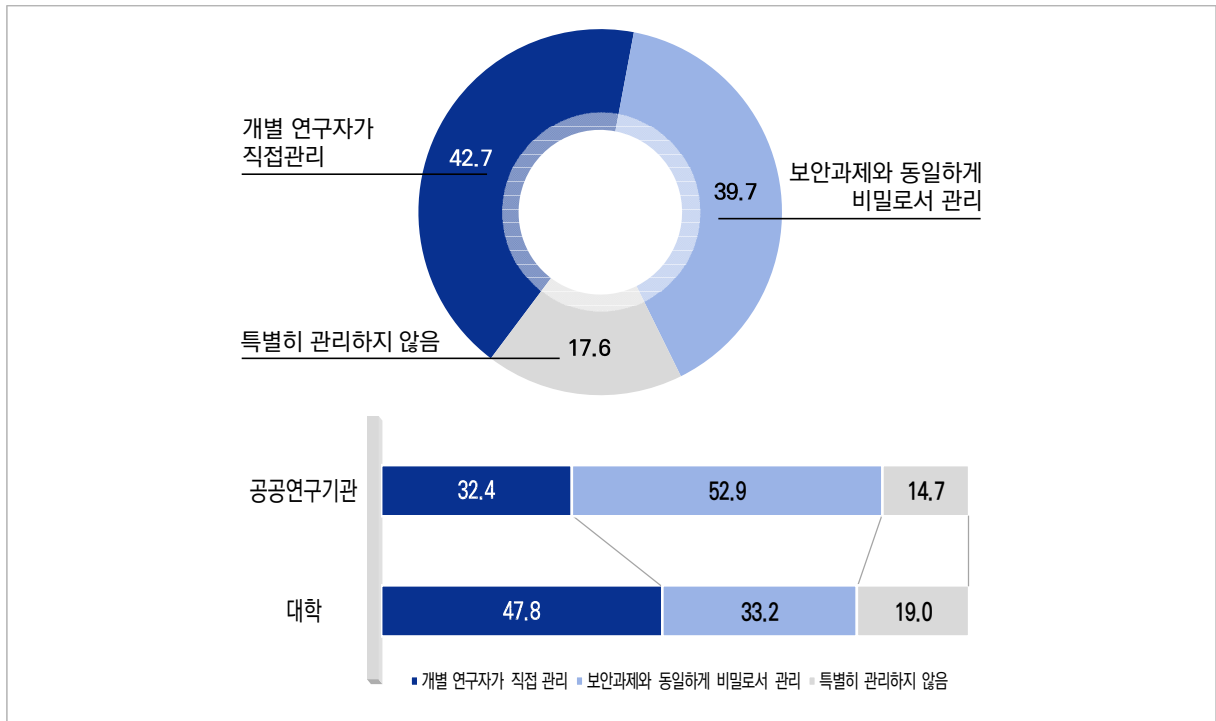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2-2 [문 2-2]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 일반과제 등의 수행 중 생성된 각종 실험데이터, 노하우, 연구노트 등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으로, ‘개별 연구자가 직접 관리’에 응답한 기관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비밀로서 관리’(39.7%), ‘특별히 관리하지 않음’(17.6%)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연구 ‘부산물’에 대하여 ‘보안담당조직 미보유’의 경우 ‘개별 연구자가 직접 관리’(51.4%)가 가장 높은 반면,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와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는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비밀로서 관리’(각 54.7%, 68.4%)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6〉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6〉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개별 연구자가 직접 관리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비밀로서 관리	특별히 관리하지 않음
<b>전체</b>	<b>(307)</b>	<b>42.7</b>	<b>39.7</b>	<b>17.6</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32.4	52.9	14.7
	대학	(205) 47.8	33.2	19.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47.3	24.0	28.8
	5천만원 미만	(126) 37.3	57.9	4.8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50.0	42.9	7.1
	1억원 ~ 10억원 미만	(17) 35.3	35.3	29.4
	10억원 이상	(4) 50.0	5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51.4	19.6	29.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37.3	54.7	8.0
	전담조직 보유	(19) 21.1	68.4	10.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42.9	36.7	20.4
	2건~5건 미만	(71) 46.5	25.4	28.2
	5건~10건 미만	(52) 48.1	38.5	13.5
	10건~50건 미만	(73) 41.1	46.6	12.3
	50건 이상	(62) 35.5	51.6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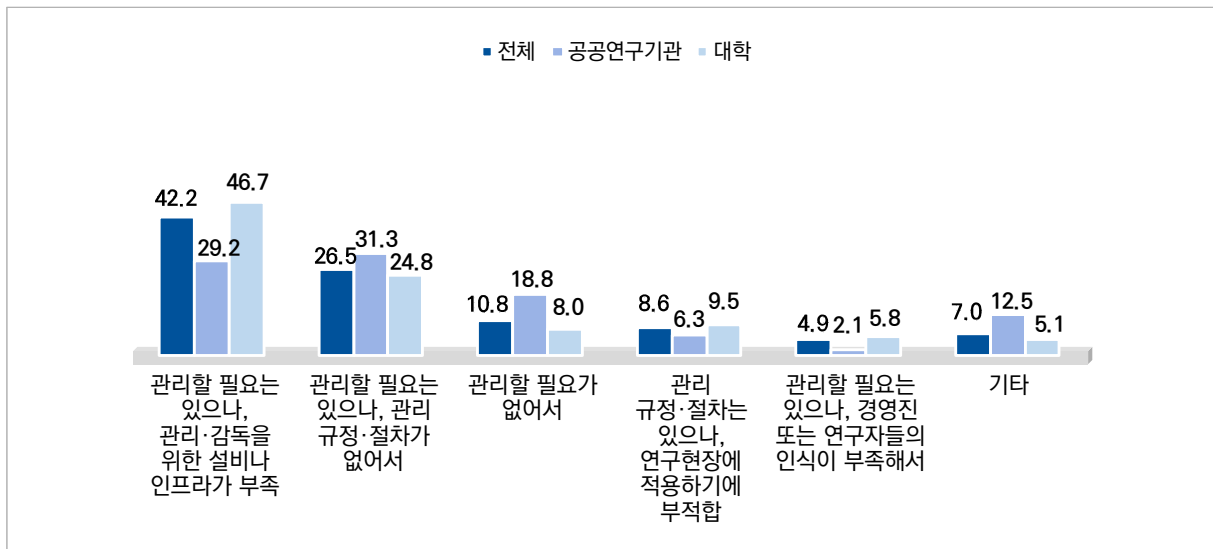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2-3 [문 2-3]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 일반과제 등의 수행 중 생성된 각종 실험데이터, 노하우, 연구노트 등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로,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관리·감독을 위한 설비나 인프라가 부족해서'에 응답한 기관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관리(보안) 규정·절차가 없어서'(31.3%)가 가장 높은 반면, '대학'의 경우는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관리·감독을 위한 설비나 인프라가 부족'(46.7%)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7〉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BASE: 연구 '부산물'을 개별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기관(n=185)]

【표 3-7】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관리·감독을 위한 설비나 인프라가 부족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관리 규정·절차가 없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관리 규정·절차는 있으나, 연구현장에 적용하기에 부적합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경영진 또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기타	
<b>전체</b>	<b>(185)</b>	<b>42.2</b>	<b>26.5</b>	<b>10.8</b>	<b>8.6</b>	<b>4.9</b>	<b>7.0</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8)	29.2	31.3	18.8	6.3	2.1	12.5
	대학	(137)	46.7	24.8	8.0	9.5	5.8	5.1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11)	41.4	30.6	16.2	1.8	4.5	5.4
	5천만원 미만	(53)	47.2	20.8	3.8	17.0	5.7	5.7
	5천만원 ~ 1억원 미만	(8)	50.0	25.0	0.0	12.5	0.0	12.5
	1억원 ~ 10억원 미만	(11)	18.2	18.2	0.0	27.3	9.1	27.3
	10억원 이상	(2)	50.0	0.0	0.0	5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11)	36.0	32.4	16.2	5.4	4.5	5.4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8)	54.4	16.2	2.9	11.8	5.9	8.8
	전담조직 보유	(6)	16.7	33.3	0.0	33.3	0.0	16.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31)	32.3	48.4	6.5	6.5	3.2	3.2
	2건~5건 미만	(53)	35.8	20.8	22.6	5.7	7.5	7.5
	5건~10건 미만	(32)	34.4	18.8	15.6	15.6	6.3	9.4
	10건~50건 미만	(39)	48.7	28.2	0.0	12.8	2.6	7.7
	50건 이상	(30)	63.3	20.0	3.3	3.3	3.3	6.7

[BASE: 연구 '부산물'을 개별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기관(n=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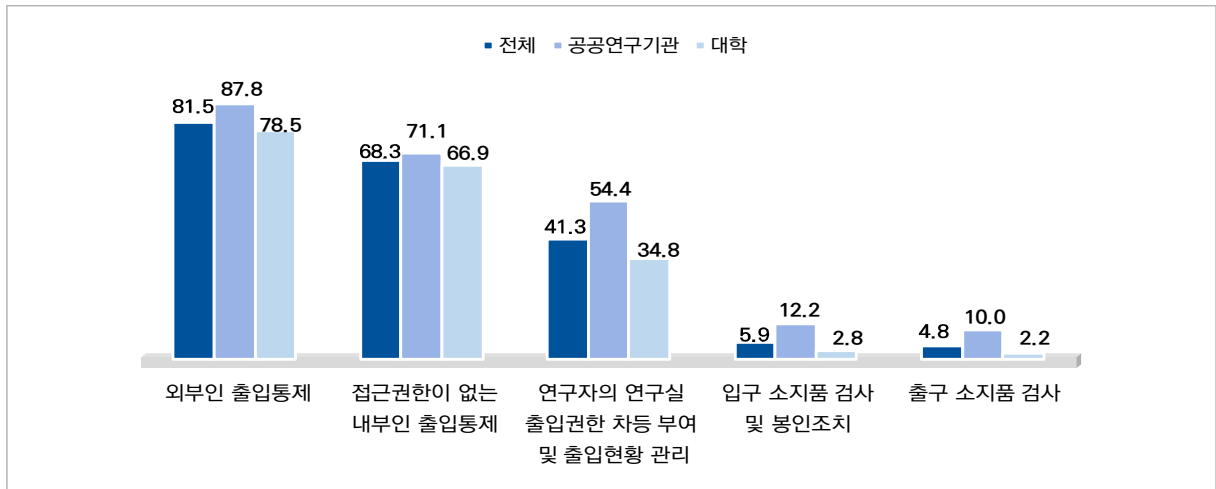
## 제3절 연구정보 보호(관리) 활동 현황

### 3-1-1 [문 3-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 일반과제 등의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으로, ‘외부인 출입통제’에 응답한 기관이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접근권한이 없는 내부인 출입통제’(68.3%),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4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모두 ‘외부인 출입통제’(각 87.8%, 78.5%)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8〉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출입통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71)]

〈표 3-8〉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외부인 출입통제	접근권한이 없는 내부인 출입통제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	입구 소지품 검사 및 봉인조치	출구 소지품 검사
<b>전체</b>	<b>(271)</b>	<b>81.5</b>	<b>68.3</b>	<b>41.3</b>	<b>5.9</b>	<b>4.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90)	87.8	71.1	54.4	12.2	10.0
대학	(181)	78.5	66.9	34.8	2.8	2.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19)	76.5	62.2	23.5	3.4	2.5
5천만원 미만	(117)	82.9	70.9	52.1	7.7	6.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92.9	71.4	64.3	7.1	7.1
1억원 ~ 10억원 미만	(17)	94.1	82.4	58.8	5.9	11.8
10억원 이상	(4)	100.0	100.0	100.0	25.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07)	76.6	67.3	29.9	2.8	1.9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45)	83.4	68.3	46.9	7.6	6.9
전담조직 보유	(19)	94.7	73.7	63.2	10.5	5.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6)	78.3	65.2	43.5	2.2	4.3
2건~5건 미만	(57)	80.7	59.6	35.1	1.8	0.0
5건~10건 미만	(44)	84.1	70.5	34.1	9.1	9.1
10건~50건 미만	(68)	77.9	73.5	45.6	7.4	4.4
50건 이상	(56)	87.5	71.4	46.4	8.9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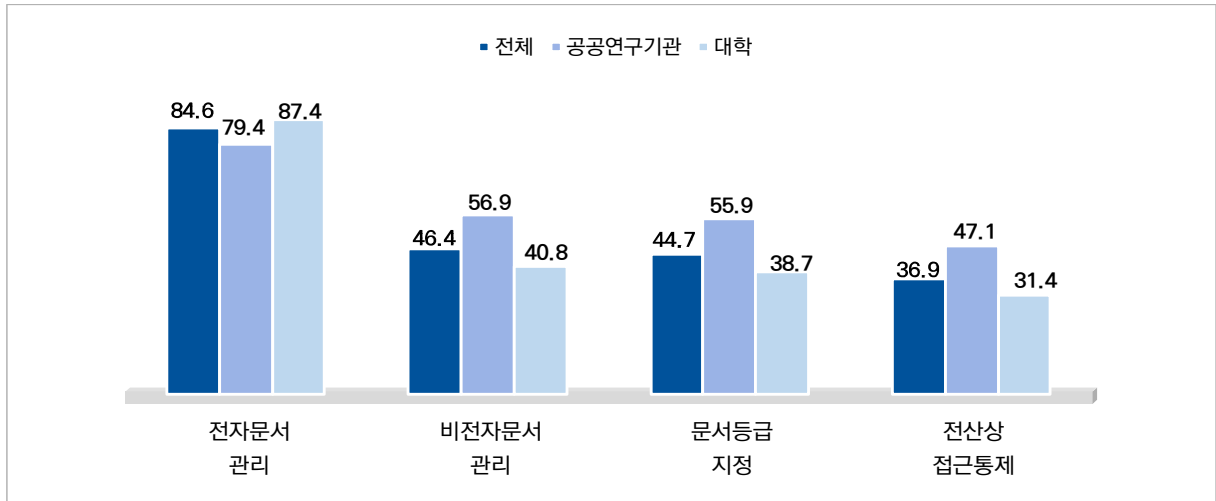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출입통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71)]

3-1-2 [문 3-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 일반과제 등의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으로, ‘전자문서 관리’에 응답한 기관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비전자문서 관리’(46.4%), ‘문서등급 지정’(44.7%), ‘전산상 접근통제’(3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모두 ‘전자문서 관리’(각 79.4%, 87.4%)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9〉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자료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93)]

〈표 3-9〉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전자문서 관리	비전자문서 관리	문서등급 지정	전산상 접근통제
전체		(293)	84.6	46.4	44.7	36.9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79.4	56.9	55.9	47.1
	대학	(191)	87.4	40.8	38.7	31.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37)	81.0	32.1	29.2	24.1
	5천만원 미만	(122)	87.7	56.6	55.7	46.7
	5천만원 ~ 1억원 미만	(13)	84.6	84.6	69.2	53.8
	1억원 ~ 10억원 미만	(17)	88.2	58.8	64.7	52.9
	10억원 이상	(4)	100.0	50.0	75.0	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1)	78.6	34.4	32.8	29.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43)	89.5	54.5	51.7	42.0
	전담조직 보유	(19)	89.5	68.4	73.7	52.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7)	78.7	51.1	42.6	36.2
	2건~5건 미만	(67)	85.1	37.3	29.9	37.3
	5건~10건 미만	(52)	88.5	36.5	42.3	30.8
	10건~50건 미만	(69)	84.1	56.5	56.5	43.5
	50건 이상	(58)	86.2	50.0	51.7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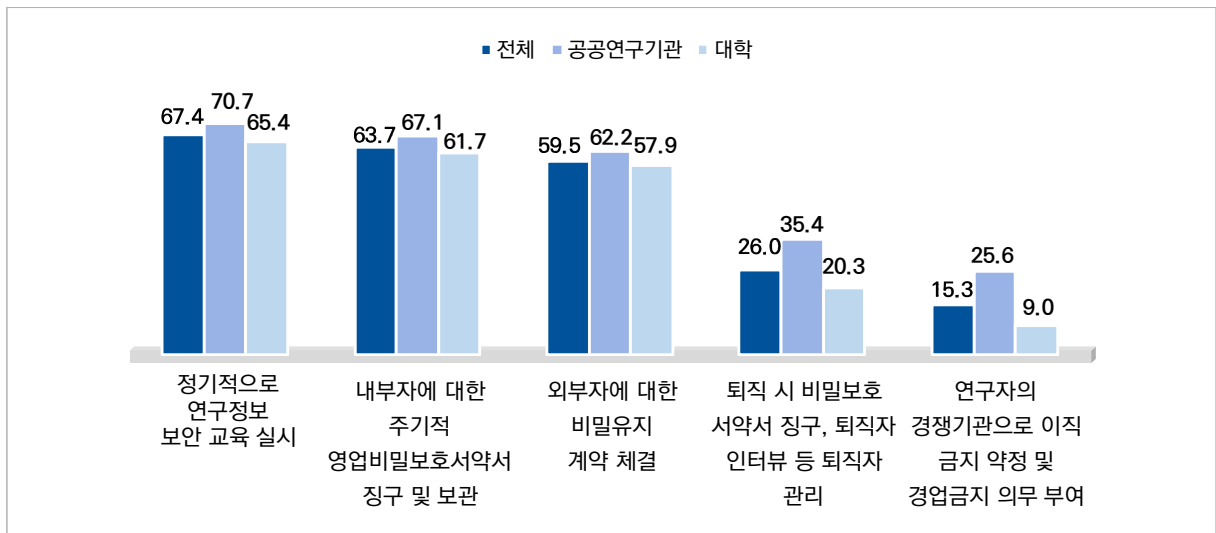
[BASE :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자료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93)]

3-1-3 [문 3-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 일반과제 등의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연구정보 보안 교육 실시’에 응답한 기관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징구 및 보관’(63.7%), ‘외부자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5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보안담당조직 미보유’의 경우 ‘정기적으로 연구정보 보안교육 실시’(65.2%)가 가장 높은 반면,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과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는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징구 및 보관’(각 69.5%, 77.8%)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0〉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인적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15)]

【표 3-10】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정기적으로 연구정보 보안 교육 실시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징구 및 보관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퇴직 시 비밀보호 서약서 징구, 퇴직자 인터뷰 등 퇴직자 관리	연구자의 경쟁기관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
<b>전체</b>	<b>(215)</b>	<b>67.4</b>	<b>63.7</b>	<b>59.5</b>	<b>26.0</b>	<b>15.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82)	70.7	67.1	62.2	35.4	25.6
대학	(133)	65.4	61.7	57.9	20.3	9.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78)	60.3	52.6	44.9	15.4	10.3
5천만원 미만	(105)	68.6	74.3	65.7	28.6	16.2
5천만원 ~ 1억원 미만	(13)	69.2	61.5	61.5	23.1	15.4
1억원 ~ 10억원 미만	(16)	87.5	50.0	81.3	50.0	31.3
10억원 이상	(3)	100.0	66.7	100.0	100.0	33.3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69)	65.2	49.3	53.6	18.8	10.1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28)	68.0	69.5	60.9	27.3	15.6
전담조직 보유	(18)	72.2	77.8	72.2	44.4	33.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34)	61.8	70.6	58.8	23.5	20.6
2건~5건 미만	(43)	74.4	55.8	53.5	25.6	9.3
5건~10건 미만	(35)	71.4	71.4	51.4	28.6	8.6
10건~50건 미만	(56)	57.1	62.5	66.1	19.6	14.3
50건 이상	(47)	74.5	61.7	63.8	34.0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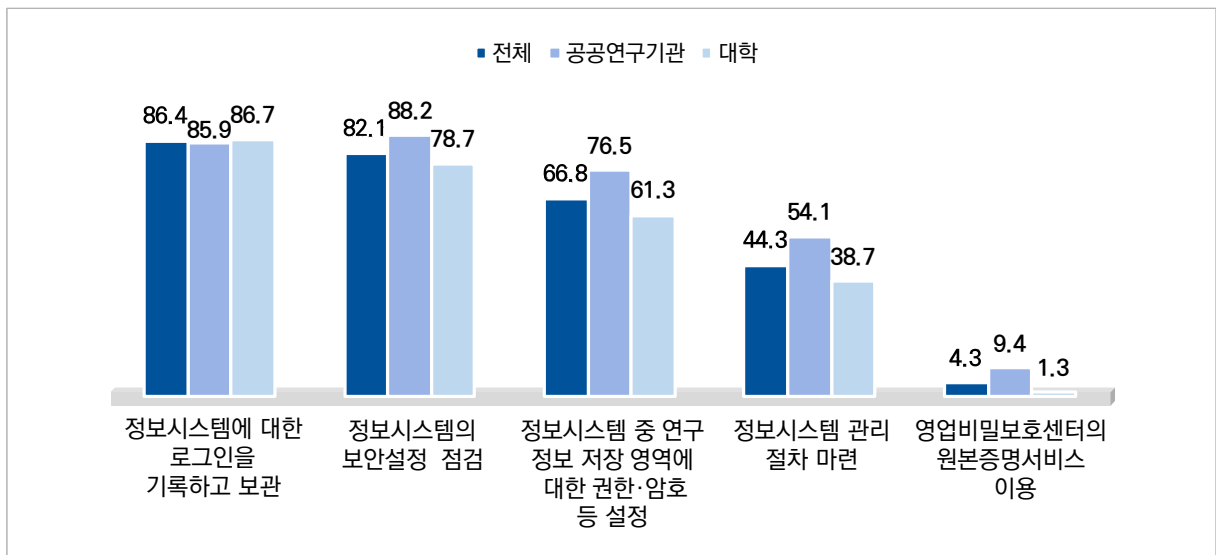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인적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15)]

3-1-4 [문 3-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

- 일반과제 등의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으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인을 기록하고 보관'에 응답한 기관이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설정 점검'(82.1%), '정보시스템 중 연구정보 저장 영역에 대한 권한·암호 등 설정'(66.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보안담당조직 미보유'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보안설정 점검'(78.5%)이 가장 높은 반면,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과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인을 기록하고 보관'(각 91.3%, 94.4%)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기술적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35)]

[표 3-1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인을 기록하고 보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설정 점검	정보시스템 중 연구정보 저장 영역에 대한 권한·암호 등 설정	정보시스템 관리 절차 마련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b>전체</b>	<b>(235)</b>	<b>86.4</b>	<b>82.1</b>	<b>66.8</b>	<b>44.3</b>	<b>4.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85)	85.9	88.2	76.5	54.1	9.4
	대학	(150)	86.7	78.7	61.3	38.7	1.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91)	76.9	72.5	57.1	28.6	2.2
	5천만원 미만	(110)	91.8	87.3	70.0	49.1	3.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92.9	85.7	92.9	78.6	7.1
	1억원 ~ 10억원 미만	(16)	93.8	93.8	75.0	68.8	18.8
	10억원 이상	(4)	100.0	100.0	75.0	5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79)	75.9	78.5	69.6	43.0	2.5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38)	91.3	83.3	63.0	40.6	3.6
	전담조직 보유	(18)	94.4	88.9	83.3	77.8	16.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36)	86.1	88.9	69.4	55.6	5.6
	2건~5건 미만	(46)	82.6	80.4	65.2	47.8	4.3
	5건~10건 미만	(39)	92.3	84.6	53.8	46.2	2.6
	10건~50건 미만	(63)	87.3	81.0	76.2	41.3	6.3
	50건 이상	(51)	84.3	78.4	64.7	35.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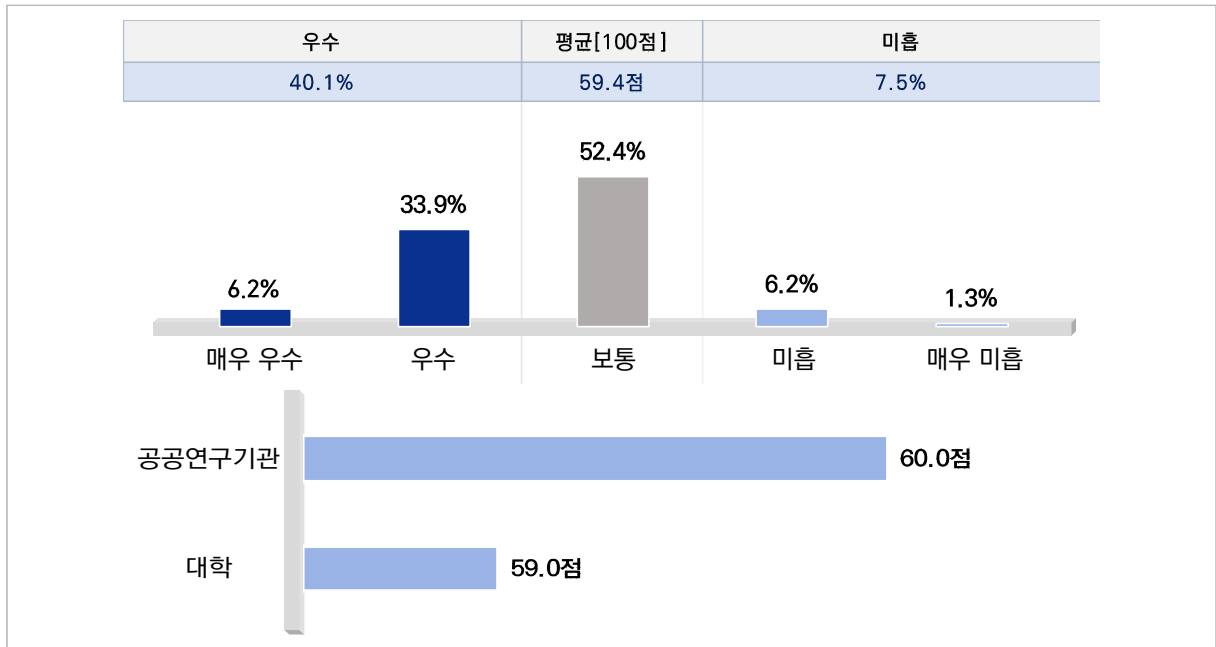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기술적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35)]

### 3-2 [문 3-2] 연구정보 보호 수준

- 일반과제 등의 연구정보 보호 수준을 '우수(매우 우수+우수)'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40.1%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연구정보 보호 수준을 평균 69.7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65.0점), '보안담당조직 미보유'(51.8점)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일수록 연구정보 보호 수준을 높게 평가함
- 연구정보 보호 수준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점수는 59.4점으로 나타남

〈그림 3-12〉 연구정보 보호 수준

(단위 : %, 점)



[BASE: 전체(n=307)]

[표 3-12] 연구정보 보호 수준

(단위 : 개,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균 (100점)	
<b>전체</b>	<b>(307)</b>	<b>6.2</b>	<b>33.9</b>	<b>52.4</b>	<b>6.2</b>	<b>1.3</b>	<b>59.4</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9.8	28.4	54.9	5.9	1.0	60.0
	대학	(205)	4.4	36.6	51.2	6.3	1.5	59.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0.0	20.5	68.5	8.9	2.1	51.9
	5천만원 미만	(126)	11.9	45.2	37.3	4.8	0.8	65.7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57.1	42.9	0.0	0.0	6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17.6	47.1	35.3	0.0	0.0	70.6
	10억원 이상	(4)	25.0	25.0	50.0	0.0	0.0	68.8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2.2	18.1	66.7	10.9	2.2	51.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8.7	46.0	42.7	2.0	0.7	65.0
	전담조직 보유	(19)	15.8	52.6	26.3	5.3	0.0	69.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1	34.7	53.1	4.1	2.0	59.7
	2건~5건 미만	(71)	0.0	25.4	60.6	12.7	1.4	52.5
	5건~10건 미만	(52)	3.8	28.8	55.8	11.5	0.0	56.3
	10건~50건 미만	(73)	8.2	42.5	43.8	2.7	2.7	62.7
	50건 이상	(62)	12.9	37.1	50.0	0.0	0.0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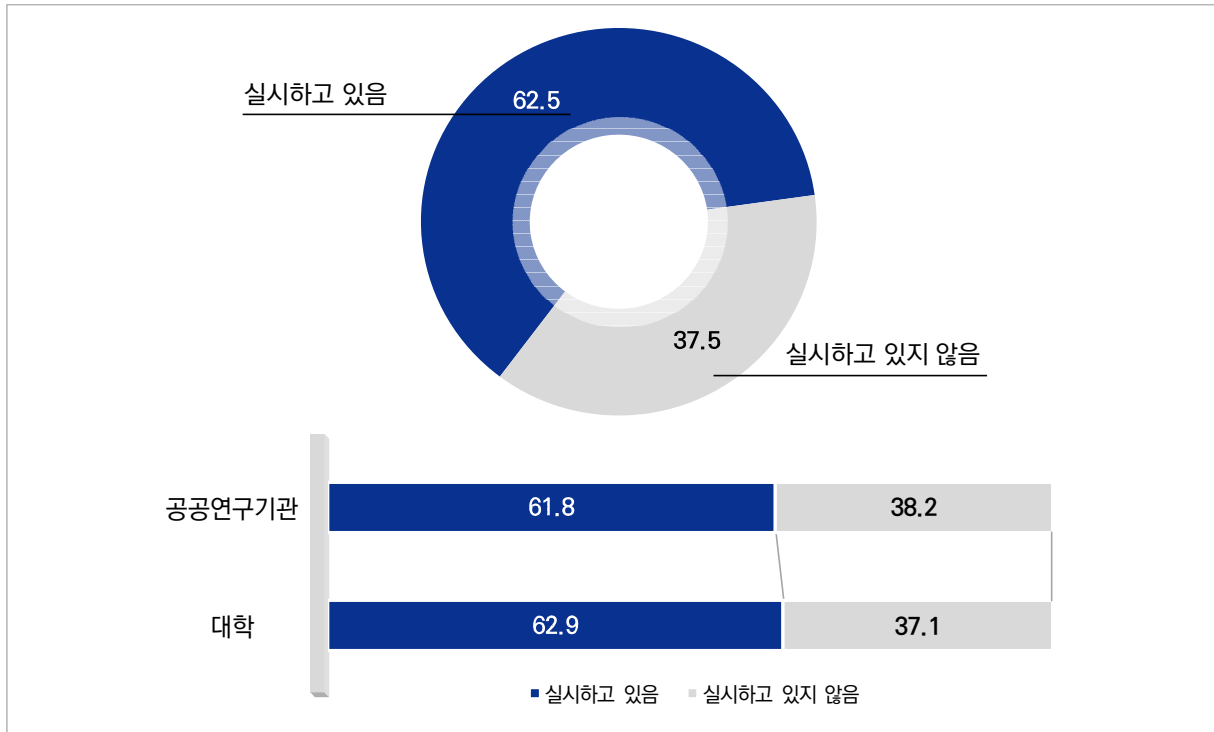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3-3-1 [문 3-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로, '실시하고 있음'에 응답한 기관은 62.5%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실시하고 있음'(9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78.0%), '보안담당조직 미보유'(41.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1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실시하고 있음 (%)	실시하고 있지 않음 (%)
전체	(307)	62.5	37.5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61.8	38.2
	대학	(205) 62.9	37.1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47.9	52.1
	5천만원 미만	(126) 73.0	27.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85.7	1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82.4	17.6
	10억원 이상	(4)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41.3	58.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78.0	22.0
	전담조직 보유	(19) 94.7	5.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1.0	49.0
	2건~5건 미만	(71) 54.9	45.1
	5건~10건 미만	(52) 67.3	32.7
	10건~50건 미만	(73) 63.0	37.0
	50건 이상	(62) 75.8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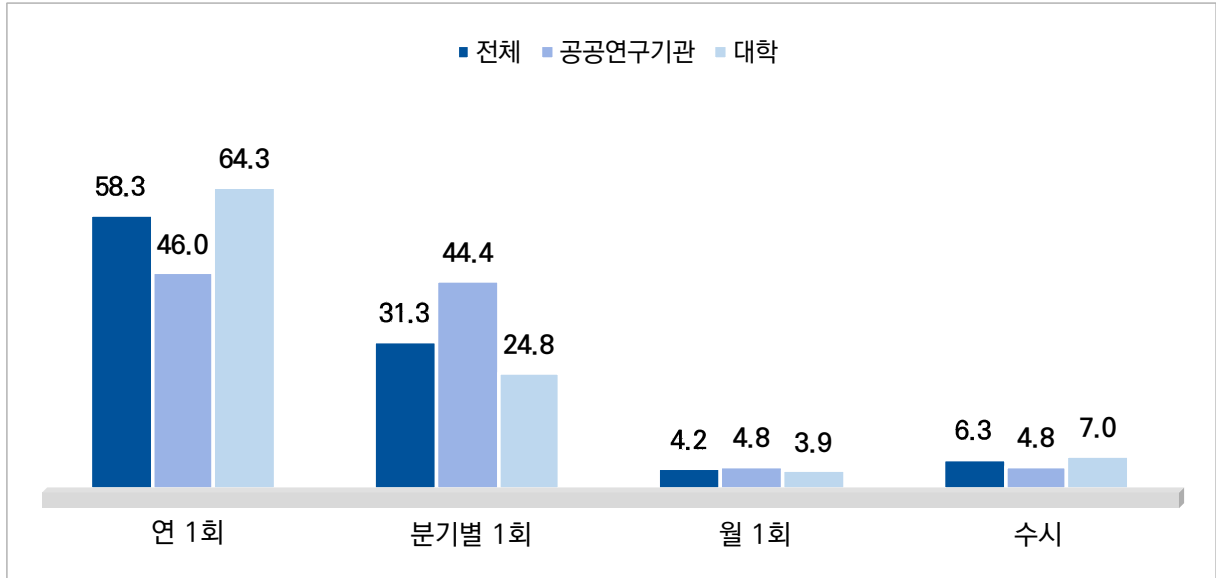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3-3-2 [문 3-3] 연구보안 교육 주기

-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교육 주기로, '연 1회'에 응답한 기관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분기별 1회'(31.3%), '수시'(6.3%), '월 1회'(4.2%)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모두 '연 1회'(각 46.0%, 64.3%)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4> 연구보안 교육 주기

(단위 : %)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n=192)]

[표 3-14] 연구보안 교육 주기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연 1회	분기별 1회	월 1회	수시
전 체		(192)	58.3	31.3	4.2	6.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63)	46.0	44.4	4.8	4.8
	대학	(129)	64.3	24.8	3.9	7.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70)	62.9	32.9	0.0	4.3
	5천만원 미만	(92)	60.9	28.3	6.5	4.3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25.0	58.3	8.3	8.3
	1억원 ~ 10억원 미만	(14)	50.0	21.4	7.1	21.4
	10억원 이상	(4)	50.0	25.0	0.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57)	63.2	33.3	1.8	1.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17)	59.8	29.1	4.3	6.8
	전담조직 보유	(18)	33.3	38.9	11.1	16.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5)	52.0	32.0	4.0	12.0
	2건~5건 미만	(39)	56.4	38.5	2.6	2.6
	5건~10건 미만	(35)	65.7	31.4	0.0	2.9
	10건~50건 미만	(46)	60.9	21.7	6.5	10.9
	50건 이상	(47)	55.3	34.0	6.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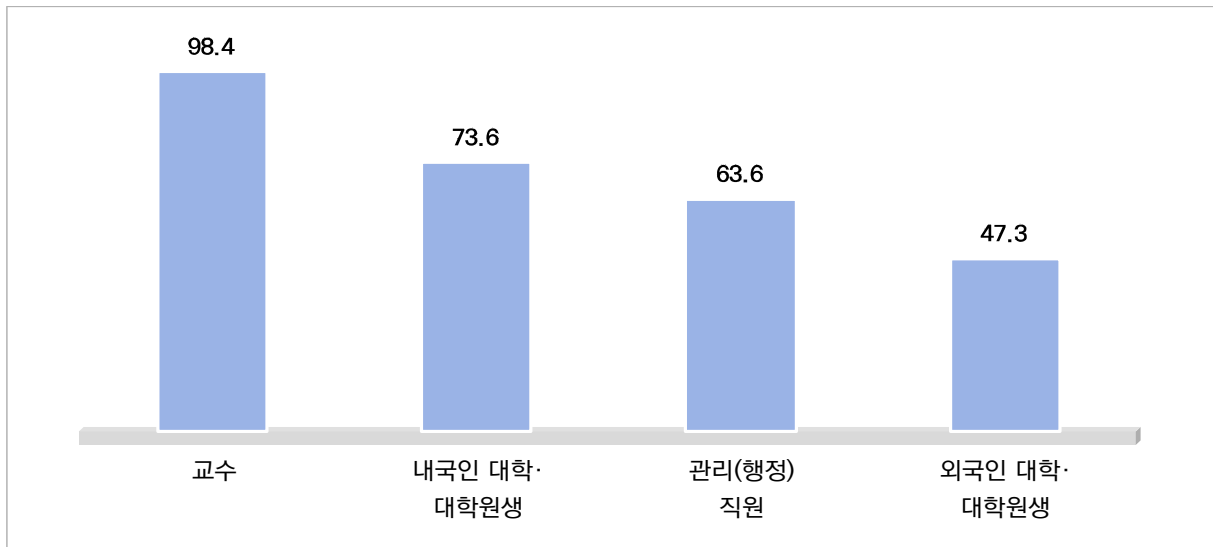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n=192)]

## 3-4-1 [문 3-4]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로, '교수'에 응답한 대학이 9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내국인 대학·대학원생'(73.6%), '관리 직원'(63.6%), '외국인 대학·대학원생'(47.3%)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전담조직 보유' 모두 '교수'(각 97.6%, 98.8%, 100.0%)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5〉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n=129)]

[표 3-15]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교수	내국인 대학·대학원생	관리(행정) 직원	외국인 대학·대학원생
전 체		(129)	98.4	73.6	63.6	47.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0)	-	-	-	-
	대학	(129)	98.4	73.6	63.6	47.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47)	97.9	74.5	59.6	38.3
	5천만원 미만	(66)	98.5	71.2	65.2	53.0
	5천만원 ~ 1억원 미만	(4)	100.0	50.0	5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9)	100.0	88.9	66.7	66.7
	10억원 이상	(3)	100.0	100.0	100.0	66.7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41)	97.6	63.4	65.9	29.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80)	98.8	78.8	62.5	57.5
	전담조직 보유	(8)	100.0	75.0	62.5	37.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4)	100.0	57.1	57.1	14.3
	2건~5건 미만	(26)	96.2	76.9	61.5	46.2
	5건~10건 미만	(24)	95.8	62.5	83.3	45.8
	10건~50건 미만	(33)	100.0	78.8	69.7	57.6
	50건 이상	(32)	100.0	81.3	46.9	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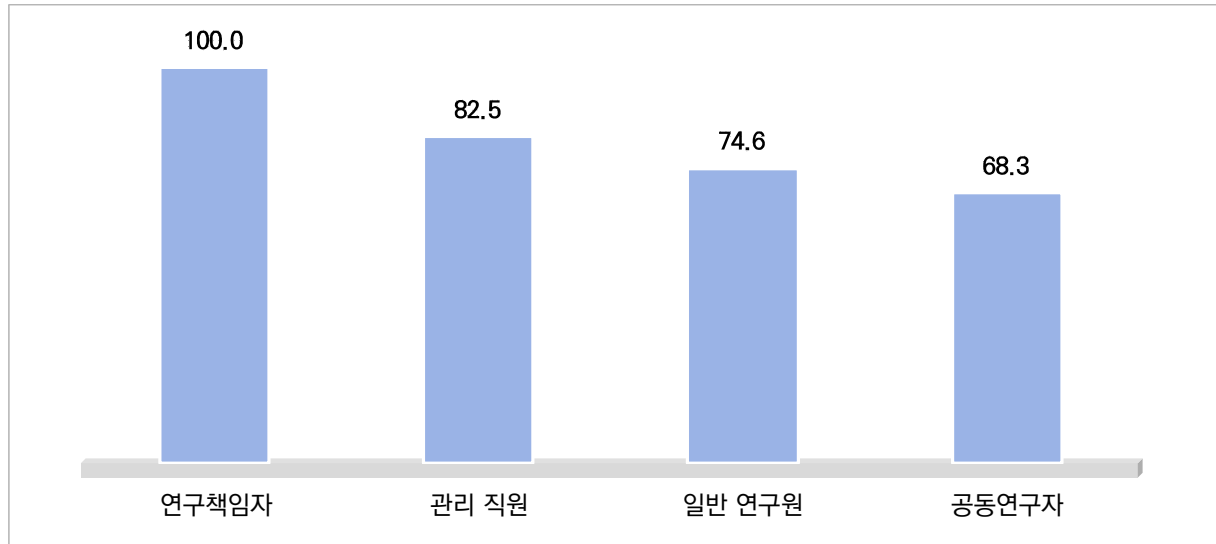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n=129)]

3-4-2 [문 3-4]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로, '연구책임자'에 응답한 공공연구기관이 100.0%로 모든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관리 직원(82.5%)', '일반 연구원(74.6%)', '공동연구자(68.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n=63)]

[표 3-16]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연구책임자	관리 직원	일반 연구원	공동연구자
전체		(63)	100.0	82.5	74.6	68.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63)	100.0	82.5	74.6	68.3
	대학	(0)	-	-	-	-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3)	100.0	78.3	56.5	52.2
	5천만원 미만	(26)	100.0	80.8	96.2	88.5
	5천만원 ~ 1억원 미만	(8)	100.0	87.5	75.0	62.5
	1억원 ~ 10억원 미만	(5)	100.0	100.0	60.0	60.0
	10억원 이상	(1)	100.0	10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6)	100.0	68.8	56.3	43.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37)	100.0	86.5	78.4	78.4
	전담조직 보유	(10)	100.0	90.0	90.0	7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1)	100.0	81.8	81.8	72.7
	2건~5건 미만	(13)	100.0	76.9	61.5	61.5
	5건~10건 미만	(11)	100.0	90.9	72.7	63.6
	10건~50건 미만	(13)	100.0	69.2	100.0	76.9
	50건 이상	(15)	100.0	93.3	60.0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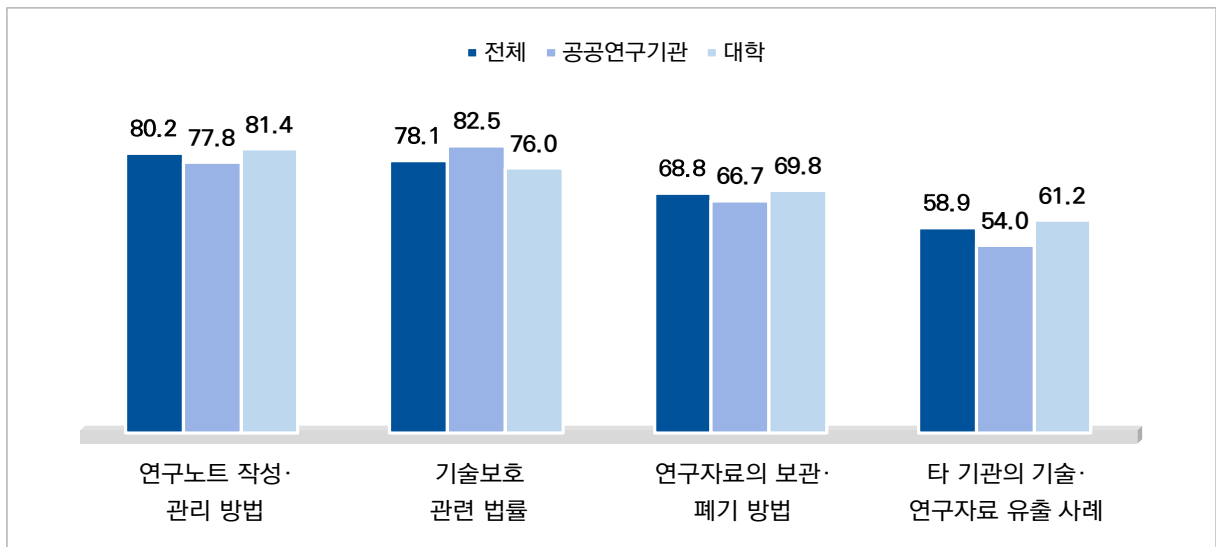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n=63)]

### 3-5 [문 3-5]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연구노트 작성·관리 방법’에 응답한 기관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78.1%), ‘연구자료의 보관·폐기 방법’(6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보호 관련 법률’(82.5%)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의 경우 ‘연구노트 작성·관리 방법’(81.4%)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7〉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n=192)]

〔표 3-17〕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연구노트 작성·관리 방법	기술보호 관련 법률	연구자료의 보관·폐기 방법	타 기관의 기술·연구자료 유출 사례
전체		(192)	80.2	78.1	68.8	58.9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63)	77.8	82.5	66.7	54.0
	대학	(129)	81.4	76.0	69.8	61.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70)	78.6	68.6	64.3	52.9
	5천만원 미만	(92)	82.6	79.3	79.3	62.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58.3	91.7	33.3	50.0
	1억원 ~ 10억원 미만	(14)	85.7	100.0	50.0	64.3
	10억원 이상	(4)	100.0	100.0	75.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57)	73.7	63.2	57.9	52.6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17)	85.5	82.1	77.8	62.4
	전담조직 보유	(18)	66.7	100.0	44.4	55.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5)	76.0	72.0	68.0	36.0
	2건~5건 미만	(39)	76.9	76.9	61.5	51.3
	5건~10건 미만	(35)	82.9	82.9	77.1	57.1
	10건~50건 미만	(46)	80.4	82.6	73.9	67.4
	50건 이상	(47)	83.0	74.5	63.8	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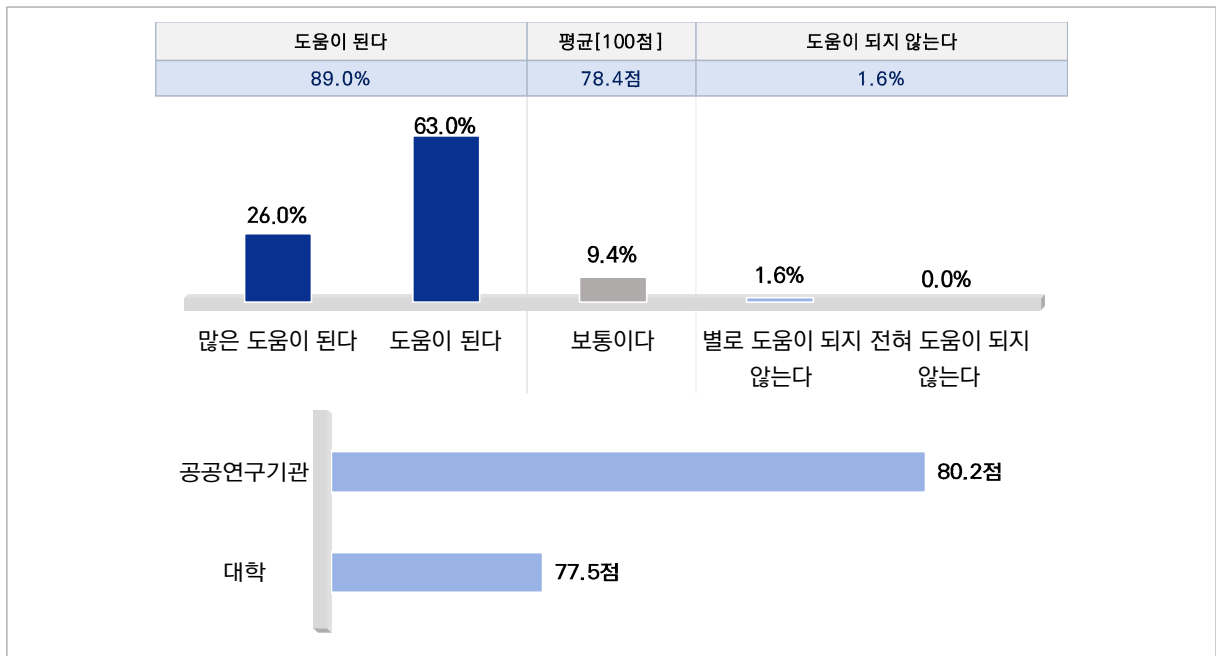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n=192)]

### 3-6 [문 3-6]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

-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들의 보안인식 개선 및 연구정보 보호활동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도움이 된다(많은 도움이 된다+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기관은 89.0%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를 평균 83.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80.1점), ‘보안담당조직 미보유’(73.2점) 순으로 나타남
-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점수는 78.4점으로 나타남

〈그림 3-18〉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

(단위 : %, 점)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n=192)]

[표 3-18]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

(단위 : 개, %, 점)

구분	사례수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균 (100점)	
<b>전 체</b>	<b>(192)</b>	<b>26.0</b>	<b>63.0</b>	<b>9.4</b>	<b>1.6</b>	<b>0.0</b>	<b>78.4</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63)	31.7	57.1	11.1	0.0	0.0	80.2
	대학	(129)	23.3	65.9	8.5	2.3	0.0	77.5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70)	10.0	75.7	12.9	1.4	0.0	73.6
	5천만원 미만	(92)	39.1	53.3	6.5	1.1	0.0	82.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16.7	75.0	8.3	0.0	0.0	77.1
	1억원 ~ 10억원 미만	(14)	28.6	57.1	7.1	7.1	0.0	76.8
	10억원 이상	(4)	25.0	50.0	25.0	0.0	0.0	7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57)	15.8	63.2	19.3	1.8	0.0	73.2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17)	29.9	62.4	6.0	1.7	0.0	80.1
	전담조직 보유	(18)	33.3	66.7	0.0	0.0	0.0	83.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5)	24.0	72.0	0.0	4.0	0.0	79.0
	2건~5건 미만	(39)	20.5	69.2	7.7	2.6	0.0	76.9
	5건~10건 미만	(35)	22.9	65.7	8.6	2.9	0.0	77.1
	10건~50건 미만	(46)	39.1	52.2	8.7	0.0	0.0	82.6
	50건 이상	(47)	21.3	61.7	17.0	0.0	0.0	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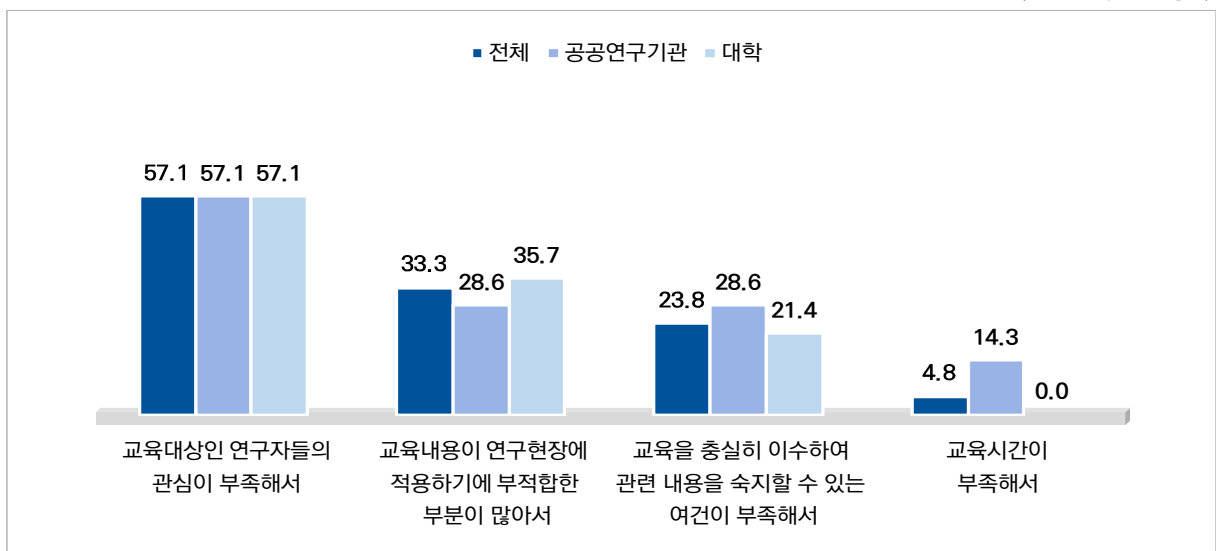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n=192)]

3-6-1 [문 3-6-1]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들의 보안인식 개선 및 연구정보 보호활동 수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 ‘교육대상인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해서’에 응답한 기관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교육내용이 연구현장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아서’(33.3%),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2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모두 ‘교육대상인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해서’(각 57.1%)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9〉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n=21)]

[표 3-19]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교육대상인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교육내용이 연구현장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아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교육시간이 부족해서	
<b>전체</b>	<b>(21)</b>	<b>57.1</b>	<b>33.3</b>	<b>23.8</b>	<b>4.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7)	57.1	28.6	28.6	14.3
	대학	(14)	57.1	35.7	21.4	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0)	50.0	20.0	30.0	0.0
	5천만원 미만	(7)	57.1	28.6	14.3	14.3
	5천만원 ~ 1억원 미만	(1)	100.0	100.0	10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2)	50.0	100.0	0.0	0.0
	10억원 이상	(1)	10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2)	58.3	25.0	33.3	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9)	55.6	44.4	11.1	11.1
	전담조직 보유	(0)	-	-	-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	0.0	0.0	100.0	0.0
	2건~5건 미만	(4)	50.0	25.0	25.0	0.0
	5건~10건 미만	(4)	25.0	50.0	25.0	0.0
	10건~50건 미만	(4)	25.0	50.0	25.0	0.0
	50건 이상	(8)	100.0	25.0	12.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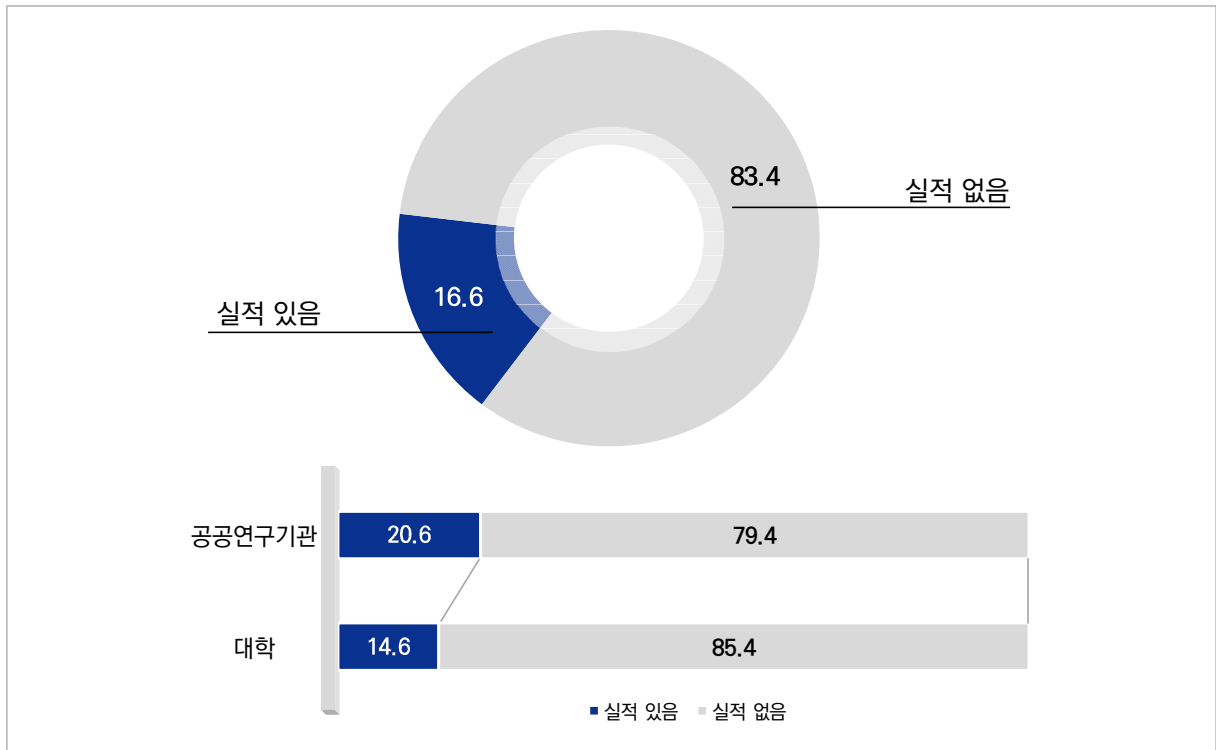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n=21)]

### 3-7 [문 3-7]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로, '국제공동연구 실적 있음'에 응답한 기관은 16.6%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실적 있음'(2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14.6%)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실적 있음'(36.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20.0%), '보안담당조직 미보유'(1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0〉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20]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국제공동연구 실적 있음	국제공동연구 실적 없음
전체		(307)	16.6	83.4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0.6	79.4
	대학	(205)	14.6	85.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8.9	91.1
	5천만원 미만	(126)	21.4	78.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35.7	6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35.3	64.7
	10억원 이상	(4)	0.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0.1	89.9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0.0	80.0
	전담조직 보유	(19)	36.8	63.2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0.2	89.8
	2건~5건 미만	(71)	14.1	85.9
	5건~10건 미만	(52)	17.3	82.7
	10건~50건 미만	(73)	19.2	80.8
	50건 이상	(62)	21.0	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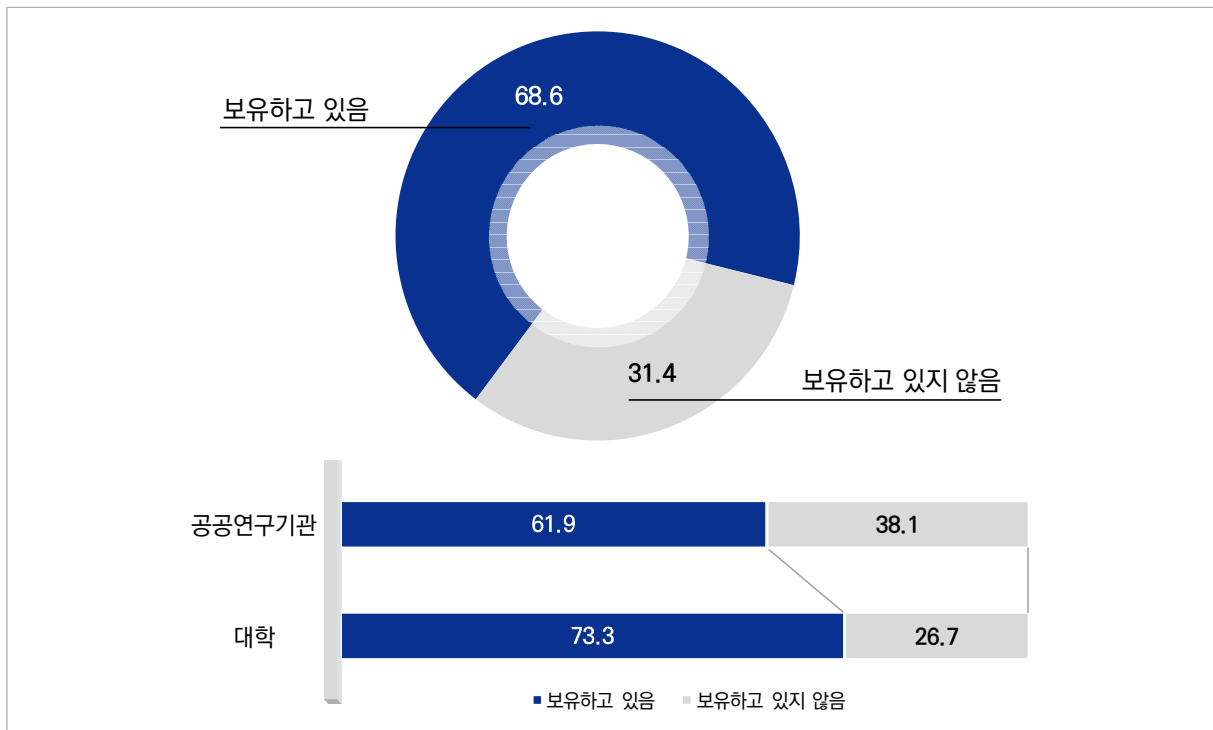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3-8 [문 3-8]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로,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음’에 응답한 기관은 68.6%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의 경우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음’(8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담조직 보유’(71.4%), ‘보안 담당조직 미보유’(42.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1〉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단위 : %)



[BASE: 국제공동연구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n=51)]

〔표 3-21〕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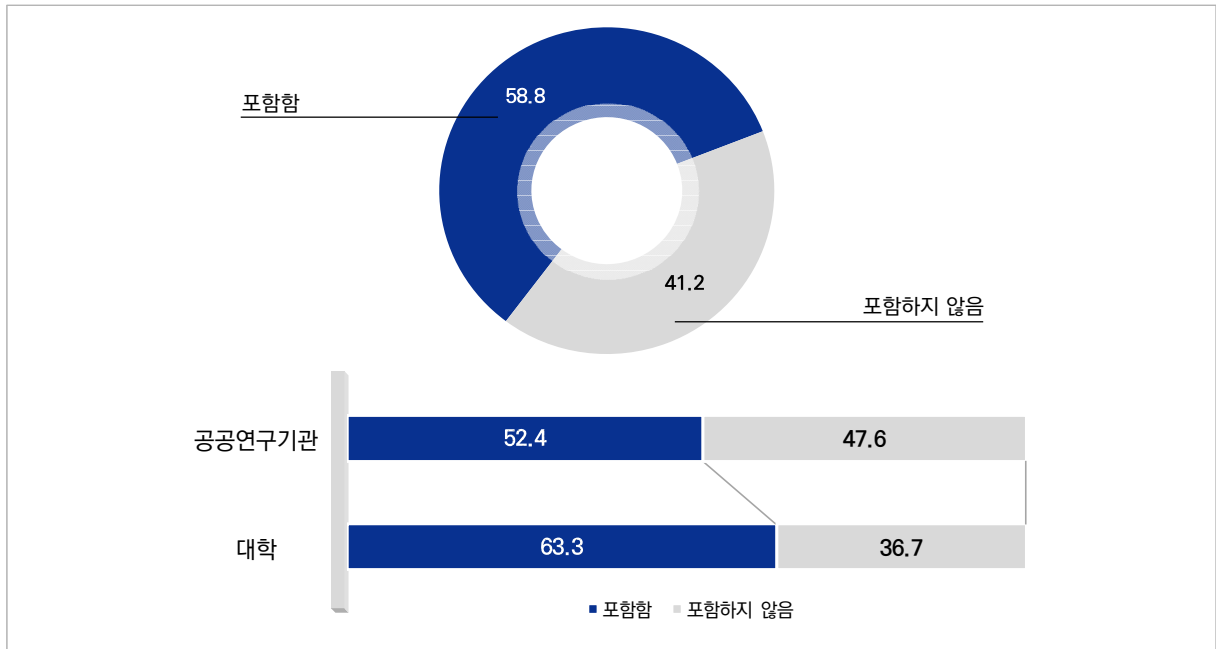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b>전체</b>	<b>(51)</b>	<b>68.6</b>	<b>31.4</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61.9	38.1
	대학	73.3	26.7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46.2	53.8
	5천만원 미만	77.8	22.2
	5천만원 ~ 1억원 미만	60.0	40.0
	1억원 ~ 10억원 미만	83.3	16.7
	10억원 이상	-	-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42.9	57.1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80.0	20.0
	전담조직 보유	71.4	28.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60.0	40.0
	2건~5건 미만	90.0	10.0
	5건~10건 미만	55.6	44.4
	10건~50건 미만	64.3	35.7
	50건 이상	69.2	30.8

[BASE: 국제공동연구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n=51)]

**3-9 [문 3-9] 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 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함'에 응답한 기관은 58.8%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보안규정 지침에 외국인 참여 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함'(71.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70.0%), '보안 담당조직 미보유'(28.6%)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2〉 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단위 : %)



[BASE: 국제공동연구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n=51)]

〈표 3-22〉 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보안규정 지침에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함	포함하지 않음
<b>전체</b>	<b>(51)</b>	<b>58.8</b>	<b>41.2</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2.4	47.6
	대학	63.3	36.7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3.1	76.9
	5천만원 미만	70.4	29.6
	5천만원 ~ 1억원 미만	60.0	40.0
	1억원 ~ 10억원 미만	83.3	16.7
	10억원 이상	-	-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28.6	71.4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70.0	30.0
	전담조직 보유	71.4	28.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60.0	40.0
	2건~5건 미만	80.0	20.0
	5건~10건 미만	33.3	66.7
	10건~50건 미만	64.3	35.7
	50건 이상	53.8	46.2

[BASE: 국제공동연구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n=51)]

**[\*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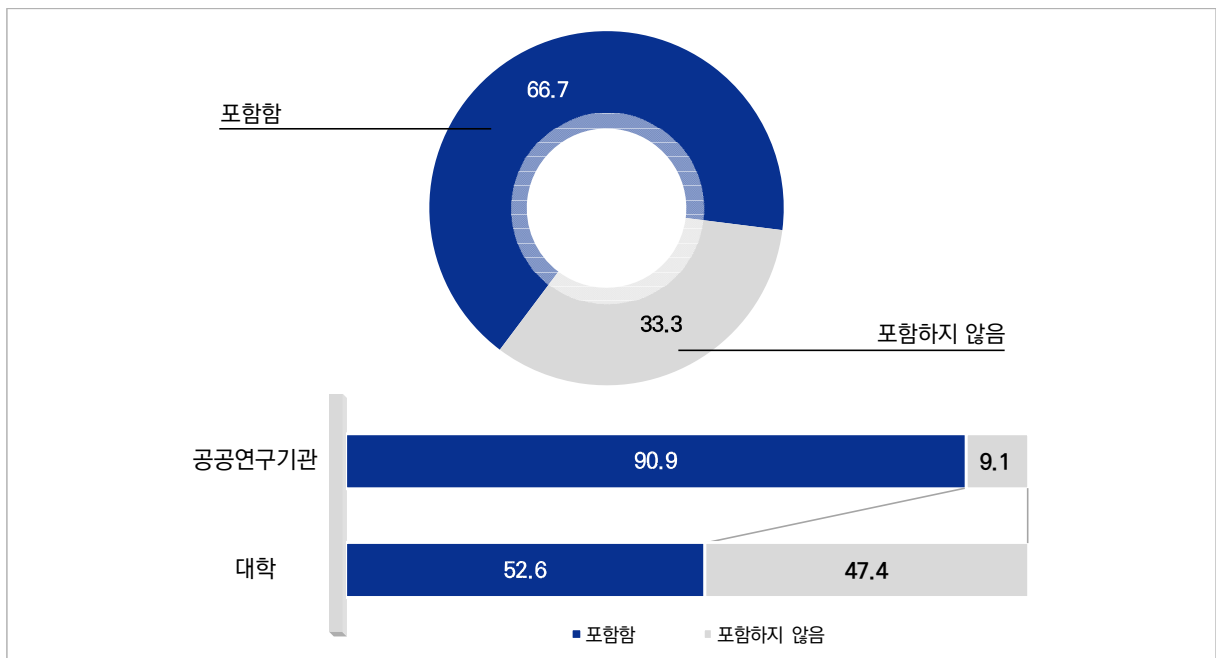
◆ 보안과제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기관) 등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1 [문 3-9-1] 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 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함’에 응답한 기관은 66.7%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내용을 포함함’(90.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52.6%)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함’(8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66.7%), ‘보안담당 조직 미보유’(50.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3> 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단위 : %)



[BASE: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응답한 기관(n=30)]

[표 3-23] 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함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전체	(30)	66.7	33.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1)	90.9	9.1
대학	(19)	52.6	47.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	33.3	66.7
5천만원 미만	(19)	68.4	31.6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10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5)	60.0	40.0
10억원 이상	(0)	-	-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4)	50.0	5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21)	66.7	33.3
전담조직 보유	(5)	80.0	2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3)	100.0	0.0
2건~5건 미만	(8)	75.0	25.0
5건~10건 미만	(3)	66.7	33.3
10건~50건 미만	(9)	66.7	33.3
50건 이상	(7)	42.9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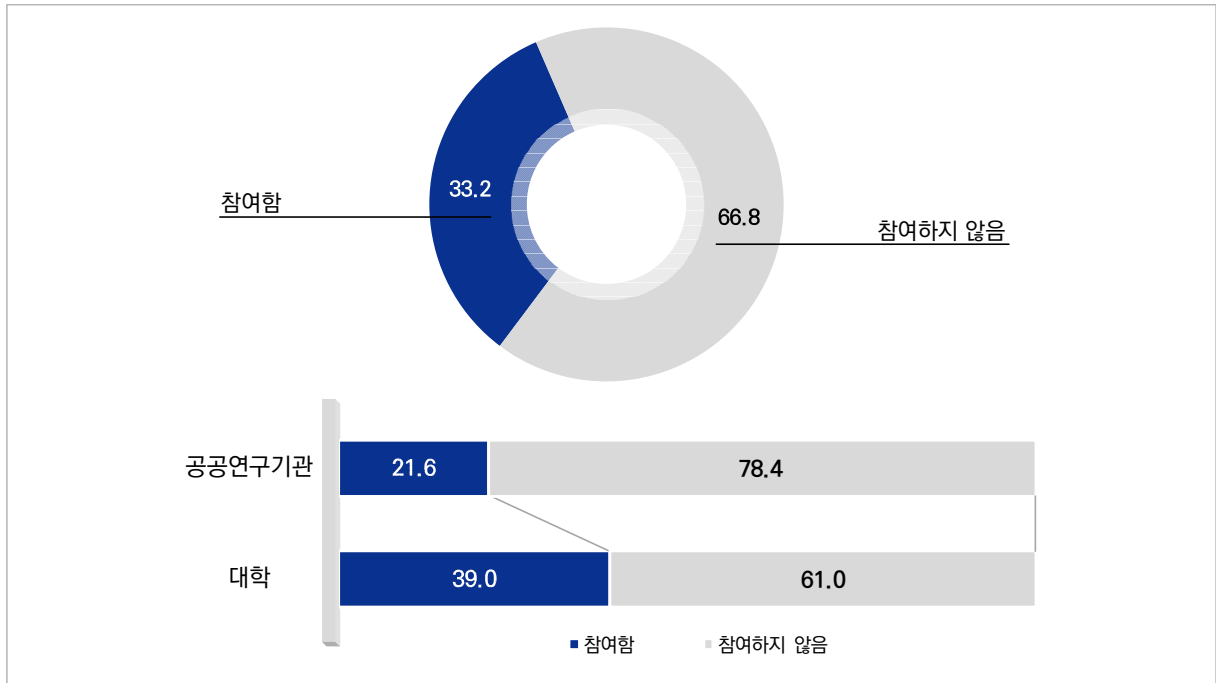
[BASE: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응답한 기관(n=30)]

### 3-10 [문 3-10] 외국인의 연구 참여 여부

- 연구수행에 있어 외국인 연구원의 참여 여부로,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함’에 응답한 기관은 33.2%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로 살펴보면, ‘50건 이상’의 경우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함’(58.1%)에 응답한 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건~50건 미만’(39.7%), ‘5~10건 미만’(3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가 많을수록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24〉 외국인의 연구 참여 여부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24〕 외국인의 연구 참여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함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
전체	(307)	33.2	66.8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1.6	78.4
	대학	(205) 39.0	61.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21.9	78.1
	5천만원 미만	(126) 42.9	57.1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1.4	78.6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2.9	47.1
	10억원 이상	(4)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21.7	78.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42.7	57.3
	전담조직 보유	(19) 42.1	57.9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6.3	83.7
	2건~5건 미만	(71) 16.9	83.1
	5건~10건 미만	(52) 32.7	67.3
	10건~50건 미만	(73) 39.7	60.3
	50건 이상	(62) 58.1	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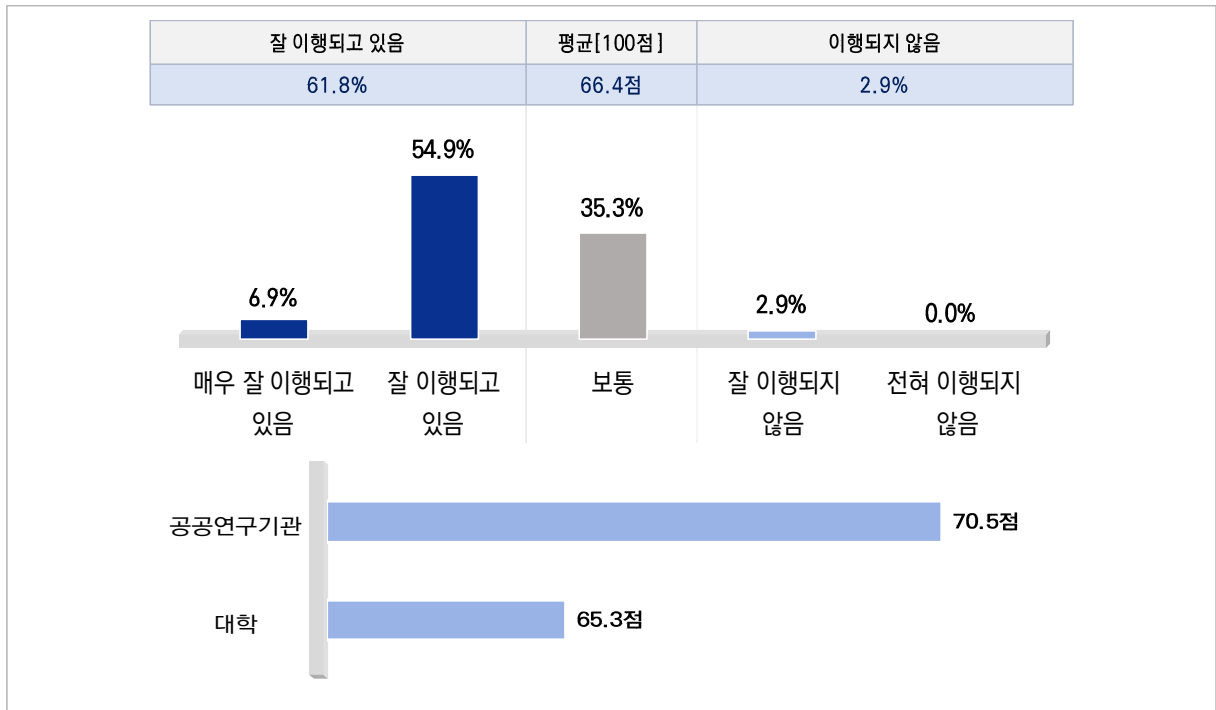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3-11 [문 3-11]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 연구정보의 보안을 위한 외국인 연구원 관리수준으로, '잘 이행되고 있음(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 잘 이행되고 있음)'에 응답한 기관은 61.8%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을 평균 71.9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68.8점), '보안담당조직 미보유'(60.0점)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점수는 66.4점으로 나타남

<그림 3-25>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단위 : %)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표 3-25]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단위 : 개,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	잘 이행되고 있음	보통	잘 이행되지 않음	전혀 이행되지 않음	평균 (100점)	
<b>전체</b>	<b>(102)</b>	<b>6.9</b>	<b>54.9</b>	<b>35.3</b>	<b>2.9</b>	<b>0.0</b>	<b>66.4</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13.6	59.1	22.7	4.5	0.0	70.5
	대학	(80)	5.0	53.8	38.8	2.5	0.0	65.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2)	0.0	43.8	56.3	0.0	0.0	60.9
	5천만원 미만	(54)	11.1	63.0	22.2	3.7	0.0	70.4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0.0	66.7	33.3	0.0	0.0	66.7
	1억원 ~ 10억원 미만	(9)	11.1	55.6	33.3	0.0	0.0	69.4
보안 담당조직	10억원 이상	(4)	0.0	25.0	50.0	25.0	0.0	50.0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0)	0.0	40.0	60.0	0.0	0.0	6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4)	7.8	62.5	26.6	3.1	0.0	68.8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전담조직 보유	(8)	25.0	50.0	12.5	12.5	0.0	71.9
	2건 미만	(8)	0.0	75.0	25.0	0.0	0.0	68.8
	2건~5건 미만	(12)	0.0	58.3	41.7	0.0	0.0	64.6
	5건~10건 미만	(17)	17.6	47.1	35.3	0.0	0.0	70.6
	10건~50건 미만	(29)	3.4	72.4	17.2	6.9	0.0	68.1
50건 이상	(36)	8.3	38.9	50.0	2.8	0.0	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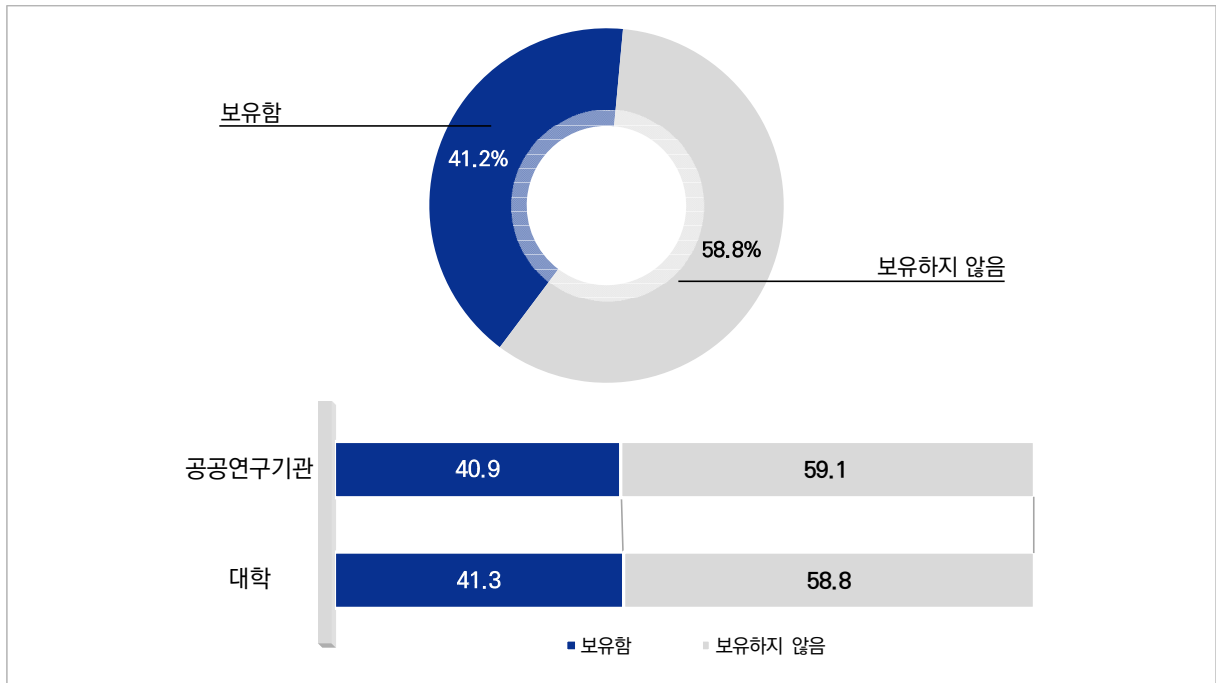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 3-12 [문 3-12]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로,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유함’에 응답한 기관은 41.2%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유함’(62.5%)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46.9%), ‘보안담당조직 미보유’(23.3%)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하는 기관일수록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26〉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단위 : %)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표 3-26】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유함 (%)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
<b>전 체</b>	<b>(102)</b>	<b>41.2</b>	<b>58.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40.9	59.1
	대학	(80) 41.3	58.8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2) 37.5	62.5
	5천만원 미만	(54) 42.6	57.4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66.7	33.3
	1억원 ~ 10억원 미만	(9) 55.6	44.4
	10억원 이상	(4) 0.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0) 23.3	76.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4) 46.9	53.1
	전담조직 보유	(8) 62.5	37.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8) 50.0	50.0
	2건~5건 미만	(12) 50.0	50.0
	5건~10건 미만	(17) 41.2	58.8
	10건~50건 미만	(29) 37.9	62.1
	50건 이상	(36) 38.9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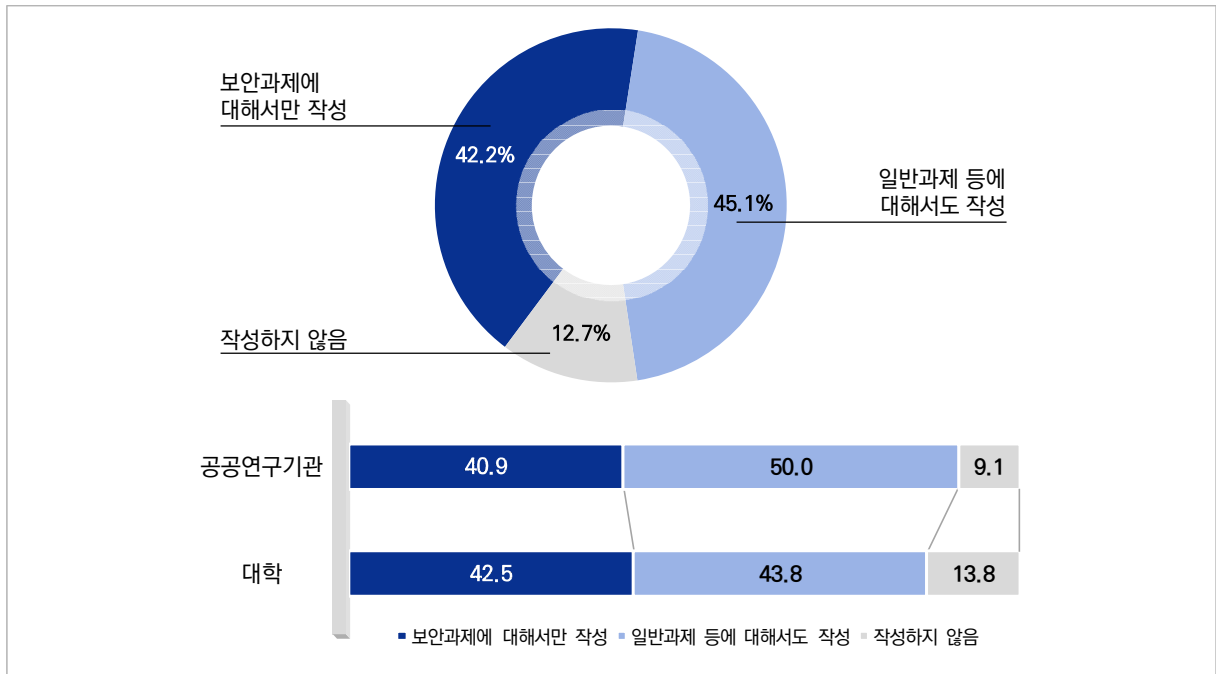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 3-13 [문 3-13] 외국인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 외국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등의 작성 여부로,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작성’에 응답한 기관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작성(42.2%)’, ‘작성하지 않음(12.7%)’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보안담당조직 미보유’와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작성’(각 46.7%, 87.5%)이 가장 높은 반면,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의 경우는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작성’(57.8%)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27〉 외국인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단위 : %)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표 3-27】 외국인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작성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작성	작성하지 않음	
<b>전 체</b>	<b>(102)</b>	<b>42.2</b>	<b>45.1</b>	<b>12.7</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40.9	50.0	9.1
	대학	(80)	42.5	43.8	13.8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2)	50.0	21.9	28.1
	5천만원 미만	(54)	40.7	53.7	5.6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33.3	66.7	0.0
	1억원 ~ 10억원 미만	(9)	33.3	55.6	11.1
	10억원 이상	(4)	25.0	75.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0)	46.7	26.7	26.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4)	34.4	57.8	7.8
	전담조직 보유	(8)	87.5	12.5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8)	50.0	37.5	12.5
	2건~5건 미만	(12)	50.0	25.0	25.0
	5건~10건 미만	(17)	47.1	41.2	11.8
	10건~50건 미만	(29)	27.6	58.6	13.8
	50건 이상	(36)	47.2	44.4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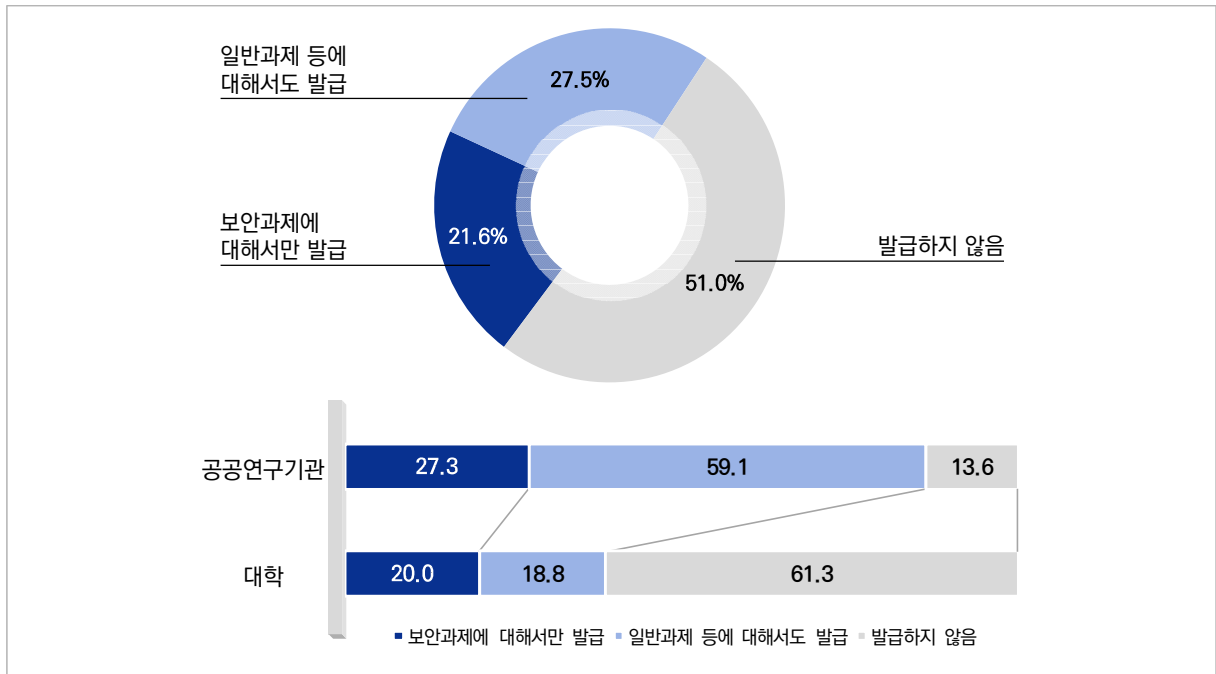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 3-14 [문 3-14]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 외국인 연구원에 대해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출입 가능한 지역만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증 발급 여부로, ‘발급하지 않음’에 응답한 기관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발급’(27.5%),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발급’(21.6%)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보안담당조직 미보유’와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의 경우 ‘발급하지 않음’(각 56.7%, 53.1%)이 가장 높은 반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는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발급’(50.0%)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28〉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단위 : %)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표 3-28]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발급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발급	발급하지 않음
전체		(102)	21.6	27.5	51.0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27.3	59.1	13.6
	대학	(80)	20.0	18.8	61.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2)	21.9	12.5	65.6
	5천만원 미만	(54)	20.4	29.6	5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0.0	66.7	33.3
	1억원 ~ 10억원 미만	(9)	44.4	44.4	11.1
	10억원 이상	(4)	0.0	50.0	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0)	26.7	16.7	56.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4)	17.2	29.7	53.1
	전담조직 보유	(8)	37.5	50.0	12.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8)	12.5	25.0	62.5
	2건~5건 미만	(12)	25.0	16.7	58.3
	5건~10건 미만	(17)	29.4	11.8	58.8
	10건~50건 미만	(29)	10.3	44.8	44.8
	50건 이상	(36)	27.8	25.0	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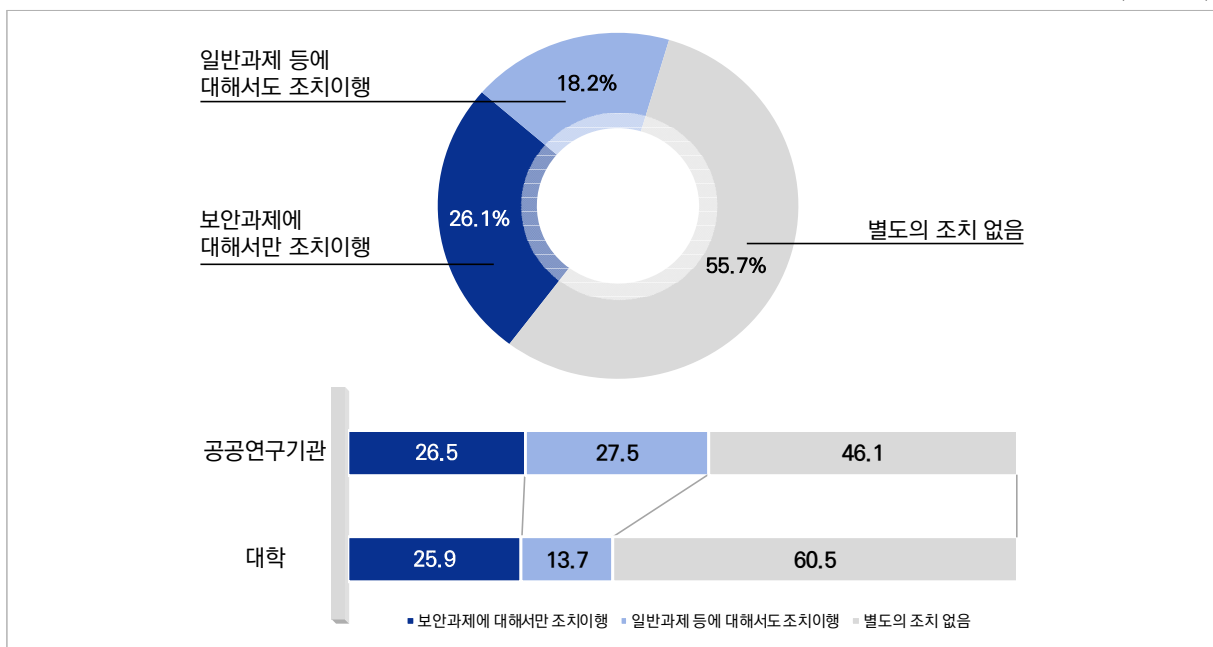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 3-15 [문 3-15]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를 대상으로 한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로, '별도의 조치 없음'에 응답한 기관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조치이행'(26.1%),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조치이행'(18.2%)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보안담당조직 미보유'와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의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음'(각 76.8%, 40.7%)이 가장 높은 반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는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조치 이행'(42.1%)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29〉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29】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조치이행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조치이행	별도의 조치 없음
전체	(307)	26.1	18.2	55.7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6.5	27.5	46.1
	대학	(205) 25.9	13.7	60.5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6.4	7.5	76.0
	5천만원 미만	(126) 33.3	27.0	39.7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50.0	14.3	35.7
	1억원 ~ 10억원 미만	(17) 29.4	41.2	29.4
	10억원 이상	(4) 50.0	5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5.9	7.2	76.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33.3	26.0	40.7
	전담조직 보유	(19) 42.1	36.8	21.1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8.4	10.2	71.4
	2건~5건 미만	(71) 28.2	11.3	60.6
	5건~10건 미만	(52) 36.5	17.3	46.2
	10건~50건 미만	(73) 20.5	26.0	53.4
	50건 이상	(62) 27.4	24.2	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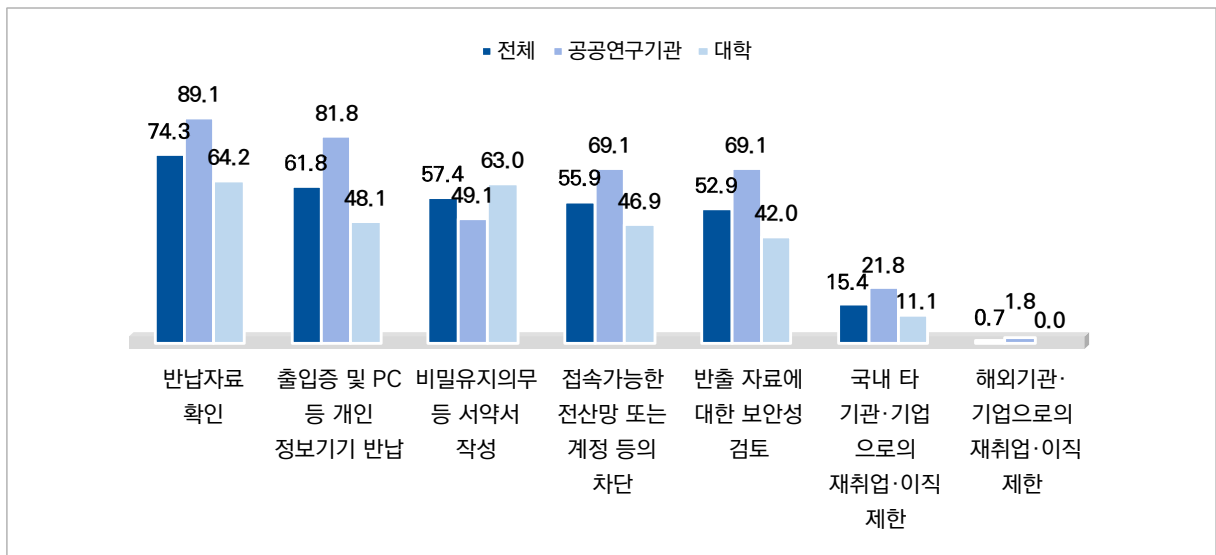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3-16 [문 3-16]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로, ‘반납자료 확인’에 응답한 기관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출입증 및 PC 등 개인 정보기기 반납’(61.8%), ‘비밀유지의무 등 서약서 작성’(5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모두 ‘반납자료 확인’(각 89.1%, 64.2%)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0〉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단위 : %, 복수 응답)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 대상으로 연구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기관(n=136)]

【표 3-30】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반납자료 확인	출입증 및 PC 등 개인 정보기기 반납	비밀유지의무 등 서약서 작성	접속가능한 전산망 또는 계정 등의 차단	반출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국내 타 기관·기업으로의 재취업·이직 제한	해외 기관·기업으로의 재취업·이직 제한
<b>전체</b>	<b>(136)</b>	<b>74.3</b>	<b>61.8</b>	<b>57.4</b>	<b>55.9</b>	<b>52.9</b>	<b>15.4</b>	<b>0.7</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5)	89.1	81.8	49.1	69.1	21.8	1.8
	대학	(81)	64.2	48.1	63.0	46.9	11.1	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5)	62.9	42.9	54.3	42.9	34.3	2.9
	5천만원 미만	(76)	72.4	64.5	61.8	60.5	55.3	14.5
	5천만원 ~ 1억원 미만	(9)	100.0	100.0	22.2	77.8	88.9	33.3
	1억원 ~ 10억원 미만	(12)	100.0	66.7	58.3	50.0	75.0	41.7
보안 담당조직	10억원 이상	(4)	75.0	75.0	75.0	50.0	25.0	25.0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2)	62.5	43.8	53.1	43.8	34.4	9.4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89)	76.4	65.2	56.2	56.2	55.1	18.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전담조직 보유	(15)	86.7	80.0	73.3	80.0	80.0	13.3
	2건 미만	(14)	78.6	71.4	42.9	64.3	57.1	7.1
	2건~5건 미만	(28)	71.4	50.0	50.0	32.1	42.9	14.3
	5건~10건 미만	(28)	75.0	53.6	60.7	57.1	53.6	17.9
	10건~50건 미만	(34)	76.5	73.5	64.7	58.8	52.9	20.6
50건 이상	(32)	71.9	62.5	59.4	68.8	59.4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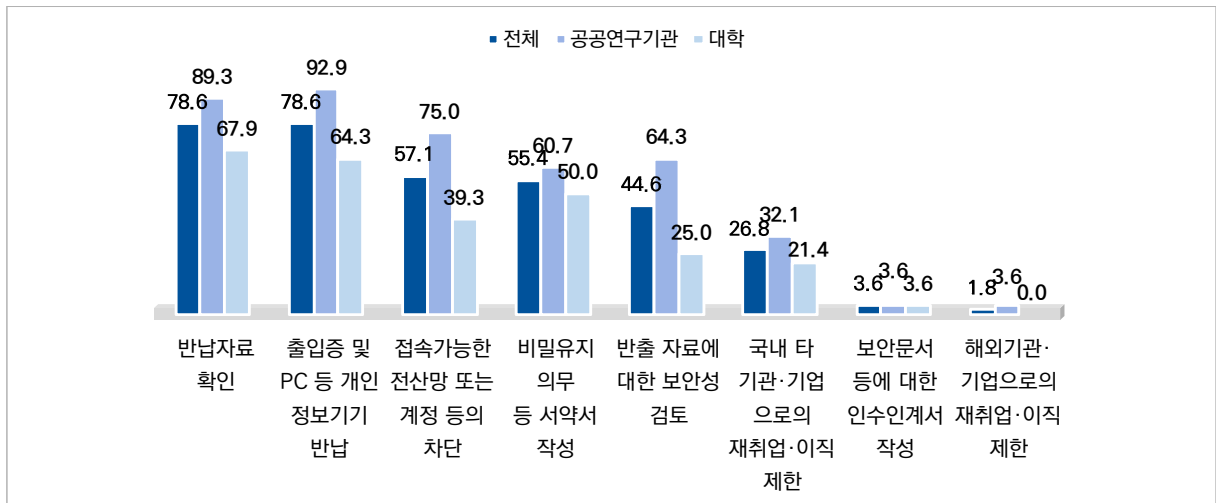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 대상으로 연구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기관(n=136)]

### 3-17 [문 3-17]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로, ‘반납 자료 확인’, ‘출입증 및 PC 등 개인 정보기기 반납’에 응답한 기관이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접속가능한 전산망 또는 계정 등의 차단’(57.1%), ‘비밀유지의무 등 서약서 작성’(5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출입증 및 PC 등 개인 정보기기 반납’(92.9%)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의 경우는 ‘반납자료 확인’(67.9%)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1〉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단위 : %, 복수 응답)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 대상으로 일반과제에도 연구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기관(n=56)]

〈표 3-31〉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반납 자료 확인	출입증 및 PC 등 개인 정보기기 반납	접속 가능한 전산망 또는 계정 등의 차단	비밀 유지 의무 등 서약서 작성	반출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국내 타 기관·기업으로의 재취업·이직 제한	보안 문서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 작성	해외 기관·기업으로의 재취업·이직 제한
<b>전체</b>	<b>(56)</b>	<b>78.6</b>	<b>78.6</b>	<b>57.1</b>	<b>55.4</b>	<b>44.6</b>	<b>26.8</b>	<b>3.6</b>	<b>1.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8)	89.3	92.9	75.0	60.7	64.3	32.1	3.6	3.6
대학	(28)	67.9	64.3	39.3	50.0	25.0	21.4	3.6	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1)	72.7	72.7	36.4	63.6	27.3	18.2	0.0	0.0
5천만원 미만	(34)	79.4	79.4	61.8	58.8	47.1	20.6	2.9	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2)	50.0	100.0	50.0	0.0	50.0	50.0	50.0	50.0
1억원 ~ 10억원 미만	(7)	85.7	71.4	57.1	42.9	42.9	57.1	0.0	0.0
10억원 이상	(2)	100.0	100.0	100.0	50.0	100.0	5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0)	60.0	60.0	30.0	70.0	10.0	30.0	0.0	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39)	84.6	79.5	61.5	48.7	48.7	30.8	5.1	2.6
전담조직 보유	(7)	71.4	100.0	71.4	71.4	71.4	0.0	0.0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5)	80.0	60.0	40.0	60.0	40.0	20.0	0.0	0.0
2건~5건 미만	(8)	62.5	62.5	37.5	37.5	12.5	37.5	0.0	0.0
5건~10건 미만	(9)	88.9	88.9	66.7	55.6	33.3	22.2	22.2	11.1
10건~50건 미만	(19)	78.9	78.9	68.4	63.2	52.6	21.1	0.0	0.0
50건 이상	(15)	80.0	86.7	53.3	53.3	60.0	33.3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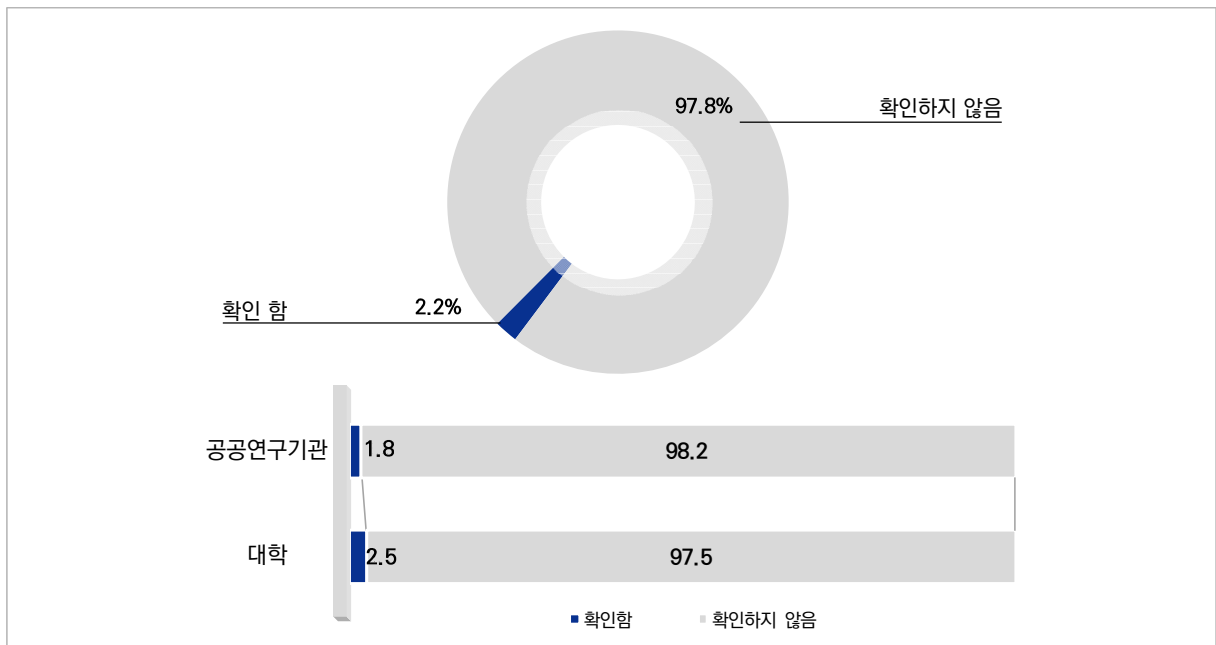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 대상으로 일반과제에도 연구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기관(n=56)]

**3-18 [문 3-18]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또는 이직 후 상대 기관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확인 여부로,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확인함’에 응답한 기관은 2.2%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확인함’(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2.2%)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하는 기관일수록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32〉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단위 : %)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 대상으로 연구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기관(n=136)]

**[표 3-32]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확인함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확인하지 않음
<b>전 체</b>	<b>(136)</b>	<b>2.2</b>	<b>97.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8	98.2
	대학	2.5	97.5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0.0	100.0
	5천만원 미만	2.6	97.4
	5천만원 ~ 1억원 미만	0.0	100.0
	1억원 ~ 10억원 미만	0.0	100.0
보안 담당조직	10억원 이상	25.0	75.0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0	10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2.2	97.8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전담조직 보유	6.7	93.3
	2건 미만	7.1	92.9
	2건~5건 미만	0.0	100.0
	5건~10건 미만	0.0	100.0
	10건~50건 미만	5.9	94.1
	50건 이상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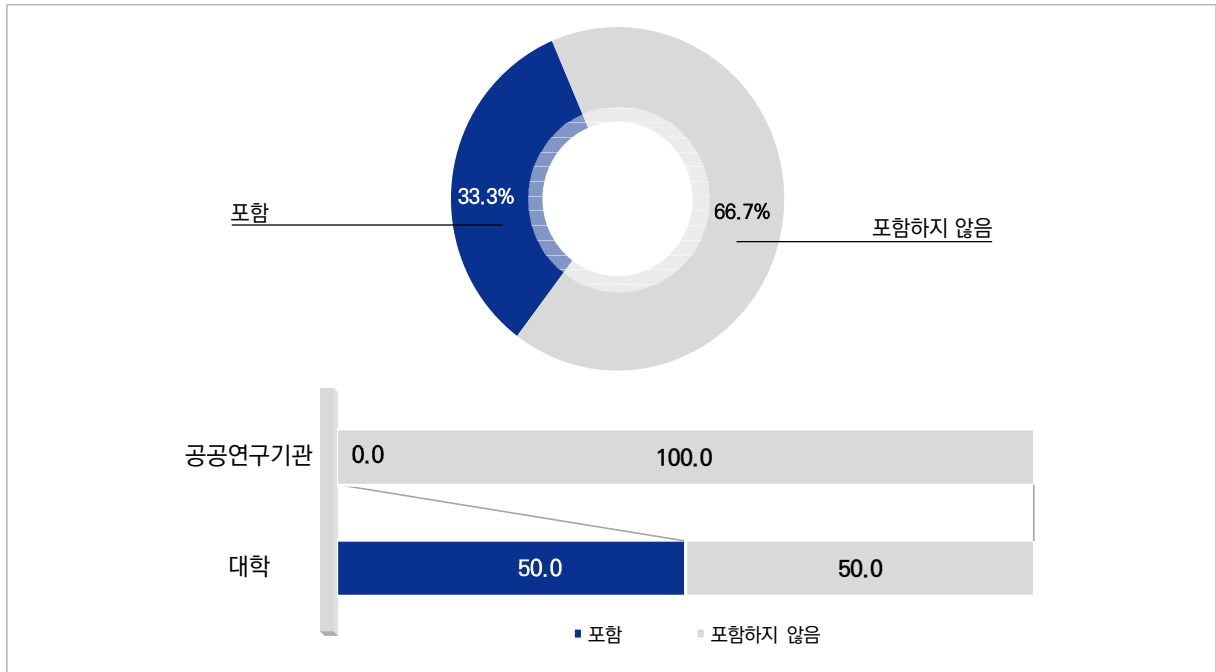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 대상으로 연구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기관(n=136)]

3-18-1 [문 3-18-1]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 연구과제를 확인한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 퇴직자(이직자)가 보안유지하기로 한 사항의 포함 여부로, '보안 유지사항 포함'에 응답한 기관은 33.3%로 1개의 '대학'임
- 보안유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1개의 '대학'에서 '변호사 및 외부 전문가와 상담', '항의',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3>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단위 : %)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의 퇴직·이직 후 해당 기관·기업의 연구과제를 확인하는 기관(n=3)]

[표 3-33]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보안유지 사항 포함	보안유지 사항 포함하지 않음
전체		(3)	33.3	66.7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	0.0	100.0
	대학	(2)	50.0	5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0)	-	-
	5천만원 미만	(2)	50.0	5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0)	-	-
	1억원 ~ 10억원 미만	(0)	-	-
	10억원 이상	(1)	0.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2)	50.0	50.0
	전담조직 보유	(1)	0.0	10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	100.0	0.0
	2건~5건 미만	(0)	-	-
	5건~10건 미만	(0)	-	-
	10건~50건 미만	(2)	0.0	100.0
	50건 이상	(0)	-	-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의 퇴직·이직 후 해당 기관·기업의 연구과제를 확인하는 기관(n=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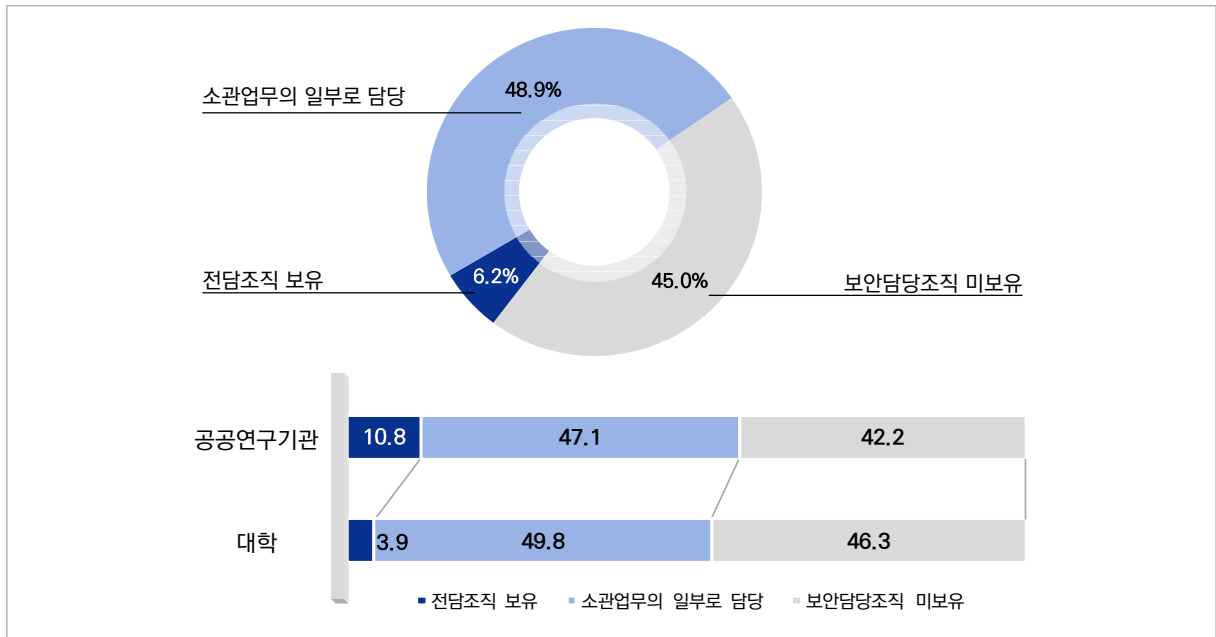
## 제4절 연구정보 보안 인프라 현황

### 4-1 [문 4-1]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의 보유 여부로, '소관 업무의 일부로 담당'에 응답한 기관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보안담당조직 미보유'(45.0%), '전담조직 보유'(6.2%) 순으로 나타남
- 연구보안 예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모두 '특정 부서가 소관 업무의 일부로 담당'(각 71.4%, 57.1%, 64.7%, 100.0%)에 응답한 기관이 가장 높은 반면, '예산 없음'의 경우는 '보안담당조직 미보유'(73.3%)에 응답한 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4〉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34]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연구보안만 담당하는 전담조직 보유	특정 부서가 소관 업무의 일부로 담당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b>전체</b>	<b>(307)</b>	<b>6.2</b>	<b>48.9</b>	<b>45.0</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10.8	47.1	42.2
	대학	(205)	3.9	49.8	46.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4	25.3	73.3
	5천만원 미만	(126)	6.3	71.4	22.2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8.6	57.1	1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29.4	64.7	5.9
	10억원 이상	(4)	0.0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0.0	0.0	10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0.0	100.0	0.0
	전담조직 보유	(19)	100.0	0.0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1	38.8	55.1
	2건~5건 미만	(71)	4.2	35.2	60.6
	5건~10건 미만	(52)	7.7	57.7	34.6
	10건~50건 미만	(73)	8.2	50.7	41.1
	50건 이상	(62)	4.8	62.9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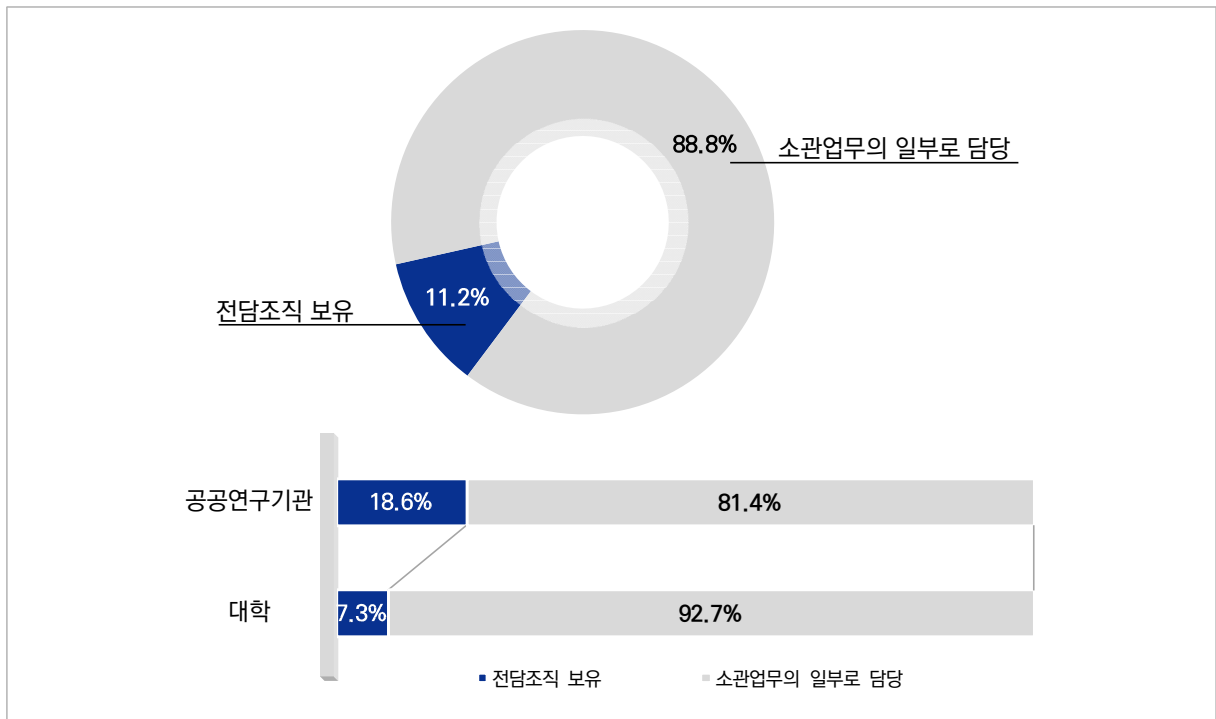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4-1-1 [문 4-1]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

-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로, '연구보안만 담당하는 전담조직 보유'에 응답한 기관은 11.2%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보안만 담당하는 전담조직 보유'(18.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7.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5〉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

(단위 : %)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표 3-35]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연구보안만 담당하는 전담조직 보유 (%)	특정 부서가 소관 업무의 일부로 담당 (%)
전체		(169)	11.2	88.8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18.6	81.4
	대학	(110)	7.3	92.7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5.1	94.9
	5천만원 미만	(98)	8.2	91.8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33.3	66.7
	1억원 ~ 10억원 미만	(16)	31.3	68.8
	10억원 이상	(4)	0.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0	100.0
	전담조직 보유	(19)	100.0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13.6	86.4
	2건~5건 미만	(28)	10.7	89.3
	5건~10건 미만	(34)	11.8	88.2
	10건~50건 미만	(43)	14	86.0
	50건 이상	(42)	7.1	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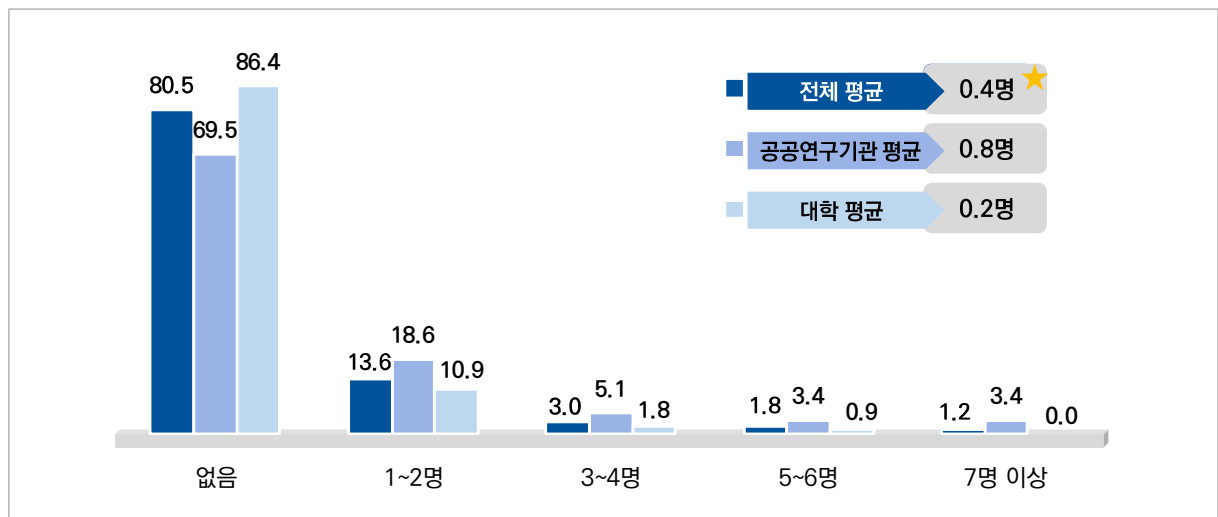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4-2-1 [문 4-2]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전담인력

- 연구보안 전담인력 현황으로, '없음'에 응답한 기관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1~2명'(13.6%), '3~4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구보안 전담인력의 평균은 0.4명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연구보안 전담인력이 평균 3.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0.1명)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보안 전담인력이 평균 0.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0.2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6>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전담인력

(단위 : %, 명)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표 3-36]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전담인력

(단위 : 개, %, 명)

구분	사례수	없음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합계	평균	
<b>전 체</b>	<b>(169)</b>	<b>80.5</b>	<b>13.6</b>	<b>3.0</b>	<b>1.8</b>	<b>1.2</b>	<b>75</b>	<b>0.4</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69.5	18.6	5.1	3.4	48	0.8	
	대학	(110)	86.4	10.9	1.8	0.9	27	0.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94.9	5.1	0.0	0.0	2	0.1	
	5천만원 미만	(98)	80.6	14.3	1.0	2.0	46	0.5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41.7	33.3	25.0	0.0	15	1.3	
	1억원 ~ 10억원 미만	(16)	68.8	18.8	6.3	6.3	12	0.8	
	10억원 이상	(4)	100.0	0.0	0.0	0.0	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90.7	8.7	0.7	0.0	0.0	18	0.1
	전담조직 보유	(19)	0.0	52.6	21.1	15.8	10.5	57	3.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72.7	18.2	9.1	0.0	0.0	10	0.5
	2건~5건 미만	(28)	85.7	14.3	0.0	0.0	0.0	5	0.2
	5건~10건 미만	(34)	82.4	11.8	5.9	0.0	0.0	13	0.4
	10건~50건 미만	(43)	76.7	14.0	2.3	4.7	2.3	29	0.7
	50건 이상	(42)	83.3	11.9	0.0	2.4	2.4	1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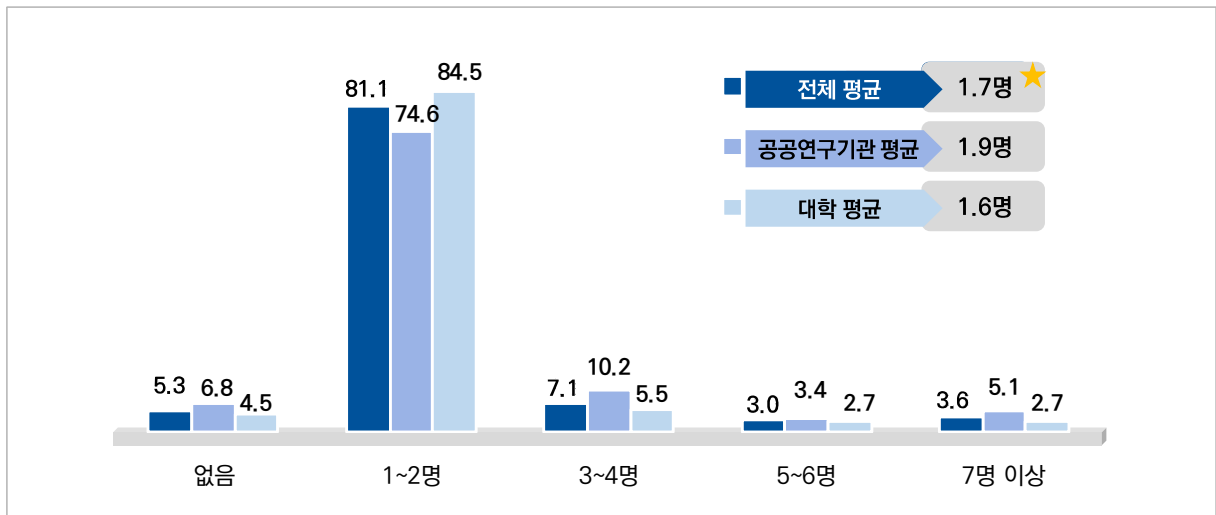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4-2-2 [문 4-2]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겸임인력

- 연구보안 겸임인력 현황으로, '1~2명'에 응답한 기관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3~4명'(7.1%), '없음'(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구보안 겸임인력의 평균은 1.7명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연구보안 겸임인력이 평균 1.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1.7명)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보안 겸임인력이 평균 1.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1.6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7>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겸임인력

(단위 : %, 명)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표 3-37]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겸임인력

(단위 : 개, %, 명)

구분	사례수	없음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합계	평균	
<b>전 체</b>	<b>(169)</b>	<b>5.3</b>	<b>81.1</b>	<b>7.1</b>	<b>3.0</b>	<b>3.6</b>	<b>292</b>	<b>1.7</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6.8	74.6	10.2	3.4	5.1	115	1.9
	대학	(110)	4.5	84.5	5.5	2.7	2.7	177	1.6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2.6	84.6	10.3	0.0	2.6	62	1.6
	5천만원 미만	(98)	5.1	84.7	4.1	4.1	2.0	159	1.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16.7	58.3	25.0	0.0	0.0	18	1.5
	1억원 ~ 10억원 미만	(16)	6.3	75.0	0.0	0.0	18.8	42	2.6
	10억원 이상	(4)	0.0	50.0	25.0	25.0	0.0	11	2.8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0.0	88.7	6.0	2.0	3.3	258	1.7
	전담조직 보유	(19)	47.4	21.1	15.8	10.5	5.3	34	1.8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4.5	81.8	9.1	4.5	0.0	32	1.5
	2건~5건 미만	(28)	3.6	85.7	3.6	3.6	3.6	49	1.8
	5건~10건 미만	(34)	5.9	85.3	8.8	0.0	0.0	46	1.4
	10건~50건 미만	(43)	9.3	72.1	7.0	7.0	4.7	83	1.9
	50건 이상	(42)	2.4	83.3	7.1	0.0	7.1	8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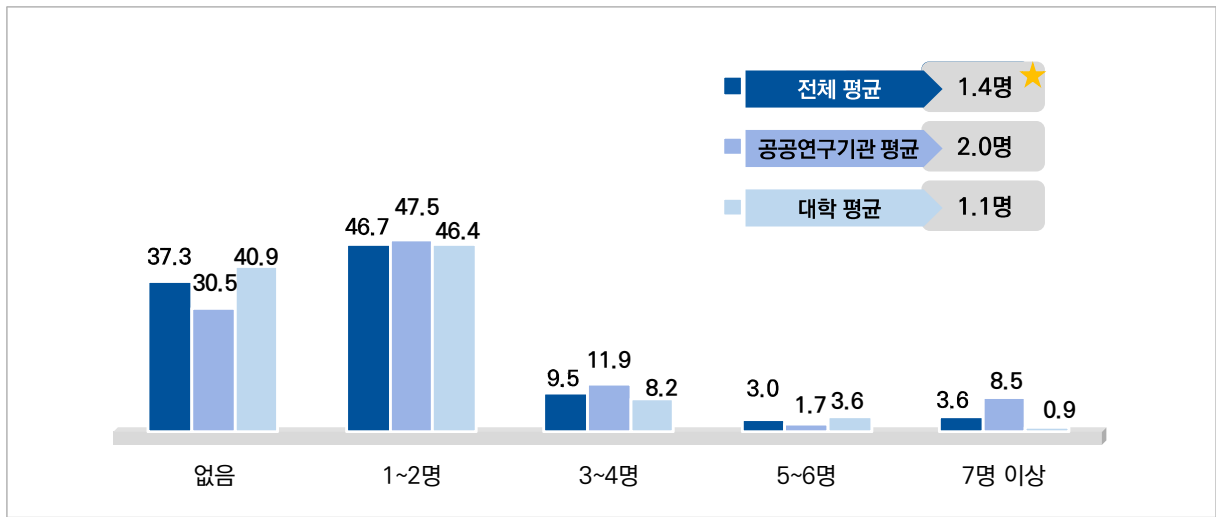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4-2-3 [문 4-2]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 연구보안 필요인력 현황으로, '1~2명'에 응답한 기관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없음'(37.3%), '3~4명'(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구보안 필요인력의 평균은 1.4명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연구보안 필요인력이 평균 4.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1.0명)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보안 필요인력이 평균 2.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1.1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8>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단위 : %, 명)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표 3-38]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단위 : 개, %, 명)

구분		사례수	없음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합계	평균
전체		(169)	37.3	46.7	9.5	3.0	3.6	242	1.4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30.5	47.5	11.9	1.7	8.5	119	2.0
	대학	(110)	40.9	46.4	8.2	3.6	0.9	123	1.1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43.6	53.8	2.6	0.0	0.0	30	0.8
	5천만원 미만	(98)	35.7	49.0	9.2	3.1	3.1	136	1.4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16.7	33.3	33.3	16.7	0.0	30	2.5
	1억원 ~ 10억원 미만	(16)	37.5	37.5	12.5	0.0	12.5	39	2.4
	10억원 이상	(4)	75.0	0.0	0.0	0.0	25.0	7	1.8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42.0	48.0	8.0	0.7	1.3	156	1.0
	전담조직 보유	(19)	0.0	36.8	21.1	21.1	21.1	86	4.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31.8	50.0	9.1	9.1	0.0	31	1.4
	2건~5건 미만	(28)	53.6	42.9	3.6	0.0	0.0	20	0.7
	5건~10건 미만	(34)	38.2	47.1	8.8	5.9	0.0	40	1.2
	10건~50건 미만	(43)	32.6	48.8	11.6	2.3	4.7	69	1.6
	50건 이상	(42)	33.3	45.2	11.9	0.0	9.5	8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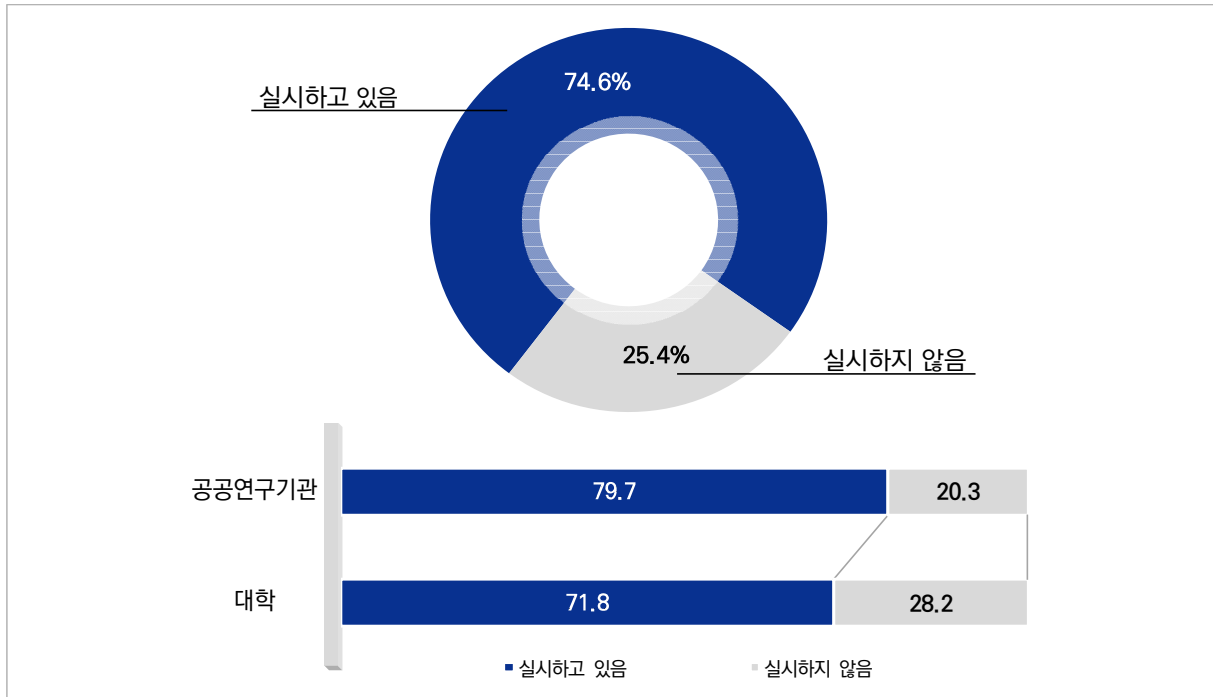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 4-3 [문 4-3]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

-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연구보안 직무교육 실시 여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 응답한 기관은 74.6%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94.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72.0%)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9〉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

(단위 : %)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표 3-39】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전체		(169)	74.6	25.4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79.7	20.3
	대학	(110)	71.8	28.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53.8	46.2
	5천만원 미만	(98)	78.6	21.4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91.7	8.3
	1억원 ~ 10억원 미만	(16)	81.3	18.8
	10억원 이상	(4)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72.0	28.0
	전담조직 보유	(19)	94.7	5.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72.7	27.3
	2건~5건 미만	(28)	78.6	21.4
	5건~10건 미만	(34)	64.7	35.3
	10건~50건 미만	(43)	79.1	20.9
	50건 이상	(42)	76.2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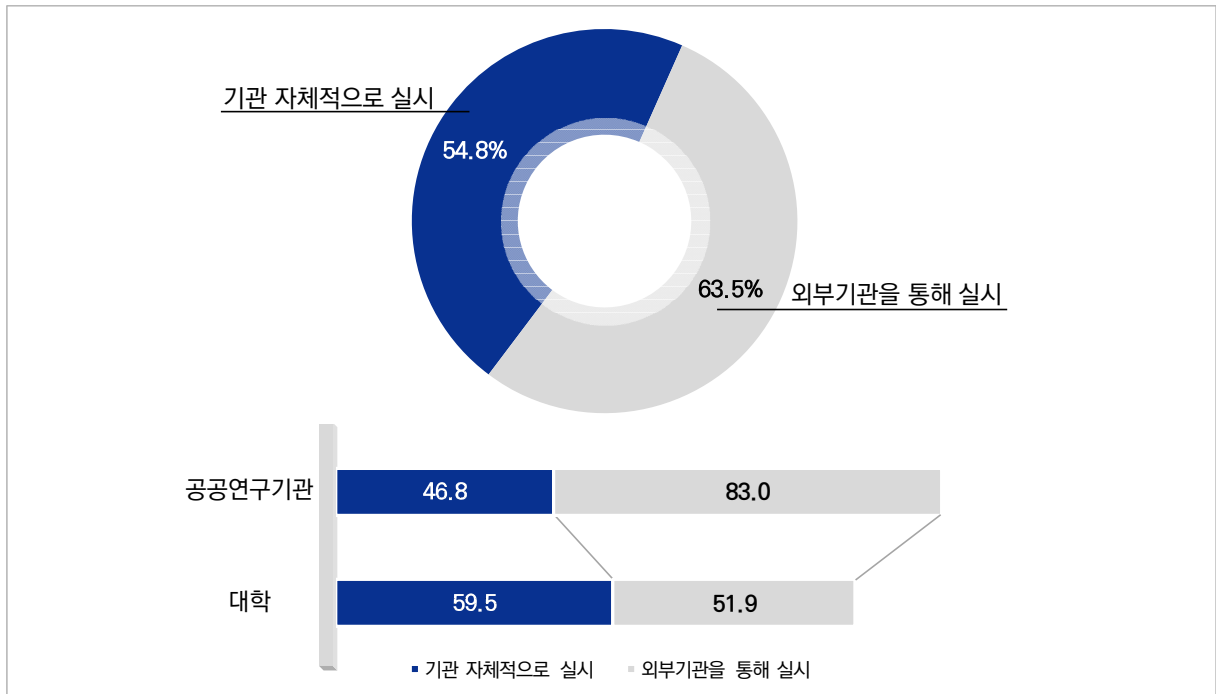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4-3-1 [문 4-3]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형태

-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연구보안 직무교육 형태로,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에 응답한 기관은 63.5%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59.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연구기관’(46.8%)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6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52.8%)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0〉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형태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표 3-40】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형태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 (%)
<b>전체</b>	<b>(126)</b>	<b>54.8</b>	<b>63.5</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7)	46.8	83.0
대학	(79)	59.5	51.9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1)	42.9	66.7
5천만원 미만	(77)	54.5	61.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1)	45.5	72.7
1억원 ~ 10억원 미만	(13)	76.9	76.9
10억원 이상	(4)	75.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08)	52.8	63.9
전담조직 보유	(18)	66.7	61.1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6)	56.3	62.5
2건~5건 미만	(22)	36.4	77.3
5건~10건 미만	(22)	63.6	45.5
10건~50건 미만	(34)	61.8	55.9
50건 이상	(32)	53.1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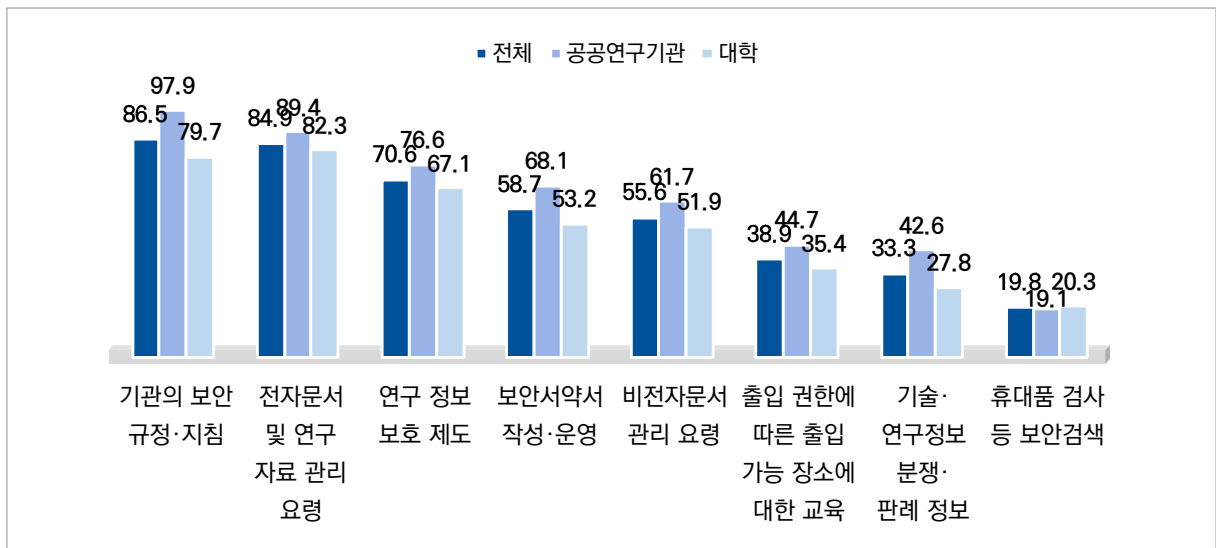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 4-4 [문 4-4]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직무교육 내용

-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연구보안 직무교육 내용으로, ‘기관의 보안규정·지침’에 응답한 기관이 8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전자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84.9%), ‘연구정보 보호 제도’(7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의 보안규정·지침’(97.9%)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의 경우는 ‘전자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82.3%)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1〉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직무교육 내용

(단위 : %, 복수 응답)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표 3-41〉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직무교육 내용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기관의 보안 규정·지침 (%)	전자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 (%)	연구정보 보호 제도 (%)	보안서약서 작성·운영 (%)	비전자문서 관리 요령 (%)	출입 권한에 따른 출입 가능 장소에 대한 교육 (%)	기술·연구정보 분쟁·판례 정보 (%)	휴대품 검사 등 보안검색 (%)
<b>전체</b>	<b>(126)</b>	<b>86.5</b>	<b>84.9</b>	<b>70.6</b>	<b>58.7</b>	<b>55.6</b>	<b>38.9</b>	<b>33.3</b>	<b>19.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7)	97.9	89.4	76.6	68.1	61.7	44.7	42.6	19.1
대학	(79)	79.7	82.3	67.1	53.2	51.9	35.4	27.8	20.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1)	76.2	71.4	33.3	57.1	38.1	23.8	23.8	14.3
5천만원 미만	(77)	87.0	85.7	75.3	55.8	57.1	45.5	35.1	22.1
5천만원 ~ 1억원 미만	(11)	90.9	90.9	72.7	54.5	81.8	18.2	27.3	18.2
1억원 ~ 10억원 미만	(13)	92.3	92.3	92.3	69.2	46.2	38.5	38.5	15.4
10억원 이상	(4)	100.0	100.0	100.0	100.0	75.0	50.0	50.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08)	84.3	85.2	69.4	59.3	54.6	38.0	30.6	20.4
전담조직 보유	(18)	100.0	83.3	77.8	55.6	61.1	44.4	50.0	16.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6)	87.5	81.3	68.8	62.5	43.8	43.8	31.3	12.5
2건~5건 미만	(22)	95.5	81.8	68.2	36.4	63.6	13.6	22.7	13.6
5건~10건 미만	(22)	72.7	95.5	72.7	50.0	54.5	27.3	31.8	13.6
10건~50건 미만	(34)	91.2	79.4	64.7	64.7	61.8	44.1	38.2	20.6
50건 이상	(32)	84.4	87.5	78.1	71.9	50.0	56.3	37.5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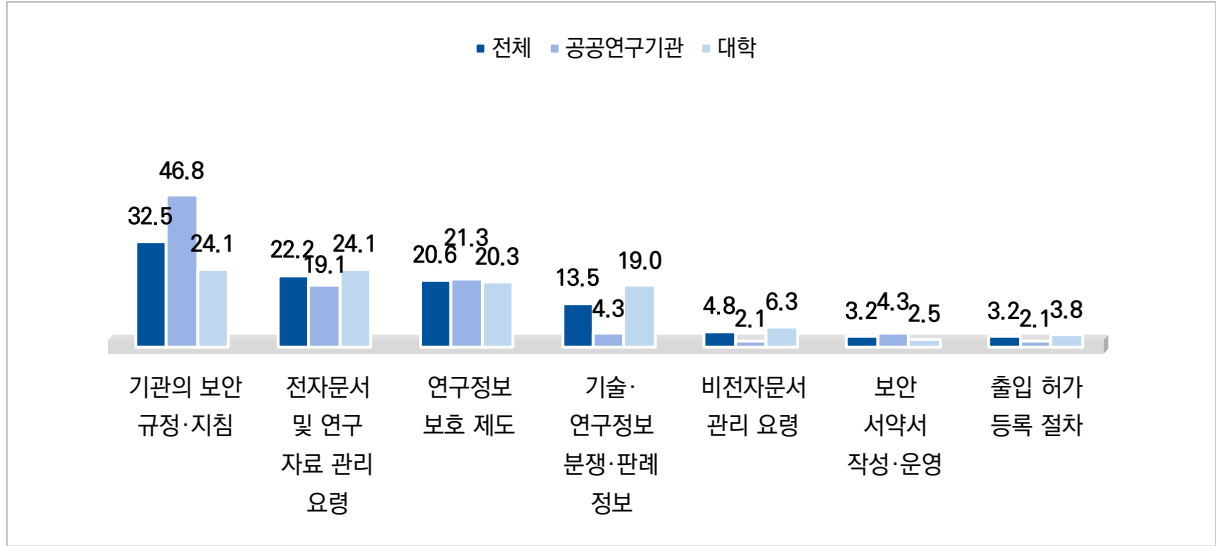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 4-5 [문 4-5]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순위

-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으로, ‘기관의 보안규정·지침’에 응답한 기관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전자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22.2%), ‘연구정보 보호 제도’(2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2〉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순위

(단위 : %)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표 3-42】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기관의 보안 규정·지침	전자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	연구정보 보호 제도	기술·연구정보 분쟁·판례 정보	비전자문서 관리 요령	보안 서약서 작성·운영	출입 허가 등록 절차	
<b>전체</b>	<b>(126)</b>	<b>32.5</b>	<b>22.2</b>	<b>20.6</b>	<b>13.5</b>	<b>4.8</b>	<b>3.2</b>	<b>3.2</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7)	46.8	19.1	21.3	4.3	2.1	4.3	2.1
	대학	(79)	24.1	24.1	20.3	19.0	6.3	2.5	3.8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1)	19.0	19.0	38.1	4.8	0.0	4.8	14.3
	5천만원 미만	(77)	36.4	19.5	16.9	18.2	7.8	1.3	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1)	27.3	27.3	9.1	9.1	0.0	18.2	9.1
	1억원 ~ 10억원 미만	(13)	38.5	30.8	23.1	7.7	0.0	0.0	0.0
10억원 이상	(4)	25.0	50.0	25.0	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08)	28.7	25.0	21.3	13.9	5.6	2.8	2.8
	전담조직 보유	(18)	55.6	5.6	16.7	11.1	0.0	5.6	5.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6)	25.0	12.5	25.0	25.0	6.3	6.3	0.0
	2건~5건 미만	(22)	27.3	13.6	18.2	18.2	4.5	9.1	9.1
	5건~10건 미만	(22)	45.5	22.7	13.6	9.1	4.5	4.5	0.0
	10건~50건 미만	(34)	32.4	29.4	11.8	14.7	5.9	0.0	5.9
50건 이상	(32)	31.3	25.0	34.4	6.3	3.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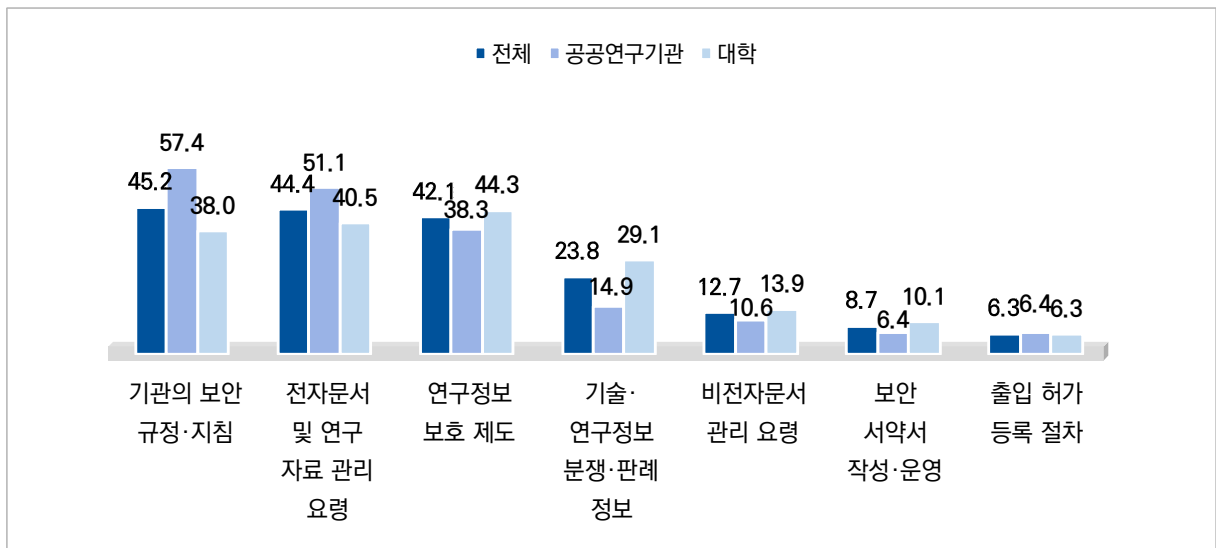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4-5-1 [문 4-5]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2순위

-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으로, ‘기관의 보안규정·지침’에 응답한 기관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전자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44.4%), ‘연구정보 보호 제도’(4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관의 보안규정·지침’(57.4%)이 가장 높은 반면, ‘대학’의 경우는 ‘연구정보 보호 제도’(44.3%)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3〉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2순위

(단위 : %)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표 3-43]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1+2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기관의 보안 규정·지침	전자 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	연구정보 보호 제도	기술·연구정보 분쟁·판례 정보	비전자 문서 관리 요령	보안 서약서 작성·운영	출입 허가 등록 절차
<b>전 체</b>	<b>(126)</b>	<b>45.2</b>	<b>44.4</b>	<b>42.1</b>	<b>23.8</b>	<b>12.7</b>	<b>8.7</b>	<b>6.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7)	57.4	51.1	38.3	14.9	10.6	6.4
	대학	(79)	38.0	40.5	44.3	29.1	13.9	10.1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1)	42.9	28.6	52.4	4.8	9.5	4.8
	5천만원 미만	(77)	44.2	45.5	37.7	32.5	14.3	10.4
	5천만원 ~ 1억원 미만	(11)	45.5	45.5	36.4	9.1	18.2	18.2
	1억원 ~ 10억원 미만	(13)	53.8	61.5	46.2	23.1	7.7	0.0
	10억원 이상	(4)	50.0	50.0	75.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08)	42.6	46.3	43.5	24.1	11.1	8.3
	전담조직 보유	(18)	61.1	33.3	33.3	22.2	22.2	11.1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6)	37.5	31.3	50.0	25.0	12.5	6.3
	2건~5건 미만	(22)	36.4	22.7	45.5	40.9	13.6	13.6
	5건~10건 미만	(22)	54.5	50.0	40.9	13.6	18.2	9.1
	10건~50건 미만	(34)	50.0	50.0	32.4	23.5	11.8	14.7
	50건 이상	(32)	43.8	56.3	46.9	18.8	9.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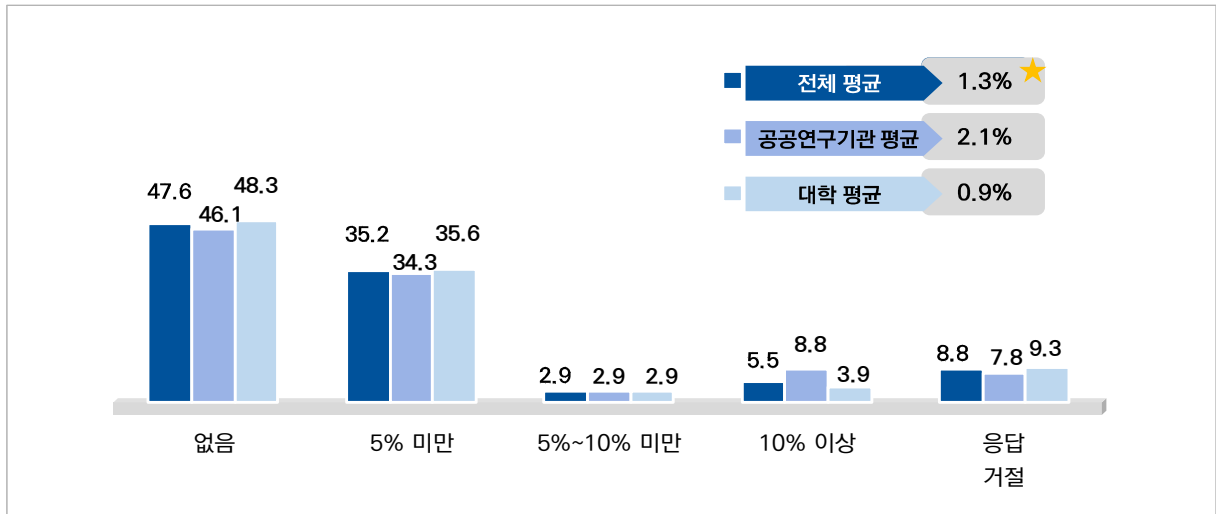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4-6-1 [문 4-6]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로, 비율이 '없음'에 응답한 기관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5% 미만'(35.2%), '10% 이상'(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평균은 1.3%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이 평균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2.0%), '보안 담당조직 미보유'(0.3%)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이 평균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4〉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44]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없음	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응답 거절	평균
전 체		(307)	47.6	35.2	2.9	5.5	8.8	1.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46.1	34.3	2.9	8.8	7.8	2.1
	대학	(205)	48.3	35.6	2.9	3.9	9.3	0.9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00.0	0.0	0.0	0.0	0.0	0.0
	5천만원 미만	(126)	0.0	69.8	5.6	6.3	18.3	1.8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28.6	7.1	50.0	14.3	10.8
	1억원 ~ 10억원 미만	(17)	0.0	76.5	5.9	11.8	5.9	2.9
	10억원 이상	(4)	0.0	75.0	0.0	0.0	25.0	0.9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77.5	17.4	1.4	0.7	2.9	0.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4.7	48.7	2.7	8.7	15.3	2.0
	전담조직 보유	(19)	10.5	57.9	15.8	15.8	0.0	3.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9.2	16.3	10.2	8.2	6.1	1.5
	2건~5건 미만	(71)	66.2	25.4	2.8	4.2	1.4	0.9
	5건~10건 미만	(52)	40.4	44.2	1.9	9.6	3.8	2.4
	10건~50건 미만	(73)	38.4	39.7	1.4	6.8	13.7	1.5
	50건 이상	(62)	33.9	48.4	0.0	0.0	17.7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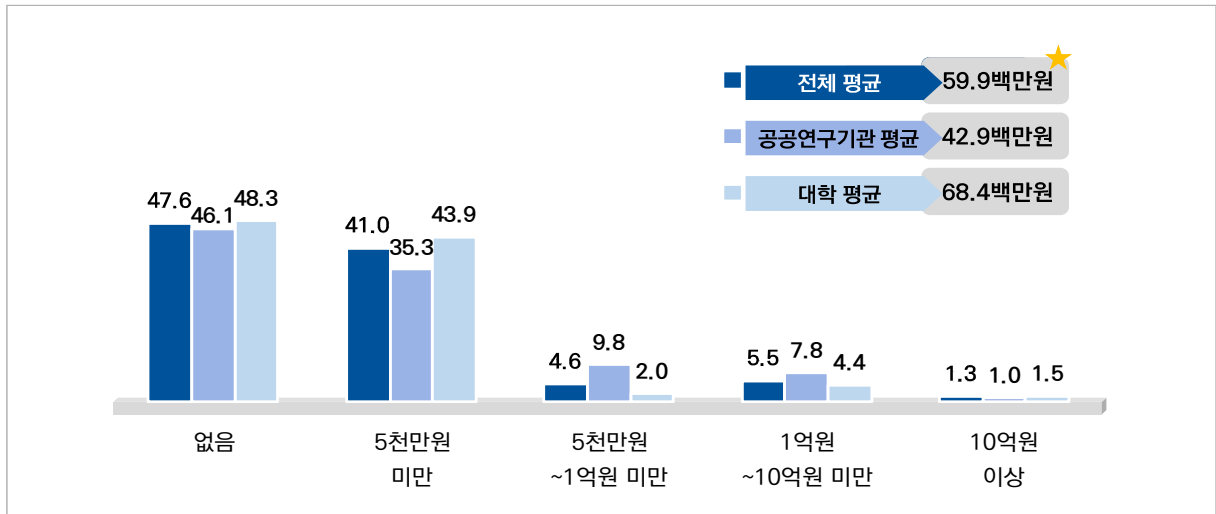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4-6-2 [문 4-6]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로, 예산이 '없음'에 응답한 기관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5천만원 미만'(41.0%), '1억원~10억원 미만'(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는 평균 59.9백만 원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의 경우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평균 68.4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연구기관'(42.9백만 원) 순으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로 살펴보면, '10건~50건 미만'의 경우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평균 138.9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건 이상'(62.1백만 원), '5~10건 미만'(34.3백만 원), '2건~5건 미만'(24.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5〉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단위 : %, 백만 원)



[BASE: 전체(n=307)]

〈표 3-45〉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단위 : 개, %, 백만 원)

구분	사례수	없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 1억원 미만	1억원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균	
<b>전체</b>	<b>(307)</b>	<b>47.6</b>	<b>41.0</b>	<b>4.6</b>	<b>5.5</b>	<b>1.3</b>	<b>59.9</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46.1	35.3	9.8	7.8	1.0	42.9
	대학	(205)	48.3	43.9	2.0	4.4	1.5	68.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00.0	0.0	0.0	0.0	0.0	0.0
	5천만원 미만	(126)	0.0	100.0	0.0	0.0	0.0	9.1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0.0	100.0	0.0	0.0	59.8
	1억원 ~ 10억원 미만	(17)	0.0	0.0	0.0	100.0	0.0	247.3
	10억원 이상	(4)	0.0	0.0	0.0	0.0	100.0	30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77.5	20.3	1.4	0.7	0.0	3.6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4.7	60.0	5.3	7.3	2.7	109.2
	전담조직 보유	(19)	10.5	42.1	21.1	26.3	0.0	79.4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9.2	32.7	4.1	4.1	0.0	18.5
	2건~5건 미만	(71)	66.2	22.5	4.2	7.0	0.0	24.1
	5건~10건 미만	(52)	40.4	50.0	5.8	1.9	1.9	34.3
	10건~50건 미만	(73)	38.4	52.1	4.1	4.1	1.4	138.9
	50건 이상	(62)	33.9	48.4	4.8	9.7	3.2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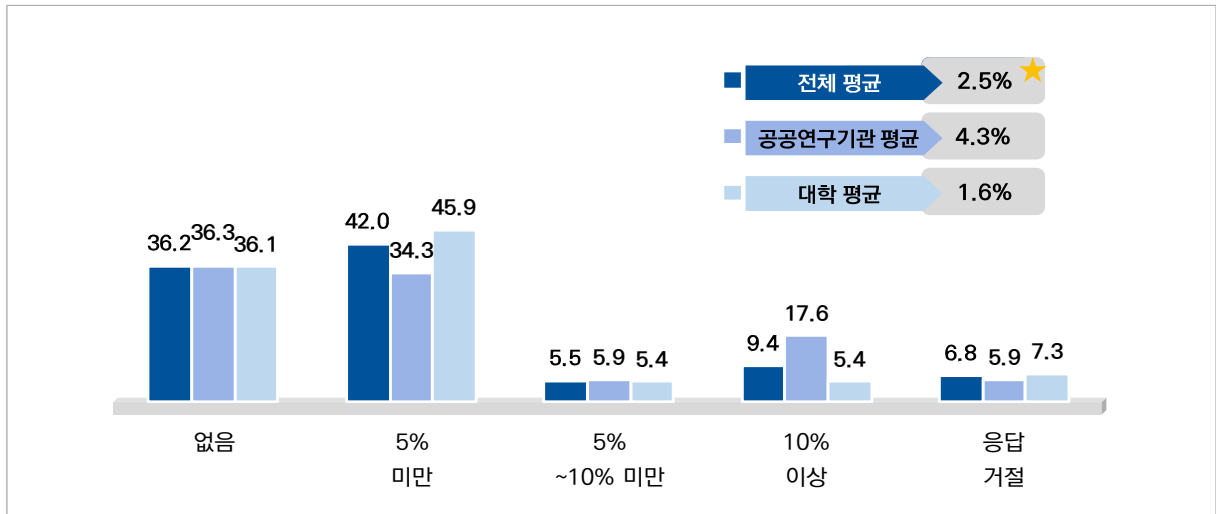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4-7 [문 4-7]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로, '5% 미만'에 응답한 기관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없음'(36.2%), '10% 이상'(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은 평균 2.5%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이 평균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1.6%) 순으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로 살펴보면, '10건~50건 미만'의 경우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이 평균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10건 미만'(3.2%), '2건 미만(2.6%)', '2건~5건 미만'(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6〉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46]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없음	5% 미만	5% ~10% 미만	10% 이상	응답 거절	평균	
<b>전체</b>	<b>(307)</b>	<b>36.2</b>	<b>42.0</b>	<b>5.5</b>	<b>9.4</b>	<b>6.8</b>	<b>2.5</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36.3	34.3	5.9	17.6	5.9	4.3
	대학	(205)	36.1	45.9	5.4	5.4	7.3	1.6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76.0	17.8	4.8	1.4	0.0	0.7
	5천만원 미만	(126)	0.0	66.7	4.8	13.5	15.1	3.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21.4	7.1	64.3	7.1	14.7
	1억원 ~ 10억원 미만	(17)	0.0	76.5	11.8	5.9	5.9	2.0
	10억원 이상	(4)	0.0	75.0	25.0	0.0	0.0	2.2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56.5	32.6	5.8	5.1	0.0	1.6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0.7	49.3	4.0	12.0	14.0	3.2
	전담조직 보유	(19)	10.5	52.6	15.8	21.1	0.0	4.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3.1	16.3	8.2	16.3	6.1	2.6
	2건~5건 미만	(71)	53.5	28.2	8.5	8.5	1.4	2.2
	5건~10건 미만	(52)	28.8	50.0	3.8	13.5	3.8	3.2
	10건~50건 미만	(73)	27.4	49.3	2.7	11.0	9.6	3.5
	50건 이상	(62)	19.4	62.9	4.8	0.0	12.9	1.0

[BASE: 전체(n=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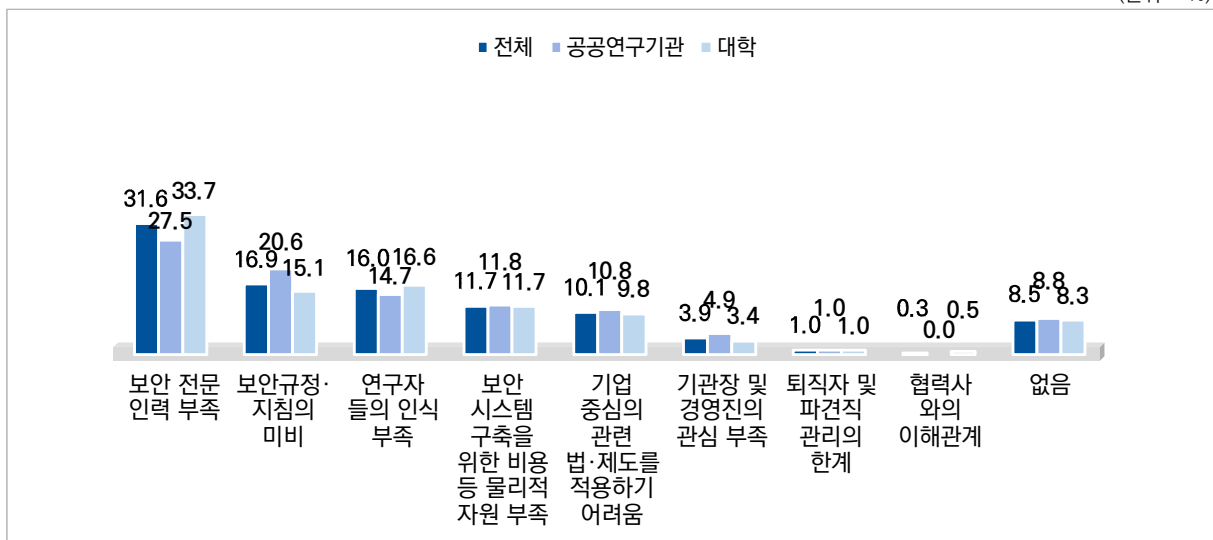
## 제5절 연구정보 보호 관련 정책수요

### 5-1 [문 5-1]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순위

-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보안 전문인력 부족'에 응답한 기관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보안규정·지침의 미비'(16.9%), '연구자들의 인식 부족'(1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보안담당조직 미보유'와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의 경우 '보안전문 인력 부족'(각 38.4%, 26.7%)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7〉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47]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보안 전문 인력 부족	보안 규정·지침의 미비	연구자들의 인식 부족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등 물리적 자원 부족	기업 중심의 관련 법·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움	기관장 및 경영진의 관심 부족	퇴직자 및 파견직 관리의 한계	협력사와의 이해관계	없음
<b>전체</b>	<b>(307)</b>	<b>31.6</b>	<b>16.9</b>	<b>16.0</b>	<b>11.7</b>	<b>10.1</b>	<b>3.9</b>	<b>1.0</b>	<b>0.3</b>	<b>8.5</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7.5	20.6	14.7	11.8	10.8	4.9	1.0	0.0	8.8
대학	(205)	33.7	15.1	16.6	11.7	9.8	3.4	1.0	0.5	8.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37.0	21.2	17.1	9.6	3.4	3.4	1.4	0.0	6.8
5천만원 미만	(126)	30.2	13.5	12.7	10.3	15.1	5.6	0.0	0.8	11.9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8.6	14.3	21.4	21.4	7.1	0.0	7.1	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9	11.8	17.6	23.5	35.3	0.0	0.0	0.0	5.9
10억원 이상	(4)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38.4	23.2	17.4	5.8	3.6	5.1	1.4	0.0	5.1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6.7	12.0	15.3	17.3	14.0	3.3	0.0	0.7	10.7
전담조직 보유	(19)	21.1	10.5	10.5	10.5	26.3	0.0	5.3	0.0	15.8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34.7	20.4	12.2	0.0	14.3	4.1	0.0	2.0	12.2
2건~5건 미만	(71)	28.2	19.7	19.7	7.0	11.3	4.2	2.8	0.0	7.0
5건~10건 미만	(52)	36.5	11.5	13.5	17.3	3.8	5.8	1.9	0.0	9.6
10건~50건 미만	(73)	27.4	17.8	17.8	15.1	12.3	2.7	0.0	0.0	6.8
50건 이상	(62)	33.9	14.5	14.5	17.7	8.1	3.2	0.0	0.0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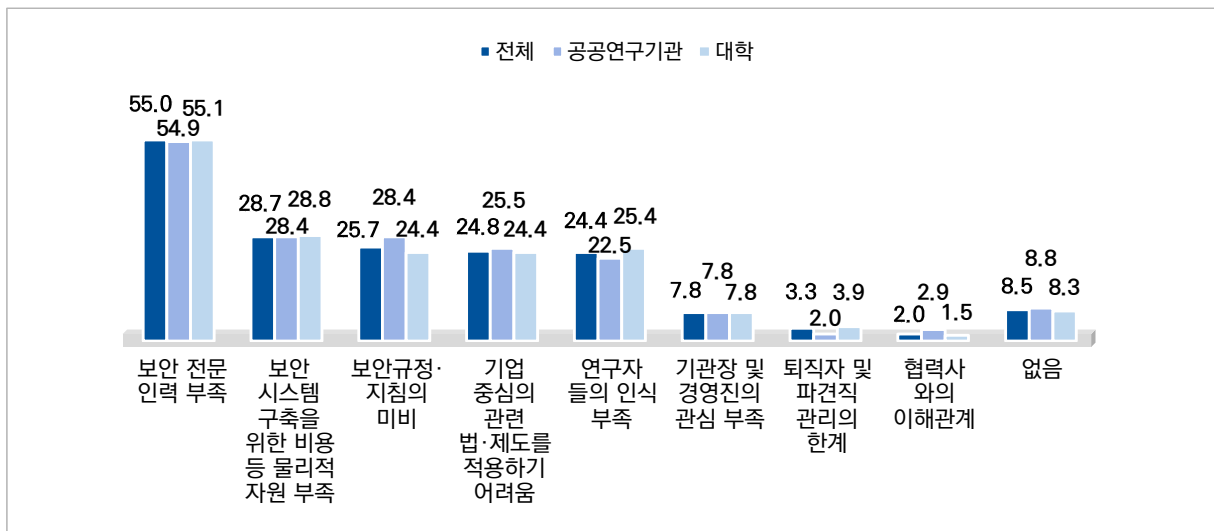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5-1-1 [문 5-1]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2순위

-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보안 전문인력 부족’에 응답한 기관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등 물리적 자원 부족’(28.7%), ‘보안규정·지침의 미비’(2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구보안 예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연구보안 예산이 ‘1억 미만’ 경우 ‘보안전문 인력부족’에 응답한 기관이 가장 높은 반면, ‘1억원~10억원 미만’ 경우는 ‘기업 중심의 관련 법·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움’(58.8%), ‘10억원 이상’ 경우는 ‘연구자들의 인식 부족’(75.0%)에 응답한 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8〉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48]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보안 전문인력 부족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등 물리적 자원 부족	보안 규정·지침의 미비	기업 중심의 관련 법·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움	연구자들의 인식 부족	기관장 및 경영진의 관심 부족	퇴직자 및 파견직 관리의 한계	협력사와의 이해관계	없음	
<b>전체</b>	<b>(307)</b>	<b>55.0</b>	<b>28.7</b>	<b>25.7</b>	<b>24.8</b>	<b>24.4</b>	<b>7.8</b>	<b>3.3</b>	<b>2.0</b>	<b>8.5</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54.9	28.4	28.4	25.5	22.5	7.8	2.0	2.9	8.8
	대학	(205)	55.1	28.8	24.4	24.4	25.4	7.8	3.9	1.5	8.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59.6	22.6	29.5	14.4	28.8	7.5	4.8	1.4	6.8
	5천만원 미만	(126)	52.4	31.7	24.6	31.0	18.3	9.5	1.6	0.8	11.9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64.3	42.9	21.4	28.6	21.4	0.0	7.1	14.3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35.3	41.2	11.8	58.8	23.5	5.9	0.0	5.9	5.9
10억원 이상	(4)	25.0	50.0	0.0	50.0	75.0	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62.3	21.7	29.7	14.5	29.0	10.9	5.1	0.7	5.1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47.3	36.7	24.0	32.0	22.0	6.0	1.3	2.0	10.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전담조직 보유	(19)	63.2	15.8	10.5	42.1	10.5	0.0	5.3	10.5	15.8
	2건 미만	(49)	51.0	18.4	26.5	28.6	20.4	10.2	2.0	4.1	12.2
	2건~5건 미만	(71)	47.9	26.8	33.8	21.1	28.2	9.9	2.8	2.8	7.0
	5건~10건 미만	(52)	59.6	28.8	25.0	17.3	19.2	9.6	3.8	3.8	9.6
	10건~50건 미만	(73)	60.3	30.1	21.9	30.1	26.0	5.5	4.1	0.0	6.8
50건 이상	(62)	56.5	37.1	21.0	25.8	25.8	4.8	3.2	0.0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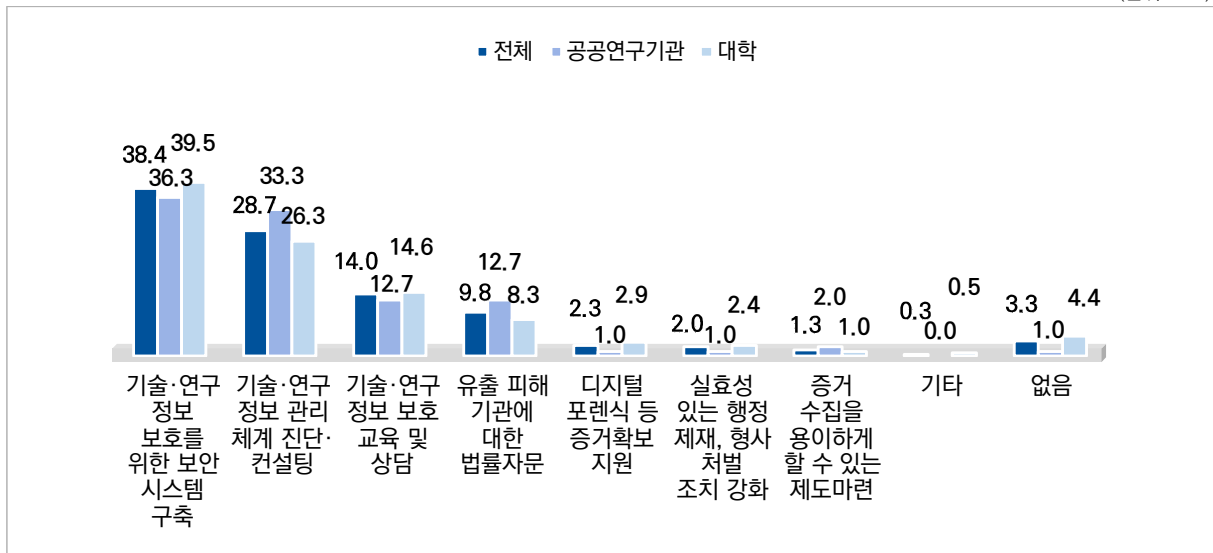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5-2 [문 5-2]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순위

- 연구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으로, ‘기술·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에 응답한 기관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기술·연구정보 관리체계 진단·컨설팅’(28.7%), ‘기술·연구정보 보호교육 및 상담’(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모두 ‘기술·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각 36.3%, 39.5%)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49〉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순위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49〉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기술·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기술·연구정보 관리체계 진단·컨설팅	기술·연구정보 보호 교육 및 상담	유출 피해 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확보 지원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 형사 처벌 조치 강화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마련	기타	없음
<b>전체</b>	<b>(307)</b>	<b>38.4</b>	<b>28.7</b>	<b>14.0</b>	<b>9.8</b>	<b>2.3</b>	<b>2.0</b>	<b>1.3</b>	<b>0.3</b>	<b>3.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36.3	33.3	12.7	12.7	1.0	1.0	2.0	0.0	1.0
대학	(205)	39.5	26.3	14.6	8.3	2.9	2.4	1.0	0.5	4.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41.1	26.0	15.8	7.5	1.4	2.7	0.7	0.7	4.1
5천만원 미만	(126)	34.9	31.7	11.1	12.7	4.0	0.8	1.6	0.0	3.2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14.3	35.7	14.3	21.4	0.0	7.1	7.1	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2.9	23.5	23.5	0.0	0.0	0.0	0.0	0.0	0.0
10억원 이상	(4)	75.0	25.0	0.0	0.0	0.0	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41.3	25.4	14.5	8.7	1.4	2.9	0.7	0.7	4.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36.7	32.0	14.0	10.7	3.3	1.3	0.7	0.0	1.3
전담조직 보유	(19)	31.6	26.3	10.5	10.5	0.0	0.0	10.5	0.0	10.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44.9	22.4	12.2	6.1	4.1	0.0	2.0	0.0	8.2
2건~5건 미만	(71)	38.0	33.8	11.3	9.9	0.0	2.8	0.0	1.4	2.8
5건~10건 미만	(52)	38.5	30.8	7.7	9.6	1.9	3.8	3.8	0.0	3.8
10건~50건 미만	(73)	32.9	27.4	17.8	13.7	4.1	1.4	1.4	0.0	1.4
50건 이상	(62)	40.3	27.4	19.4	8.1	1.6	1.6	0.0	0.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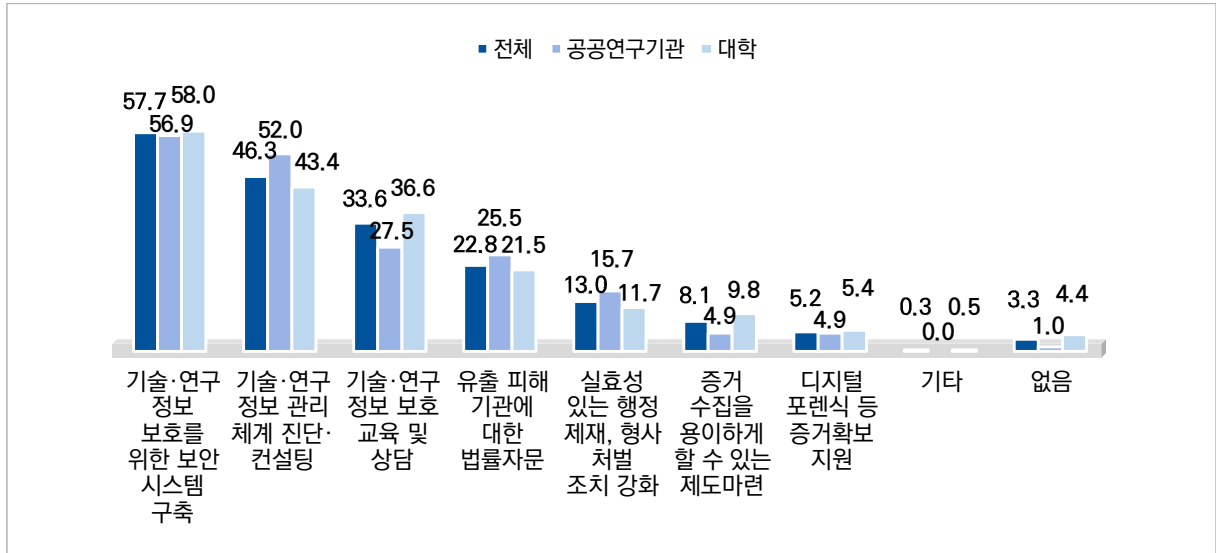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5-2-1 [문 5-2]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2순위

- 연구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으로, ‘기술·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에 응답한 기관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기술·연구정보 관리체계 진단·컨설팅’(46.3%), ‘기술·연구정보 보호교육 및 상담’(3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모두 ‘기술·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각 56.9%, 58.0%)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50>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2순위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50]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2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기술·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기술·연구정보 관리체계 진단·컨설팅	기술·연구정보 보호 교육 및 상담	유출 피해 기관에 대한 법률자문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 형사 처벌 조치 강화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지원	기타	없음
<b>전체</b>	<b>(307)</b>	<b>57.7</b>	<b>46.3</b>	<b>33.6</b>	<b>22.8</b>	<b>13.0</b>	<b>8.1</b>	<b>5.2</b>	<b>0.3</b>	<b>3.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56.9	52.0	27.5	25.5	15.7	4.9	4.9	0.0	1.0
대학	(205)	58.0	43.4	36.6	21.5	11.7	9.8	5.4	0.5	4.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61.6	43.2	33.6	21.9	11.6	8.9	2.7	0.7	4.1
5천만원 미만	(126)	53.2	47.6	34.1	23.8	15.9	8.7	6.3	0.0	3.2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1.4	50.0	35.7	28.6	14.3	7.1	28.6	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82.4	58.8	29.4	17.6	5.9	0.0	0.0	0.0	0.0
10억원 이상	(4)	75.0	50.0	25.0	25.0	0.0	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61.6	44.2	29.7	22.5	13.8	8.7	3.6	0.7	4.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54.7	49.3	38.7	24.0	13.3	6.0	6.0	0.0	1.3
전담조직 보유	(19)	52.6	36.8	21.1	15.8	5.3	21.1	10.5	0.0	10.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1.2	34.7	30.6	20.4	16.3	6.1	8.2	0.0	8.2
2건~5건 미만	(71)	57.7	52.1	26.8	21.1	14.1	11.3	2.8	1.4	2.8
5건~10건 미만	(52)	57.7	53.8	25.0	21.2	13.5	7.7	5.8	0.0	3.8
10건~50건 미만	(73)	54.8	37.0	38.4	30.1	12.3	9.6	8.2	0.0	1.4
50건 이상	(62)	58.1	53.2	45.2	19.4	9.7	4.8	1.6	0.0	1.6

[BASE: 전체(n=307)]

## 5-3 [문 5-2-1]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요

[표 3-51]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요

번호	내용
1	■ 학교 자체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인프라가 부족해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인력의 법제화 및 운영에 대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연구 정보보호 성과 및 보호와 유출방지에 이바지 할 수 있음.
2	■ 정보유출 확인이 힘들고 법적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률 진행 경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이 필요함.
3	■ 연구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라면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구보안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지침과 매뉴얼이 현재 미비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및 전담조직, 인력 등이 부족함.
4	■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업무 표준지침 마련 필요함.
5	■ 보안관련 업무 전담인력 확보 필요함.
6	■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업무의 과다로 인해 연구보안관련 행정업무까지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해당 부처에서 소규모대학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7	■ 연구보안이 필요하다는 연구자 인식이 많이 부족함.
8	■ 최근 보안이슈는 정보화된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 설문작성에서 일반보안과 정보보안을 구분하였으면 함.
9	■ 연구정보 유출에 대한 정책 추진이 너무 많은 행정이 요구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함.
10	■ 연구자 연구보안 교육개설 및 참여기회 확대.
11	■ 보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플랫폼)등의 지원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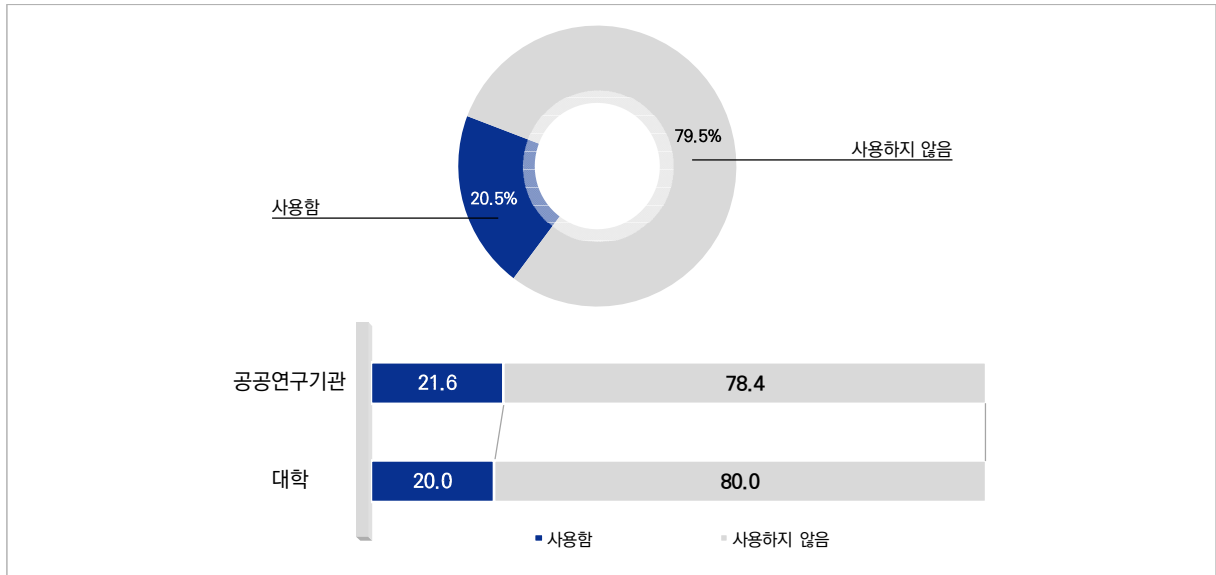
## 제 6절 연구기관 영업비밀 인지도

### 6-1 [문 7-1]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로, ‘영업비밀 용어를 사용함’에 응답한 기관은 20.5%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로 살펴보면, ‘50건 이상’의 경우 ‘영업비밀 용어를 사용함’(29.0%)에 응답한 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50건 미만(23.3%)’, ‘5~10건 미만(17.3%)’, ‘2~5건 미만’(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영업비밀 용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51〉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52]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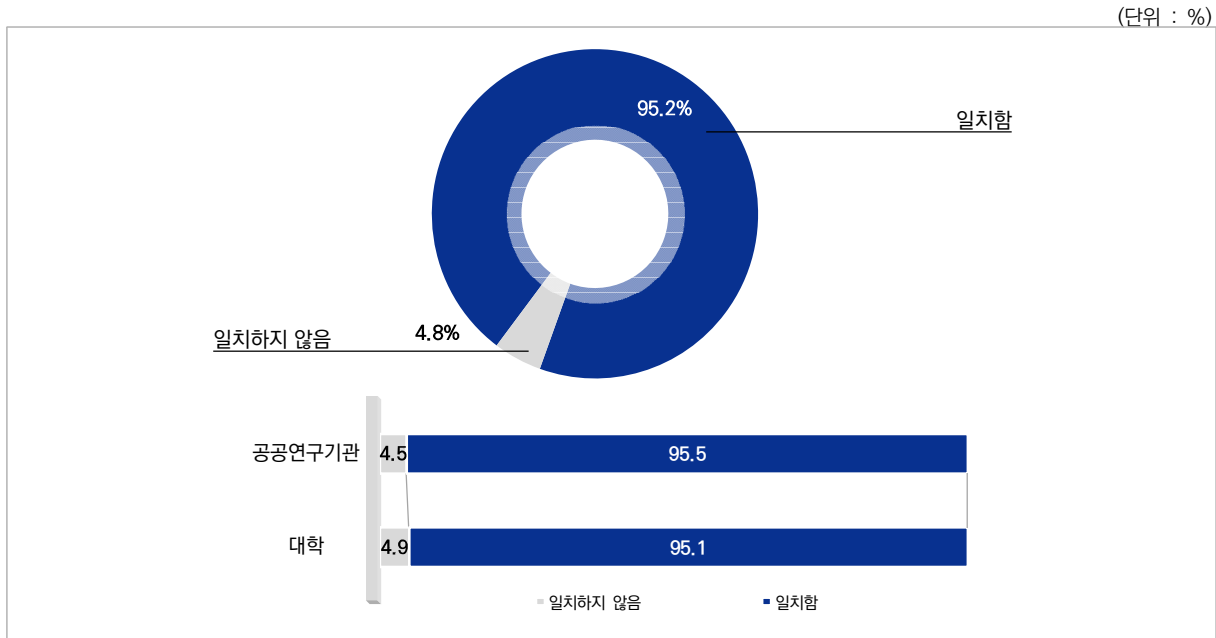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영업비밀 용어를 사용함	영업비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전체		(307)	20.5	79.5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1.6	78.4
	대학	(205)	20.0	8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3.0	87.0
	5천만원 미만	(126)	27.0	73.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8.6	71.4
	1억원 ~ 10억원 미만	(17)	29.4	70.6
	10억원 이상	(4)	25.0	7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3.0	87.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6.7	73.3
	전담조직 보유	(19)	26.3	73.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4.3	85.7
	2건~5건 미만	(71)	16.9	83.1
	5건~10건 미만	(52)	17.3	82.7
	10건~50건 미만	(73)	23.3	76.7
	50건 이상	(62)	29.0	71.0

[BASE: 전체(n=307)]

6-1-1 [문 7-1-1]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

-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로, '법률과 사용 중인 정의가 일치함'에 응답한 기관은 95.2%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모두 '법률과 사용 중인 정의가 일치함'(각 95.5%, 95.1%)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52>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



[BASE: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관(n=63)]

<표 3-53>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법률과 사용 중인 정의가 일치함 (%)	법률과 사용 중인 정의가 일치하지 않음 (%)
<b>전체</b>	<b>(63)</b>	<b>95.2</b>	<b>4.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95.5	4.5
대학	(41)	95.1	4.9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9)	89.5	10.5
5천만원 미만	(34)	97.1	2.9
5천만원 ~ 1억원 미만	(4)	10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5)	100.0	0.0
10억원 이상	(1)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8)	100.0	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40)	92.5	7.5
전담조직 보유	(5)	100.0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7)	85.7	14.3
2건~5건 미만	(12)	91.7	8.3
5건~10건 미만	(9)	100.0	0.0
10건~50건 미만	(17)	100.0	0.0
50건 이상	(18)	94.4	5.6

[BASE: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관(n=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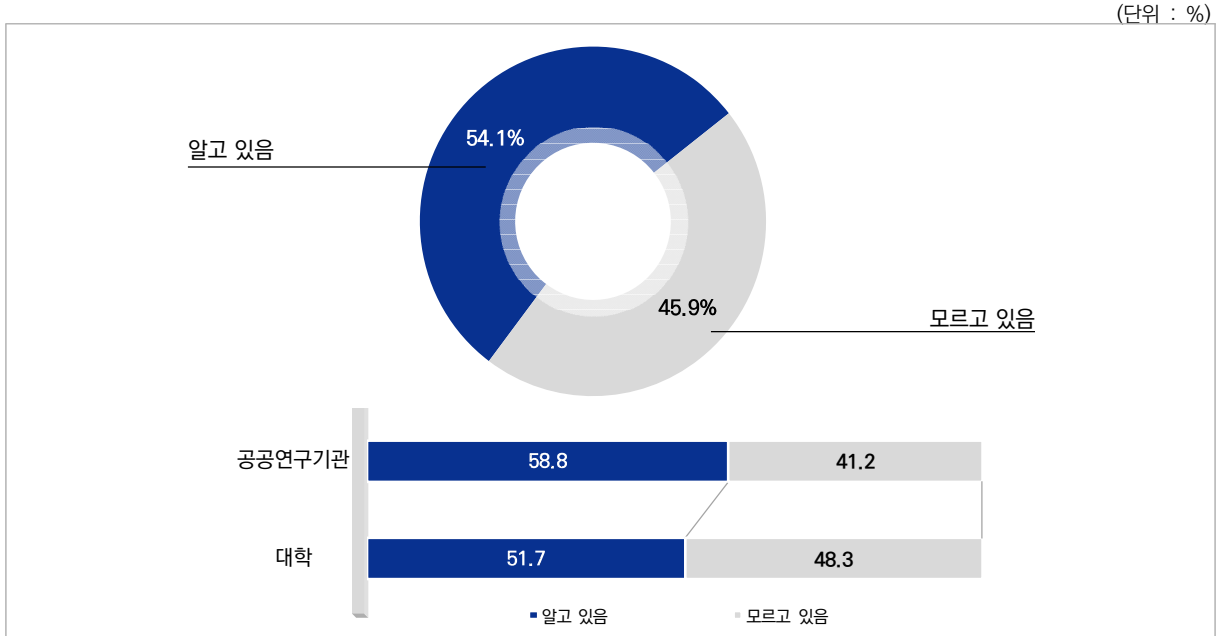
**[\* 영업비밀의 법률상 정의]**

- ◆ 영업비밀이란 (1)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2)비밀로 관리되며(비밀관리성) (3)경제적 가치를 지닌(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은 3가지 법적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어야만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영업비밀 예시 : 연구개발·생산방법, 설계도 등의 기술정보와 고객 및 거래처 정보, 원가정보, 마케팅 전략 등의 경영정보
- ◆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연구자료, 실험데이터, 노하우 등도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충족하면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2 [문 7-1-2]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법적요건 인지 여부로, '3가지 법적요건을 알고 있음'에 응답한 기관은 54.1%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3가지 법적요건을 알고 있음'(68.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61.3%), '보안담당조직 미보유'(44.2%)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하는 기관일수록 3가지 법적요건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53>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BASE: 전체(n=307)]

**[표 3-54]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3가지 법적요건을 알고 있음	3가지 법적요건을 모르고 있음
<b>전체</b>	<b>(307)</b>	<b>54.1</b>	<b>45.9</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58.8	41.2
대학	(205)	51.7	48.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43.2	56.8
5천만원 미만	(126)	63.5	36.5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64.3	35.7
1억원 ~ 10억원 미만	(17)	70.6	29.4
10억원 이상	(4)	50.0	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44.2	55.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61.3	38.7
전담조직 보유	(19)	68.4	31.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38.8	61.2
2건~5건 미만	(71)	46.5	53.5
5건~10건 미만	(52)	57.7	42.3
10건~50건 미만	(73)	57.5	42.5
50건 이상	(62)	67.7	32.3

[BASE: 전체(n=307)]

**[\* 영업비밀의 3가지 법적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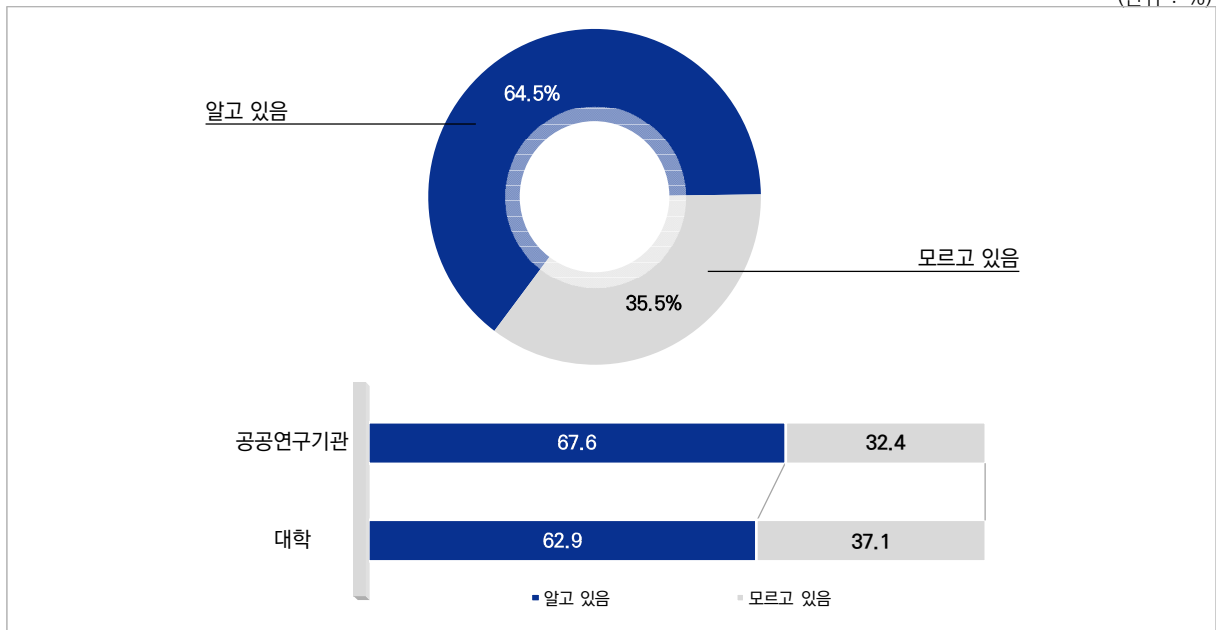
◆ 영업비밀이란 (1)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2)비밀로 관리되며(비밀관리성) (3)경제적 가치를 지닌(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은 3가지 법적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어야만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3 [문 7-1-3]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로, '알고 있음'에 응답한 기관은 64.5%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별로 살펴보면, '50건 이상'의 경우 '알고 있음'(80.6%)에 응답한 기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50건 미만'(69.9%), '5~10건 미만'(63.5%), '2~5건 미만'(5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보호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알고 있음'(73.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72.7%), '보안담당조직 미보유'(54.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4〉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BASE: 전체(n=307)]

[표 3-55]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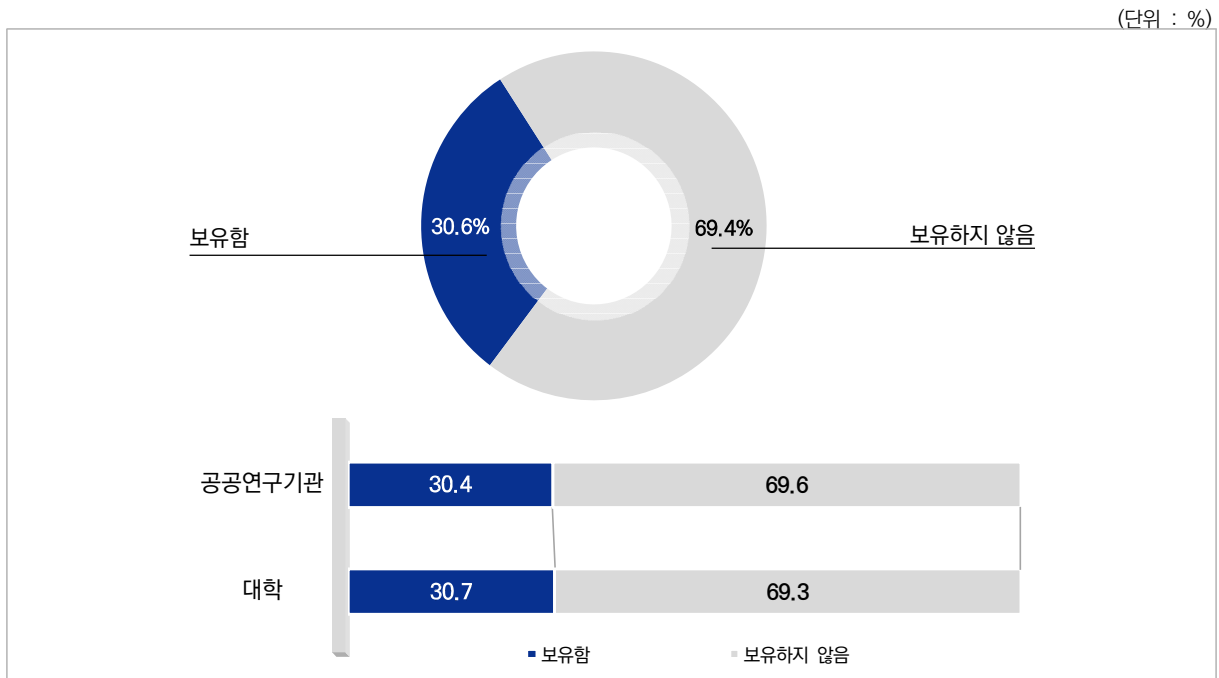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보호 가능 여부를 알고 있음 (%)	보호 가능 여부를 모르고 있음 (%)
전체		(307)	64.5	35.5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67.6	32.4
	대학	(205)	62.9	37.1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54.8	45.2
	5천만원 미만	(126)	71.4	28.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64.3	35.7
	1억원 ~ 10억원 미만	(17)	88.2	11.8
	10억원 이상	(4)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54.3	45.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72.7	27.3
	전담조직 보유	(19)	73.7	26.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49.0	51.0
	2건~5건 미만	(71)	56.3	43.7
	5건~10건 미만	(52)	63.5	36.5
	10건~50건 미만	(73)	69.9	30.1
	50건 이상	(62)	80.6	19.4

[BASE: 전체(n=307)]

6-1-4 [문 7-1-4]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

-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로,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를 보유함’에 응답한 기관은 30.6%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를 보유함’(52.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44.7%), ‘보안담당조직 미보유’(12.3%)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하는 기관일수록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55〉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



[BASE: 전체(n=307)]

【표 3-56】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를 보유함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를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전체		(307)	30.6	69.4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30.4	69.6
	대학	(205)	30.7	69.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8.5	81.5
	5천만원 미만	(126)	42.1	57.9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1.4	78.6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2.9	47.1
	10억원 이상	(4)	50.0	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2.3	87.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44.7	55.3
	전담조직 보유	(19)	52.6	47.4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24.5	75.5
	2건~5건 미만	(71)	21.1	78.9
	5건~10건 미만	(52)	28.8	71.2
	10건~50건 미만	(73)	38.4	61.6
	50건 이상	(62)	38.7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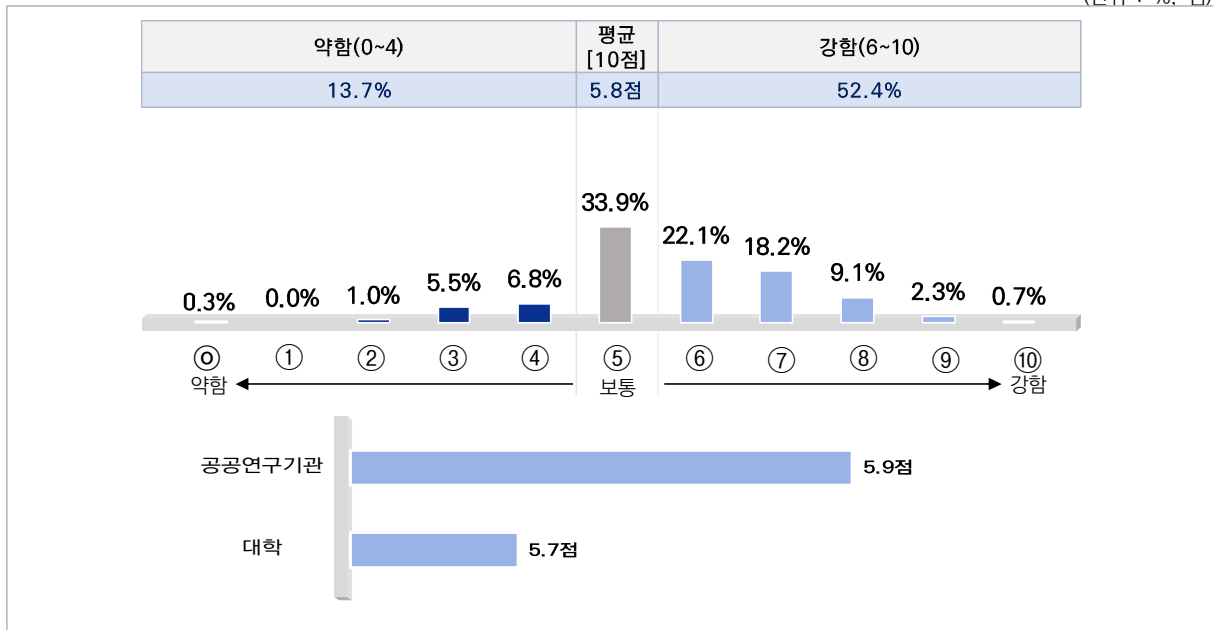
[BASE: 전체(n=307)]

### 6-2 [문 7-2]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이 강하다고(6~10) 응답한 기관은 52.4%로 나타남
-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점수는 5.8점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담조직 보유'의 경우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평균 6.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5.8점), '보안담당조직 미보유'(5.6점) 순으로 나타남
- 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일수록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을 높게 평가함

〈그림 3-56〉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단위 : %, 점)



[BASE: 전체(n=307)]

[표 3-57]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단위 : 개, %, 점)

구분	사례수	약함 (0~4)	보통 (5)	강함 (6~10)	평균 (10점)	
<b>전체</b>	<b>(307)</b>	<b>13.7</b>	<b>33.9</b>	<b>52.4</b>	<b>5.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14.7	31.4	53.9	5.9
	대학	(205)	13.2	35.1	51.7	5.7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5.8	37.7	46.6	5.5
	5천만원 미만	(126)	12.7	31.0	56.3	6.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7.1	28.6	64.3	6.1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9	29.4	64.7	6.1
	10억원 이상	(4)	25.0	25.0	50.0	5.3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3.0	35.5	51.4	5.6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14.0	34.7	51.3	5.8
	전담조직 보유	(19)	15.8	15.8	68.4	6.2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1	38.8	55.1	5.9
	2건~5건 미만	(71)	16.9	42.3	40.8	5.3
	5건~10건 미만	(52)	19.2	25.0	55.8	5.9
	10건~50건 미만	(73)	9.6	32.9	57.5	6.1
	50건 이상	(62)	16.1	29.0	54.8	5.8

[BASE: 전체(n=307)]



# 4

## 부록

---

첨부1. 통계표

첨부2. 조사표



## 첨부 1 통계표

### 1. 기업 일반현황

[부록 표 1] 설립연도

(단위 : 개, %, 년)

구 분		사례수	2008년 이후 (15년 미만)	2003년~ 2007년 (15년~ 20년 미만)	2002년 이전 (20년 이상)	평균 (업력)
전 체		(307)	15.6	58.6	25.7	22.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7.5	15.7	56.9	26.3
	대학	(205)	9.8	80.0	10.2	20.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9.9	56.2	24.0	22.4
	5천만원 미만	(126)	11.9	64.3	23.8	21.1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1.4	35.7	42.9	23.4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9	52.9	41.2	28.1
	10억원 이상	(4)	0.0	75.0	25.0	25.3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22.5	55.8	21.7	21.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10.0	63.3	26.7	22.8
	전담조직 보유	(19)	10.5	42.1	47.4	25.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8.4	40.8	40.8	23.4
	2건~5건 미만	(71)	18.3	59.2	22.5	19.6
	5건~10건 미만	(52)	19.2	67.3	13.5	20.3
	10건~50건 미만	(73)	11.0	63.0	26.0	24.8
	50건 이상	(62)	12.9	59.7	27.4	23.2

[BASE: 전체(n=307)]

[부록 표 2] 기관 소재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제주권
전 체		(307)	31.3	26.4	20.8	14.0	7.5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19.6	30.4	26.5	10.8	12.7
	대학	(205)	37.1	24.4	18.0	15.6	4.9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34.2	25.3	17.1	15.8	7.5
	5천만원 미만	(126)	29.4	26.2	25.4	12.7	6.3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35.7	21.4	14.3	14.3	1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23.5	41.2	23.5	5.9	5.9
	10억원 이상	(4)	0.0	25.0	25.0	25.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32.6	29.7	15.2	13.8	8.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30.7	24.7	23.3	16.0	5.3
	전담조직 보유	(19)	26.3	15.8	42.1	0.0	15.8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26.5	26.5	18.4	18.4	10.2
	2건~5건 미만	(71)	36.6	21.1	22.5	11.3	8.5
	5건~10건 미만	(52)	42.3	25.0	15.4	9.6	7.7
	10건~50건 미만	(73)	27.4	27.4	23.3	15.1	6.8
	50건 이상	(62)	24.2	32.3	22.6	16.1	4.8

[BASE: 전체(n=307)]

[부록 표 3] 기관 형태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대학	공공연구기관
전 체		(307)	66.8	33.2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0.0	100.0
	대학	(205)	100.0	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67.8	32.2
	5천만원 미만	(126)	71.4	28.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8.6	71.4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2.9	47.1
	10억원 이상	(4)	75.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68.8	31.2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68.0	32.0
	전담조직 보유	(19)	42.1	57.9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3.1	46.9
	2건~5건 미만	(71)	67.6	32.4
	5건~10건 미만	(52)	67.3	32.7
	10건~50건 미만	(73)	72.6	27.4
	50건 이상	(62)	69.4	30.6

[BASE: 전체(n=307)]

[부록 표 4] 연구개발비

(단위 : 개, %, 억 원)

구 분		사례수	5억 미만	5억 ~10억 미만	10억 ~30억 미만	30억 이상	거절	평균 (연구 개발비)
전 체		(307)	20.5	10.4	10.7	29.3	29.0	142.1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15.7	15.7	6.9	30.4	31.4	152.5
	대학	(205)	22.9	7.8	12.7	28.8	27.8	137.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21.9	4.8	10.3	15.8	47.3	152.3
	5천만원 미만	(126)	24.6	12.7	11.9	38.9	11.9	98.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42.9	7.1	21.4	28.6	122.4
	1억원 ~ 10억원 미만	(17)	0.0	11.8	11.8	70.6	5.9	359.9
	10억원 이상	(4)	0.0	25.0	0.0	75.0	0.0	347.0
보안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22.5	6.5	11.6	19.6	39.9	125.2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0.0	13.3	8.0	37.3	21.3	166.1
	전담조직 보유	(19)	10.5	15.8	26.3	36.8	10.5	58.2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36.7	6.1	6.1	22.4	28.6	48.6
	2건~5건 미만	(71)	26.8	11.3	4.2	9.9	47.9	50.9
	5건~10건 미만	(52)	23.1	13.5	7.7	28.8	26.9	139.4
	10건~50건 미만	(73)	11.0	16.4	21.9	35.6	15.1	216.4
	50건 이상	(62)	9.7	3.2	11.3	50.0	25.8	188.6

[BASE: 전체(n=307)]

## 2. 연구정보 관리 일반현황

[부록 표 5] 일반과제 등의 연구 '성과물' 관리 방법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특허	연구 보고서	논문	저서	기술 요약 정보	시제품	비공개 (비밀)	기타
전 체		(307)	81.8	72.0	59.9	38.1	18.9	16.9	4.2	1.0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73.5	71.6	52.0	30.4	29.4	25.5	5.9	1.0
	대학	(205)	85.9	72.2	63.9	42.0	13.7	12.7	3.4	1.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74.7	67.8	50.7	26.0	9.6	11.0	1.4	0.7
	5천만원 미만	(126)	88.1	76.2	67.5	46.8	25.4	17.5	3.2	0.8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85.7	50.0	42.9	42.9	50.0	28.6	21.4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94.1	94.1	94.1	70.6	23.5	47.1	17.6	0.0
	10억원 이상	(4)	75.0	75.0	75.0	50.0	25.0	50.0	25.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77.5	66.7	50.7	21.7	10.9	9.4	2.2	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84.0	76.7	67.3	51.3	23.3	23.3	4.0	2.0
	전담조직 보유	(19)	94.7	73.7	68.4	52.6	42.1	21.1	21.1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9.4	71.4	46.9	30.6	22.4	14.3	2.0	2.0
	2건~5건 미만	(71)	80.3	63.4	47.9	25.4	16.9	9.9	0.0	0.0
	5건~10건 미만	(52)	75.0	71.2	61.5	32.7	19.2	13.5	11.5	1.9
	10건~50건 미만	(73)	86.3	78.1	58.9	43.8	16.4	13.7	5.5	1.4
	50건 이상	(62)	93.5	75.8	83.9	56.5	21.0	33.9	3.2	0.0

[BASE: 전체(n=307)]

[부록 표 6] 일반과제 등의 연구 '부산물' 관리 방법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개별 연구자가 직접 관리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비밀로서 관리	특별히 관리하지 않음
전 체		(307)	42.7	39.7	17.6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32.4	52.9	14.7
	대학	(205)	47.8	33.2	19.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47.3	24.0	28.8
	5천만원 미만	(126)	37.3	57.9	4.8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50.0	42.9	7.1
	1억원 ~ 10억원 미만	(17)	35.3	35.3	29.4
	10억원 이상	(4)	50.0	50.0	0.0
보안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51.4	19.6	29.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37.3	54.7	8.0
	전담조직 보유	(19)	21.1	68.4	10.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42.9	36.7	20.4
	2건~5건 미만	(71)	46.5	25.4	28.2
	5건~10건 미만	(52)	48.1	38.5	13.5
	10건~50건 미만	(73)	41.1	46.6	12.3
	50건 이상	(62)	35.5	51.6	12.9

[BASE: 전체(n=307)]

[부록 표 7] 연구 '부산물'을 보안과제와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관리·감독을 위한 설비나 인프라가 부족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관리 규정·절차가 없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관리 규정·절차는 있으나, 연구현장에 적용하기에 부적합	관리할 필요는 있으나, 경영진 또는 연구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기타
전 체		(185)	42.2	26.5	10.8	8.6	4.9	7.0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8)	29.2	31.3	18.8	6.3	2.1	12.5
	대학	(137)	46.7	24.8	8.0	9.5	5.8	5.1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11)	41.4	30.6	16.2	1.8	4.5	5.4
	5천만원 미만	(53)	47.2	20.8	3.8	17.0	5.7	5.7
	5천만원 ~ 1억원 미만	(8)	50.0	25.0	0.0	12.5	0.0	12.5
	1억원 ~ 10억원 미만	(11)	18.2	18.2	0.0	27.3	9.1	27.3
	10억원 이상	(2)	50.0	0.0	0.0	5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11)	36.0	32.4	16.2	5.4	4.5	5.4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8)	54.4	16.2	2.9	11.8	5.9	8.8
	전담조직 보유	(6)	16.7	33.3	0.0	33.3	0.0	16.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31)	32.3	48.4	6.5	6.5	3.2	3.2
	2건~5건 미만	(53)	35.8	20.8	22.6	5.7	7.5	7.5
	5건~10건 미만	(32)	34.4	18.8	15.6	15.6	6.3	9.4
	10건~50건 미만	(39)	48.7	28.2	0.0	12.8	2.6	7.7
	50건 이상	(30)	63.3	20.0	3.3	3.3	3.3	6.7

[BASE: 연구 '부산물'을 개별 연구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기관(n=185)]

### 3. 연구정보 보호(관리) 활동 현황

[부록 표 8]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출입통제 활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외부인 출입통제	접근권한 이 없는 내부인 출입통제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	입구 소지품 검사 및 봉인조치	출구 소지품 검사
<b>전 체</b>		<b>(271)</b>	<b>81.5</b>	<b>68.3</b>	<b>41.3</b>	<b>5.9</b>	<b>4.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90)	87.8	71.1	54.4	12.2	10.0
	대학	(181)	78.5	66.9	34.8	2.8	2.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19)	76.5	62.2	23.5	3.4	2.5
	5천만원 미만	(117)	82.9	70.9	52.1	7.7	6.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92.9	71.4	64.3	7.1	7.1
	1억원 ~ 10억원 미만	(17)	94.1	82.4	58.8	5.9	11.8
	10억원 이상	(4)	100.0	100.0	100.0	25.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07)	76.6	67.3	29.9	2.8	1.9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45)	83.4	68.3	46.9	7.6	6.9
	전담조직 보유	(19)	94.7	73.7	63.2	10.5	5.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6)	78.3	65.2	43.5	2.2	4.3
	2건~5건 미만	(57)	80.7	59.6	35.1	1.8	0.0
	5건~10건 미만	(44)	84.1	70.5	34.1	9.1	9.1
	10건~50건 미만	(68)	77.9	73.5	45.6	7.4	4.4
	50건 이상	(56)	87.5	71.4	46.4	8.9	7.1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출입통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71)]

[부록 표 9]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자료관리 활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전자문서 관리	비전자문서 관리	문서등급 지정	전산상 접근통제
<b>전 체</b>		<b>(293)</b>	<b>84.6</b>	<b>46.4</b>	<b>44.7</b>	<b>36.9</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79.4	56.9	55.9	47.1
	대학	(191)	87.4	40.8	38.7	31.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37)	81.0	32.1	29.2	24.1
	5천만원 미만	(122)	87.7	56.6	55.7	46.7
	5천만원 ~ 1억원 미만	(13)	84.6	84.6	69.2	53.8
	1억원 ~ 10억원 미만	(17)	88.2	58.8	64.7	52.9
	10억원 이상	(4)	100.0	50.0	75.0	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1)	78.6	34.4	32.8	29.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43)	89.5	54.5	51.7	42.0
	전담조직 보유	(19)	89.5	68.4	73.7	52.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7)	78.7	51.1	42.6	36.2
	2건~5건 미만	(67)	85.1	37.3	29.9	37.3
	5건~10건 미만	(52)	88.5	36.5	42.3	30.8
	10건~50건 미만	(69)	84.1	56.5	56.5	43.5
	50건 이상	(58)	86.2	50.0	51.7	34.5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자료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93)]

[부록 표 10]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인적관리 활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정기적으로 연구정보 보안 교육 실시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징구 및 보관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퇴직 시 비밀보호 서약서 징구, 퇴직자 인터뷰 등 퇴직자 관리	연구자의 경쟁기관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
<b>전 체</b>		<b>(215)</b>	<b>67.4</b>	<b>63.7</b>	<b>59.5</b>	<b>26.0</b>	<b>15.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82)	70.7	67.1	62.2	35.4	25.6
	대학	(133)	65.4	61.7	57.9	20.3	9.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78)	60.3	52.6	44.9	15.4	10.3
	5천만원 미만	(105)	68.6	74.3	65.7	28.6	16.2
	5천만원 ~ 1억원 미만	(13)	69.2	61.5	61.5	23.1	15.4
	1억원 ~ 10억원 미만	(16)	87.5	50.0	81.3	50.0	31.3
	10억원 이상	(3)	100.0	66.7	100.0	100.0	33.3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69)	65.2	49.3	53.6	18.8	10.1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28)	68.0	69.5	60.9	27.3	15.6
	전담조직 보유	(18)	72.2	77.8	72.2	44.4	33.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34)	61.8	70.6	58.8	23.5	20.6
	2건~5건 미만	(43)	74.4	55.8	53.5	25.6	9.3
	5건~10건 미만	(35)	71.4	71.4	51.4	28.6	8.6
	10건~50건 미만	(56)	57.1	62.5	66.1	19.6	14.3
	50건 이상	(47)	74.5	61.7	63.8	34.0	23.4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인적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15)]

[부록 표 11]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술적관리 활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인 기록하고 보관	정보시스템의 보안설정 점검	정보시스템 중 연구정보 저장 영역에 대한 권한·암호 등 설정	정보시스템 관리 절차 마련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원본증명 서비스 이용
<b>전 체</b>		<b>(235)</b>	<b>86.4</b>	<b>82.1</b>	<b>66.8</b>	<b>44.3</b>	<b>4.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85)	85.9	88.2	76.5	54.1	9.4
	대학	(150)	86.7	78.7	61.3	38.7	1.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91)	76.9	72.5	57.1	28.6	2.2
	5천만원 미만	(110)	91.8	87.3	70.0	49.1	3.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92.9	85.7	92.9	78.6	7.1
	1억원 ~ 10억원 미만	(16)	93.8	93.8	75.0	68.8	18.8
	10억원 이상	(4)	100.0	100.0	75.0	5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79)	75.9	78.5	69.6	43.0	2.5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38)	91.3	83.3	63.0	40.6	3.6
	전담조직 보유	(18)	94.4	88.9	83.3	77.8	16.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36)	86.1	88.9	69.4	55.6	5.6
	2건~5건 미만	(46)	82.6	80.4	65.2	47.8	4.3
	5건~10건 미만	(39)	92.3	84.6	53.8	46.2	2.6
	10건~50건 미만	(63)	87.3	81.0	76.2	41.3	6.3
	50건 이상	(51)	84.3	78.4	64.7	35.3	2.0

[BASE: 일반과제 등의 비밀관리활동 중 기술적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n=235)]

[부록 표 12] 연구정보 보호 수준

(단위 : 개,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균 (100점)
전 체		(307)	6.2	33.9	52.4	6.2	1.3	59.4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9.8	28.4	54.9	5.9	1.0	60.0
	대학	(205)	4.4	36.6	51.2	6.3	1.5	59.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0.0	20.5	68.5	8.9	2.1	51.9
	5천만원 미만	(126)	11.9	45.2	37.3	4.8	0.8	65.7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57.1	42.9	0.0	0.0	6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17.6	47.1	35.3	0.0	0.0	70.6
	10억원 이상	(4)	25.0	25.0	50.0	0.0	0.0	68.8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2.2	18.1	66.7	10.9	2.2	51.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8.7	46.0	42.7	2.0	0.7	65.0
	전담조직 보유	(19)	15.8	52.6	26.3	5.3	0.0	69.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1	34.7	53.1	4.1	2.0	59.7
	2건~5건 미만	(71)	0.0	25.4	60.6	12.7	1.4	52.5
	5건~10건 미만	(52)	3.8	28.8	55.8	11.5	0.0	56.3
	10건~50건 미만	(73)	8.2	42.5	43.8	2.7	2.7	62.7
	50건 이상	(62)	12.9	37.1	50.0	0.0	0.0	65.7

[BASE: 전체(n=307)]

[부록 표 13]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실시하고 있음	실시하고 있지 않음
전 체		(307)	62.5	37.5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61.8	38.2
	대학	(205)	62.9	37.1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47.9	52.1
	5천만원 미만	(126)	73.0	27.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85.7	1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82.4	17.6
	10억원 이상	(4)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41.3	58.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78.0	22.0
	전담조직 보유	(19)	94.7	5.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1.0	49.0
	2건~5건 미만	(71)	54.9	45.1
	5건~10건 미만	(52)	67.3	32.7
	10건~50건 미만	(73)	63.0	37.0
	50건 이상	(62)	75.8	24.2

[BASE: 전체(n=307)]

[부록 표 14] 연구보안 교육 주기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연 1회	분기별 1회	월 1회	수시
전 체		(192)	58.3	31.3	4.2	6.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63)	46.0	44.4	4.8	4.8
	대학	(129)	64.3	24.8	3.9	7.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70)	62.9	32.9	0.0	4.3
	5천만원 미만	(92)	60.9	28.3	6.5	4.3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25.0	58.3	8.3	8.3
	1억원 ~ 10억원 미만	(14)	50.0	21.4	7.1	21.4
	10억원 이상	(4)	50.0	25.0	0.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57)	63.2	33.3	1.8	1.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17)	59.8	29.1	4.3	6.8
	전담조직 보유	(18)	33.3	38.9	11.1	16.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5)	52.0	32.0	4.0	12.0
	2건~5건 미만	(39)	56.4	38.5	2.6	2.6
	5건~10건 미만	(35)	65.7	31.4	0.0	2.9
	10건~50건 미만	(46)	60.9	21.7	6.5	10.9
	50건 이상	(47)	55.3	34.0	6.4	4.3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n=192)]

[부록 표 15]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대학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교수	내국인 대학·대학원생	관리(행정) 직원	외국인 대학·대학원생
전 체		(129)	98.4	73.6	63.6	47.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0)	-	-	-	-
	대학	(129)	98.4	73.6	63.6	47.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47)	97.9	74.5	59.6	38.3
	5천만원 미만	(66)	98.5	71.2	65.2	53.0
	5천만원 ~ 1억원 미만	(4)	100.0	50.0	5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9)	100.0	88.9	66.7	66.7
	10억원 이상	(3)	100.0	100.0	100.0	66.7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41)	97.6	63.4	65.9	29.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80)	98.8	78.8	62.5	57.5
	전담조직 보유	(8)	100.0	75.0	62.5	37.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4)	100.0	57.1	57.1	14.3
	2건~5건 미만	(26)	96.2	76.9	61.5	46.2
	5건~10건 미만	(24)	95.8	62.5	83.3	45.8
	10건~50건 미만	(33)	100.0	78.8	69.7	57.6
	50건 이상	(32)	100.0	81.3	46.9	53.1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n=129)]

[부록 표 16] 연구보안 교육 실시 대상자\_공공연구기관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연구책임자	관리 직원	일반 연구원	공동연구자
전 체		(63)	100.0	82.5	74.6	68.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63)	100.0	82.5	74.6	68.3
	대학	(0)	-	-	-	-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3)	100.0	78.3	56.5	52.2
	5천만원 미만	(26)	100.0	80.8	96.2	88.5
	5천만원 ~ 1억원 미만	(8)	100.0	87.5	75.0	62.5
	1억원 ~ 10억원 미만	(5)	100.0	100.0	60.0	60.0
	10억원 이상	(1)	100.0	10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6)	100.0	68.8	56.3	43.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37)	100.0	86.5	78.4	78.4
	전담조직 보유	(10)	100.0	90.0	90.0	7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1)	100.0	81.8	81.8	72.7
	2건~5건 미만	(13)	100.0	76.9	61.5	61.5
	5건~10건 미만	(11)	100.0	90.9	72.7	63.6
	10건~50건 미만	(13)	100.0	69.2	100.0	76.9
	50건 이상	(15)	100.0	93.3	60.0	66.7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n=63)]

[부록 표 17]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연구노트 작성·관리 방법	기술보호 관련 법률	연구자료의 보관·폐기 방법	타 기관의 기술· 연구자료 유출 사례
전 체		(192)	80.2	78.1	68.8	58.9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63)	77.8	82.5	66.7	54.0
	대학	(129)	81.4	76.0	69.8	61.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70)	78.6	68.6	64.3	52.9
	5천만원 미만	(92)	82.6	79.3	79.3	62.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58.3	91.7	33.3	50.0
	1억원 ~ 10억원 미만	(14)	85.7	100.0	50.0	64.3
	10억원 이상	(4)	100.0	100.0	75.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57)	73.7	63.2	57.9	52.6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17)	85.5	82.1	77.8	62.4
	전담조직 보유	(18)	66.7	100.0	44.4	55.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5)	76.0	72.0	68.0	36.0
	2건~5건 미만	(39)	76.9	76.9	61.5	51.3
	5건~10건 미만	(35)	82.9	82.9	77.1	57.1
	10건~50건 미만	(46)	80.4	82.6	73.9	67.4
	50건 이상	(47)	83.0	74.5	63.8	70.2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n=192)]

[부록 표 18] 연구보안 교육이 연구자 보안 및 연구정보 보호에 도움 주는 정도

(단위 : 개, %, 점)

구 분		사례수	많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균 (100점)
<b>전 체</b>		<b>(192)</b>	<b>26.0</b>	<b>63.0</b>	<b>9.4</b>	<b>1.6</b>	<b>0.0</b>	<b>78.4</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63)	31.7	57.1	11.1	0.0	0.0	80.2
	대학	(129)	23.3	65.9	8.5	2.3	0.0	77.5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70)	10.0	75.7	12.9	1.4	0.0	73.6
	5천만원 미만	(92)	39.1	53.3	6.5	1.1	0.0	82.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16.7	75.0	8.3	0.0	0.0	77.1
	1억원 ~ 10억원 미만	(14)	28.6	57.1	7.1	7.1	0.0	76.8
	10억원 이상	(4)	25.0	50.0	25.0	0.0	0.0	7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57)	15.8	63.2	19.3	1.8	0.0	73.2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17)	29.9	62.4	6.0	1.7	0.0	80.1
	전담조직 보유	(18)	33.3	66.7	0.0	0.0	0.0	83.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5)	24.0	72.0	0.0	4.0	0.0	79.0
	2건~5건 미만	(39)	20.5	69.2	7.7	2.6	0.0	76.9
	5건~10건 미만	(35)	22.9	65.7	8.6	2.9	0.0	77.1
	10건~50건 미만	(46)	39.1	52.2	8.7	0.0	0.0	82.6
	50건 이상	(47)	21.3	61.7	17.0	0.0	0.0	76.1

[BASE: 연구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n=192)]

[부록 표 19]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교육대상인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교육내용이 연구현장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많아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교육시간이 부족해서
<b>전 체</b>		<b>(21)</b>	<b>57.1</b>	<b>33.3</b>	<b>23.8</b>	<b>4.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7)	57.1	28.6	28.6	14.3
	대학	(14)	57.1	35.7	21.4	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0)	50.0	20.0	30.0	0.0
	5천만원 미만	(7)	57.1	28.6	14.3	14.3
	5천만원 ~ 1억원 미만	(1)	100.0	100.0	10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2)	50.0	100.0	0.0	0.0
	10억원 이상	(1)	10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2)	58.3	25.0	33.3	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9)	55.6	44.4	11.1	11.1
	전담조직 보유	(0)	-	-	-	-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	0.0	0.0	100.0	0.0
	2건~5건 미만	(4)	50.0	25.0	25.0	0.0
	5건~10건 미만	(4)	25.0	50.0	25.0	0.0
	10건~50건 미만	(4)	25.0	50.0	25.0	0.0
	50건 이상	(8)	100.0	25.0	12.5	12.5

[BASE: 연구보안 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관(n=21)]

[부록 표 20] 국제공동연구 실적 유무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국제공동연구 실적 있음	국제공동연구 실적 없음
전 체		(307)	16.6	83.4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0.6	79.4
	대학	(205)	14.6	85.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8.9	91.1
	5천만원 미만	(126)	21.4	78.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35.7	6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35.3	64.7
	10억원 이상	(4)	0.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0.1	89.9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0.0	80.0
	전담조직 보유	(19)	36.8	63.2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0.2	89.8
	2건~5건 미만	(71)	14.1	85.9
	5건~10건 미만	(52)	17.3	82.7
	10건~50건 미만	(73)	19.2	80.8
	50건 이상	(62)	21.0	79.0

[BASE: 전체(n=307)]

[부록 표 21]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 보유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전 체		(51)	68.6	31.4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1)	61.9	38.1
	대학	(30)	73.3	26.7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3)	46.2	53.8
	5천만원 미만	(27)	77.8	22.2
	5천만원 ~ 1억원 미만	(5)	60.0	40.0
	1억원 ~ 10억원 미만	(6)	83.3	16.7
	10억원 이상	(0)	-	-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4)	42.9	57.1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30)	80.0	20.0
	전담조직 보유	(7)	71.4	28.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5)	60.0	40.0
	2건~5건 미만	(10)	90.0	10.0
	5건~10건 미만	(9)	55.6	44.4
	10건~50건 미만	(14)	64.3	35.7
	50건 이상	(13)	69.2	30.8

[BASE: 국제공동연구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n=51)]

[부록 표 22] 보안규정 지침에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보안규정 지침에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함	보안규정 지침에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전 체		(51)	58.8	41.2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1)	52.4	47.6
	대학	(30)	63.3	36.7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3)	23.1	76.9
	5천만원 미만	(27)	70.4	29.6
	5천만원 ~ 1억원 미만	(5)	60.0	40.0
	1억원 ~ 10억원 미만	(6)	83.3	16.7
	10억원 이상	(0)	-	-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4)	28.6	71.4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30)	70.0	30.0
	전담조직 보유	(7)	71.4	28.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5)	60.0	40.0
	2건~5건 미만	(10)	80.0	20.0
	5건~10건 미만	(9)	33.3	66.7
	10건~50건 미만	(14)	64.3	35.7
	50건 이상	(13)	53.8	46.2

[BASE: 국제공동연구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n=51)]

[부록 표 23] 일반과제 등의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 포함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함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전 체		(30)	66.7	33.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1)	90.9	9.1
	대학	(19)	52.6	47.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	33.3	66.7
	5천만원 미만	(19)	68.4	31.6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10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5)	60.0	40.0
	10억원 이상	(0)	-	-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4)	50.0	5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21)	66.7	33.3
	전담조직 보유	(5)	80.0	2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3)	100.0	0.0
	2건~5건 미만	(8)	75.0	25.0
	5건~10건 미만	(3)	66.7	33.3
	10건~50건 미만	(9)	66.7	33.3
	50건 이상	(7)	42.9	57.1

[BASE: 보안과제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인 참여배제 및 기관장 승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응답한 기관(n=30)]

[부록 표 24] 외국인의 연구 참여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함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음
전 체		(307)	33.2	66.8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1.6	78.4
	대학	(205)	39.0	61.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21.9	78.1
	5천만원 미만	(126)	42.9	57.1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1.4	78.6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2.9	47.1
	10억원 이상	(4)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21.7	78.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42.7	57.3
	전담조직 보유	(19)	42.1	57.9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6.3	83.7
	2건~5건 미만	(71)	16.9	83.1
	5건~10건 미만	(52)	32.7	67.3
	10건~50건 미만	(73)	39.7	60.3
	50건 이상	(62)	58.1	41.9

[BASE: 전체(n=307)]

[부록 표 25] 외국인에 대한 연구보안 관리수준

(단위 : 개,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	잘 이행되고 있음	보통	잘 이행되지 않음	전혀 이행되지 않음	평균 (100점)
전 체		(102)	6.9	54.9	35.3	2.9	0.0	66.4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13.6	59.1	22.7	4.5	0.0	70.5
	대학	(80)	5.0	53.8	38.8	2.5	0.0	65.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2)	0.0	43.8	56.3	0.0	0.0	60.9
	5천만원 미만	(54)	11.1	63.0	22.2	3.7	0.0	70.4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0.0	66.7	33.3	0.0	0.0	66.7
	1억원 ~ 10억원 미만	(9)	11.1	55.6	33.3	0.0	0.0	69.4
	10억원 이상	(4)	0.0	25.0	50.0	25.0	0.0	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0)	0.0	40.0	60.0	0.0	0.0	6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4)	7.8	62.5	26.6	3.1	0.0	68.8
	전담조직 보유	(8)	25.0	50.0	12.5	12.5	0.0	71.9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8)	0.0	75.0	25.0	0.0	0.0	68.8
	2건~5건 미만	(12)	0.0	58.3	41.7	0.0	0.0	64.6
	5건~10건 미만	(17)	17.6	47.1	35.3	0.0	0.0	70.6
	10건~50건 미만	(29)	3.4	72.4	17.2	6.9	0.0	68.1
	50건 이상	(36)	8.3	38.9	50.0	2.8	0.0	63.2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부록 표 26]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 보유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유함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을 보유안담당조직 미보유
<b>전 체</b>		<b>(102)</b>	<b>41.2</b>	<b>58.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40.9	59.1
	대학	(80)	41.3	58.8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2)	37.5	62.5
	5천만원 미만	(54)	42.6	57.4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66.7	33.3
	1억원 ~ 10억원 미만	(9)	55.6	44.4
	10억원 이상	(4)	0.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0)	23.3	76.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4)	46.9	53.1
	전담조직 보유	(8)	62.5	37.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8)	50.0	50.0
	2건~5건 미만	(12)	50.0	50.0
	5건~10건 미만	(17)	41.2	58.8
	10건~50건 미만	(29)	37.9	62.1
	50건 이상	(36)	38.9	61.1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부록 표 27] 외국인 연구 참여시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작성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작성	작성하지 않음
<b>전 체</b>		<b>(102)</b>	<b>42.2</b>	<b>45.1</b>	<b>12.7</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40.9	50.0	9.1
	대학	(80)	42.5	43.8	13.8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2)	50.0	21.9	28.1
	5천만원 미만	(54)	40.7	53.7	5.6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33.3	66.7	0.0
	1억원 ~ 10억원 미만	(9)	33.3	55.6	11.1
	10억원 이상	(4)	25.0	75.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0)	46.7	26.7	26.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4)	34.4	57.8	7.8
	전담조직 보유	(8)	87.5	12.5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8)	50.0	37.5	12.5
	2건~5건 미만	(12)	50.0	25.0	25.0
	5건~10건 미만	(17)	47.1	41.2	11.8
	10건~50건 미만	(29)	27.6	58.6	13.8
	50건 이상	(36)	47.2	44.4	8.3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부록 표 28] 외국인 연구원 출입증 발급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발급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발급	발급하지 않음
전 체		(102)	21.6	27.5	51.0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27.3	59.1	13.6
	대학	(80)	20.0	18.8	61.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2)	21.9	12.5	65.6
	5천만원 미만	(54)	20.4	29.6	5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3)	0.0	66.7	33.3
	1억원 ~ 10억원 미만	(9)	44.4	44.4	11.1
	10억원 이상	(4)	0.0	50.0	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0)	26.7	16.7	56.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64)	17.2	29.7	53.1
	전담조직 보유	(8)	37.5	50.0	12.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8)	12.5	25.0	62.5
	2건~5건 미만	(12)	25.0	16.7	58.3
	5건~10건 미만	(17)	29.4	11.8	58.8
	10건~50건 미만	(29)	10.3	44.8	44.8
	50건 이상	(36)	27.8	25.0	47.2

[BASE: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n=102)]

[부록 표 29]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 유무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조치이행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조치이행	별도의 조치 없음
전 체		(307)	26.1	18.2	55.7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6.5	27.5	46.1
	대학	(205)	25.9	13.7	60.5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6.4	7.5	76.0
	5천만원 미만	(126)	33.3	27.0	39.7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50.0	14.3	35.7
	1억원 ~ 10억원 미만	(17)	29.4	41.2	29.4
	10억원 이상	(4)	50.0	5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5.9	7.2	76.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33.3	26.0	40.7
	전담조직 보유	(19)	42.1	36.8	21.1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8.4	10.2	71.4
	2건~5건 미만	(71)	28.2	11.3	60.6
	5건~10건 미만	(52)	36.5	17.3	46.2
	10건~50건 미만	(73)	20.5	26.0	53.4
	50건 이상	(62)	27.4	24.2	48.4

[BASE: 전체(n=307)]

[부록 표 30] 보안과제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반납자료 확인	출입증 및 PC 등 개인 정보기기 반납	비밀유지 의무 등 서약서 작성	접속가능한 전산망 또는 계정 등의 차단	반출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국내 타 기관·기업으로의 재취업·이직 제한	해외 기관·기업으로의 재취업·이직 제한	
<b>전 체</b>	<b>(136)</b>	<b>74.3</b>	<b>61.8</b>	<b>57.4</b>	<b>55.9</b>	<b>52.9</b>	<b>15.4</b>	<b>0.7</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5)	89.1	81.8	49.1	69.1	69.1	21.8	1.8
	대학	(81)	64.2	48.1	63.0	46.9	42.0	11.1	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5)	62.9	42.9	54.3	42.9	34.3	2.9	0.0
	5천만원 미만	(76)	72.4	64.5	61.8	60.5	55.3	14.5	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9)	100.0	100.0	22.2	77.8	88.9	33.3	11.1
	1억원 ~ 10억원 미만	(12)	100.0	66.7	58.3	50.0	75.0	41.7	0.0
	10억원 이상	(4)	75.0	75.0	75.0	50.0	25.0	25.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2)	62.5	43.8	53.1	43.8	34.4	9.4	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89)	76.4	65.2	56.2	56.2	55.1	18.0	1.1
	전담조직 보유	(15)	86.7	80.0	73.3	80.0	80.0	13.3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4)	78.6	71.4	42.9	64.3	57.1	7.1	0.0
	2건~5건 미만	(28)	71.4	50.0	50.0	32.1	42.9	14.3	0.0
	5건~10건 미만	(28)	75.0	53.6	60.7	57.1	53.6	17.9	3.6
	10건~50건 미만	(34)	76.5	73.5	64.7	58.8	52.9	20.6	0.0
	50건 이상	(32)	71.9	62.5	59.4	68.8	59.4	12.5	0.0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 대상으로 연구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기관(n=136)]

[부록 표 31] 일반과제 등에 대해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또는 이직 전 이행하고 있는 연구정보 보호조치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분	사례수	반납 자료 확인	출입증 및 PC 등 개인 정보기기 반납	접속 가능한 전산망 또는 계정 등의 차단	비밀 유지 의무 등 서약서 작성	반출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국내 타 기관·기업으로의 재취업·이직 제한	보안 문서 등에 대한 인계서 작성	해외 기관·기업으로의 재취업·이직 제한	
<b>전 체</b>	<b>(56)</b>	<b>78.6</b>	<b>78.6</b>	<b>57.1</b>	<b>55.4</b>	<b>44.6</b>	<b>26.8</b>	<b>3.6</b>	<b>1.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8)	89.3	92.9	75.0	60.7	64.3	32.1	3.6	3.6
	대학	(28)	67.9	64.3	39.3	50.0	25.0	21.4	3.6	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1)	72.7	72.7	36.4	63.6	27.3	18.2	0.0	0.0
	5천만원 미만	(34)	79.4	79.4	61.8	58.8	47.1	20.6	2.9	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2)	50.0	100.0	50.0	0.0	50.0	50.0	50.0	50.0
	1억원 ~ 10억원 미만	(7)	85.7	71.4	57.1	42.9	42.9	57.1	0.0	0.0
	10억원 이상	(2)	100.0	100.0	100.0	50.0	100.0	5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0)	60.0	60.0	30.0	70.0	10.0	30.0	0.0	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39)	84.6	79.5	61.5	48.7	48.7	30.8	5.1	2.6
	전담조직 보유	(7)	71.4	100.0	71.4	71.4	71.4	0.0	0.0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5)	80.0	60.0	40.0	60.0	40.0	20.0	0.0	0.0
	2건~5건 미만	(8)	62.5	62.5	37.5	37.5	12.5	37.5	0.0	0.0
	5건~10건 미만	(9)	88.9	88.9	66.7	55.6	33.3	22.2	22.2	11.1
	10건~50건 미만	(19)	78.9	78.9	68.4	63.2	52.6	21.1	0.0	0.0
	50건 이상	(15)	80.0	86.7	53.3	53.3	60.0	33.3	0.0	0.0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 대상으로 일반과제에도 연구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기관(n=56)]

[부록 표 32] 퇴직자(졸업생)·이직자(재학생)의 퇴직 후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내용) 확인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확인 함	해당 기관·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확인하지 않음
전 체		(136)	2.2	97.8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5)	1.8	98.2
	대학	(81)	2.5	97.5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5)	0.0	100.0
	5천만원 미만	(76)	2.6	97.4
	5천만원 ~ 1억원 미만	(9)	0.0	100.0
	1억원 ~ 10억원 미만	(12)	0.0	100.0
	10억원 이상	(4)	25.0	7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32)	0.0	10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89)	2.2	97.8
	전담조직 보유	(15)	6.7	93.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4)	7.1	92.9
	2건~5건 미만	(28)	0.0	100.0
	5건~10건 미만	(28)	0.0	100.0
	10건~50건 미만	(34)	5.9	94.1
	50건 이상	(32)	0.0	100.0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 대상으로 연구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기관(n=136)]

[부록 표 33] 연구과제(내용)를 확인한 경우, 보안유지 사항의 포함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보안유지 사항 포함	보안유지 사항 포함하지 않음
전 체		(3)	33.3	66.7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	0.0	100.0
	대학	(2)	50.0	5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0)	-	-
	5천만원 미만	(2)	50.0	5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0)	-	-
	1억원 ~ 10억원 미만	(0)	-	-
	10억원 이상	(1)	0.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2)	50.0	50.0
	전담조직 보유	(1)	0.0	10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	100.0	0.0
	2건~5건 미만	(0)	-	-
	5건~10건 미만	(0)	-	-
	10건~50건 미만	(2)	0.0	100.0
	50건 이상	(0)	-	-

[BASE: 퇴직자(졸업자)·이직자(재학생)의 퇴직·이직 후 해당 기관·기업의 연구과제를 확인하는 기관(n=3)]

#### 4. 연구정보 보안 인프라 현황

[부록 표 34] 연구보안 담당조직 보유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연구보안만 담당하는 전담조직 보유	특정 부서가 소관 업무의 일부로 담당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전 체		(307)	6.2	48.9	45.0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10.8	47.1	42.2
	대학	(205)	3.9	49.8	46.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4	25.3	73.3
	5천만원 미만	(126)	6.3	71.4	22.2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8.6	57.1	14.3
	1억원 ~ 10억원 미만	(17)	29.4	64.7	5.9
	10억원 이상	(4)	0.0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0.0	0.0	10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0.0	100.0	0.0
	전담조직 보유	(19)	100.0	0.0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1	38.8	55.1
	2건~5건 미만	(71)	4.2	35.2	60.6
	5건~10건 미만	(52)	7.7	57.7	34.6
	10건~50건 미만	(73)	8.2	50.7	41.1
	50건 이상	(62)	4.8	62.9	32.3

[BASE: 전체(n=307)]

[부록 표 35] 연구보안 담당조직의 형태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연구보안만 담당하는 전담조직 보유	특정 부서가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전 체		(169)	11.2	88.8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18.6	81.4
	대학	(110)	7.3	92.7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5.1	94.9
	5천만원 미만	(98)	8.2	91.8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33.3	66.7
	1억원 ~ 10억원 미만	(16)	31.3	68.8
	10억원 이상	(4)	0.0	10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0	100.0
	전담조직 보유	(19)	100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13.6	86.4
	2건~5건 미만	(28)	10.7	89.3
	5건~10건 미만	(34)	11.8	88.2
	10건~50건 미만	(43)	14	86.0
	50건 이상	(42)	7.1	92.9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부록 표 36]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전담인력

(단위 : 개, %, 명)

구 분		사례수	없음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합계	평균
<b>전 체</b>		<b>(169)</b>	<b>80.5</b>	<b>13.6</b>	<b>3.0</b>	<b>1.8</b>	<b>1.2</b>	<b>75</b>	<b>0.4</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69.5	18.6	5.1	3.4	3.4	48	0.8
	대학	(110)	86.4	10.9	1.8	0.9	0.0	27	0.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94.9	5.1	0.0	0.0	0.0	2	0.1
	5천만원 미만	(98)	80.6	14.3	1.0	2.0	2.0	46	0.5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41.7	33.3	25.0	0.0	0.0	15	1.3
	1억원 ~ 10억원 미만	(16)	68.8	18.8	6.3	6.3	0.0	12	0.8
	10억원 이상	(4)	100.0	0.0	0.0	0.0	0.0	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90.7	8.7	0.7	0.0	0.0	18	0.1
	전담조직 보유	(19)	0.0	52.6	21.1	15.8	10.5	57	3.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72.7	18.2	9.1	0.0	0.0	10	0.5
	2건~5건 미만	(28)	85.7	14.3	0.0	0.0	0.0	5	0.2
	5건~10건 미만	(34)	82.4	11.8	5.9	0.0	0.0	13	0.4
	10건~50건 미만	(43)	76.7	14.0	2.3	4.7	2.3	29	0.7
	50건 이상	(42)	83.3	11.9	0.0	2.4	2.4	18	0.4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부록 표 37]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겸임인력

(단위 : 개, %, 명)

구 분		사례수	없음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합계	평균
<b>전 체</b>		<b>(169)</b>	<b>5.3</b>	<b>81.1</b>	<b>7.1</b>	<b>3.0</b>	<b>3.6</b>	<b>292</b>	<b>1.7</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6.8	74.6	10.2	3.4	5.1	115	1.9
	대학	(110)	4.5	84.5	5.5	2.7	2.7	177	1.6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2.6	84.6	10.3	0.0	2.6	62	1.6
	5천만원 미만	(98)	5.1	84.7	4.1	4.1	2.0	159	1.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16.7	58.3	25.0	0.0	0.0	18	1.5
	1억원 ~ 10억원 미만	(16)	6.3	75.0	0.0	0.0	18.8	42	2.6
	10억원 이상	(4)	0.0	50.0	25.0	25.0	0.0	11	2.8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0.0	88.7	6.0	2.0	3.3	258	1.7
	전담조직 보유	(19)	47.4	21.1	15.8	10.5	5.3	34	1.8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4.5	81.8	9.1	4.5	0.0	32	1.5
	2건~5건 미만	(28)	3.6	85.7	3.6	3.6	3.6	49	1.8
	5건~10건 미만	(34)	5.9	85.3	8.8	0.0	0.0	46	1.4
	10건~50건 미만	(43)	9.3	72.1	7.0	7.0	4.7	83	1.9
	50건 이상	(42)	2.4	83.3	7.1	0.0	7.1	82	2.0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부록 표 38] 연구보안 담당인력 현황\_필요인력

(단위 : 개, %, 명)

구 분		사례수	없음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합계	평균
<b>전 체</b>		<b>(169)</b>	<b>37.3</b>	<b>46.7</b>	<b>9.5</b>	<b>3.0</b>	<b>3.6</b>	<b>242</b>	<b>1.4</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30.5	47.5	11.9	1.7	8.5	119	2.0
	대학	(110)	40.9	46.4	8.2	3.6	0.9	123	1.1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43.6	53.8	2.6	0.0	0.0	30	0.8
	5천만원 미만	(98)	35.7	49.0	9.2	3.1	3.1	136	1.4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16.7	33.3	33.3	16.7	0.0	30	2.5
	1억원 ~ 10억원 미만	(16)	37.5	37.5	12.5	0.0	12.5	39	2.4
	10억원 이상	(4)	75.0	0.0	0.0	0.0	25.0	7	1.8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42.0	48.0	8.0	0.7	1.3	156	1.0
	전담조직 보유	(19)	0.0	36.8	21.1	21.1	21.1	86	4.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31.8	50.0	9.1	9.1	0.0	31	1.4
	2건~5건 미만	(28)	53.6	42.9	3.6	0.0	0.0	20	0.7
	5건~10건 미만	(34)	38.2	47.1	8.8	5.9	0.0	40	1.2
	10건~50건 미만	(43)	32.6	48.8	11.6	2.3	4.7	69	1.6
	50건 이상	(42)	33.3	45.2	11.9	0.0	9.5	82	2.0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부록 표 39]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b>전 체</b>		<b>(169)</b>	<b>74.6</b>	<b>25.4</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59)	79.7	20.3
	대학	(110)	71.8	28.2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39)	53.8	46.2
	5천만원 미만	(98)	78.6	21.4
	5천만원 ~ 1억원 미만	(12)	91.7	8.3
	1억원 ~ 10억원 미만	(16)	81.3	18.8
	10억원 이상	(4)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72.0	28.0
	전담조직 보유	(19)	94.7	5.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22)	72.7	27.3
	2건~5건 미만	(28)	78.6	21.4
	5건~10건 미만	(34)	64.7	35.3
	10건~50건 미만	(43)	79.1	20.9
	50건 이상	(42)	76.2	23.8

[BASE: 연구보안 담당조직을 보유한 기관(n=169)]

[부록 표 40]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형태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
<b>전 체</b>		<b>(126)</b>	<b>54.8</b>	<b>63.5</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7)	46.8	83.0
	대학	(79)	59.5	51.9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1)	42.9	66.7
	5천만원 미만	(77)	54.5	61.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1)	45.5	72.7
	1억원 ~ 10억원 미만	(13)	76.9	76.9
	10억원 이상	(4)	75.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08)	52.8	63.9
	전담조직 보유	(18)	66.7	61.1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6)	56.3	62.5
	2건~5건 미만	(22)	36.4	77.3
	5건~10건 미만	(22)	63.6	45.5
	10건~50건 미만	(34)	61.8	55.9
	50건 이상	(32)	53.1	75.0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부록 표 41] 연구보안인력 대상 실시 중인 직무교육 내용

(단위 : 개, %, 복수 응답)

구 분		사례수	기관의 보안 규정·지침	전자 문서 및 연구 자료 관리 요령	연구 정보 보호 제도	보안 서약서 작성·운영	비전자 문서 관리 요령	출입 권한에 따른 출입 가능 장소에 대한 교육	기술·연구 정보 분쇄·판례 정보	휴대품 검사 등 보안 검색
<b>전 체</b>		<b>(126)</b>	<b>86.5</b>	<b>84.9</b>	<b>70.6</b>	<b>58.7</b>	<b>55.6</b>	<b>38.9</b>	<b>33.3</b>	<b>19.8</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7)	97.9	89.4	76.6	68.1	61.7	44.7	42.6	19.1
	대학	(79)	79.7	82.3	67.1	53.2	51.9	35.4	27.8	20.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1)	76.2	71.4	33.3	57.1	38.1	23.8	23.8	14.3
	5천만원 미만	(77)	87.0	85.7	75.3	55.8	57.1	45.5	35.1	22.1
	5천만원 ~ 1억원 미만	(11)	90.9	90.9	72.7	54.5	81.8	18.2	27.3	18.2
	1억원 ~ 10억원 미만	(13)	92.3	92.3	92.3	69.2	46.2	38.5	38.5	15.4
	10억원 이상	(4)	100.0	100.0	100.0	100.0	75.0	50.0	50.0	2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08)	84.3	85.2	69.4	59.3	54.6	38.0	30.6	20.4
	전담조직 보유	(18)	100.0	83.3	77.8	55.6	61.1	44.4	50.0	16.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6)	87.5	81.3	68.8	62.5	43.8	43.8	31.3	12.5
	2건~5건 미만	(22)	95.5	81.8	68.2	36.4	63.6	13.6	22.7	13.6
	5건~10건 미만	(22)	72.7	95.5	72.7	50.0	54.5	27.3	31.8	13.6
	10건~50건 미만	(34)	91.2	79.4	64.7	64.7	61.8	44.1	38.2	20.6
	50건 이상	(32)	84.4	87.5	78.1	71.9	50.0	56.3	37.5	31.3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부록 표 42]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순위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기관의 보안 규정·지 침	전자 문서 및 연구 자료 관리 요령	연구정보 보호 제도	기술· 연구정보 분쟁·판 례 정보	비전자 문서 관리 요령	보안 서약서 작성·운 영	출입 허가 등록 절차
<b>전 체</b>		<b>(126)</b>	<b>32.5</b>	<b>22.2</b>	<b>20.6</b>	<b>13.5</b>	<b>4.8</b>	<b>3.2</b>	<b>3.2</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7)	46.8	19.1	21.3	4.3	2.1	4.3	2.1
	대학	(79)	24.1	24.1	20.3	19.0	6.3	2.5	3.8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1)	19.0	19.0	38.1	4.8	0.0	4.8	14.3
	5천만원 미만	(77)	36.4	19.5	16.9	18.2	7.8	1.3	0.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1)	27.3	27.3	9.1	9.1	0.0	18.2	9.1
	1억원 ~ 10억원 미만	(13)	38.5	30.8	23.1	7.7	0.0	0.0	0.0
	10억원 이상	(4)	25.0	50.0	25.0	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08)	28.7	25.0	21.3	13.9	5.6	2.8	2.8
	전담조직 보유	(18)	55.6	5.6	16.7	11.1	0.0	5.6	5.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6)	25.0	12.5	25.0	25.0	6.3	6.3	0.0
	2건~5건 미만	(22)	27.3	13.6	18.2	18.2	4.5	9.1	9.1
	5건~10건 미만	(22)	45.5	22.7	13.6	9.1	4.5	4.5	0.0
	10건~50건 미만	(34)	32.4	29.4	11.8	14.7	5.9	0.0	5.9
	50건 이상	(32)	31.3	25.0	34.4	6.3	3.1	0.0	0.0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부록 표 43]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으로 원하는 직무교육 내용 - 1+2순위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기관의 보안 규정·지 침	전자 문서 및 연구 자료 관리 요령	연구정보 보호 제도	기술· 연구정보 분쟁·판 례 정보	비전자 문서 관리 요령	보안 서약서 작성·운 영	출입 허가 등록 절차
<b>전 체</b>		<b>(126)</b>	<b>45.2</b>	<b>44.4</b>	<b>42.1</b>	<b>23.8</b>	<b>12.7</b>	<b>8.7</b>	<b>6.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47)	57.4	51.1	38.3	14.9	10.6	6.4	6.4
	대학	(79)	38.0	40.5	44.3	29.1	13.9	10.1	6.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21)	42.9	28.6	52.4	4.8	9.5	4.8	23.8
	5천만원 미만	(77)	44.2	45.5	37.7	32.5	14.3	10.4	1.3
	5천만원 ~ 1억원 미만	(11)	45.5	45.5	36.4	9.1	18.2	18.2	18.2
	1억원 ~ 10억원 미만	(13)	53.8	61.5	46.2	23.1	7.7	0.0	0.0
	10억원 이상	(4)	50.0	50.0	75.0	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0)	-	-	-	-	-	-	-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08)	42.6	46.3	43.5	24.1	11.1	8.3	6.5
	전담조직 보유	(18)	61.1	33.3	33.3	22.2	22.2	11.1	5.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16)	37.5	31.3	50.0	25.0	12.5	6.3	6.3
	2건~5건 미만	(22)	36.4	22.7	45.5	40.9	13.6	13.6	18.2
	5건~10건 미만	(22)	54.5	50.0	40.9	13.6	18.2	9.1	0.0
	10건~50건 미만	(34)	50.0	50.0	32.4	23.5	11.8	14.7	5.9
	50건 이상	(32)	43.8	56.3	46.9	18.8	9.4	0.0	3.1

[BASE: 연구보안 담당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n=126)]

[부록 표 44]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없음	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응답 거절	평균
전 체		(307)	47.6	35.2	2.9	5.5	8.8	1.3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46.1	34.3	2.9	8.8	7.8	2.1
	대학	(205)	48.3	35.6	2.9	3.9	9.3	0.9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00.0	0.0	0.0	0.0	0.0	0.0
	5천만원 미만	(126)	0.0	69.8	5.6	6.3	18.3	1.8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28.6	7.1	50.0	14.3	10.8
	1억원 ~ 10억원 미만	(17)	0.0	76.5	5.9	11.8	5.9	2.9
	10억원 이상	(4)	0.0	75.0	0.0	0.0	25.0	0.9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77.5	17.4	1.4	0.7	2.9	0.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4.7	48.7	2.7	8.7	15.3	2.0
	전담조직 보유	(19)	10.5	57.9	15.8	15.8	0.0	3.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9.2	16.3	10.2	8.2	6.1	1.5
	2건~5건 미만	(71)	66.2	25.4	2.8	4.2	1.4	0.9
	5건~10건 미만	(52)	40.4	44.2	1.9	9.6	3.8	2.4
	10건~50건 미만	(73)	38.4	39.7	1.4	6.8	13.7	1.5
	50건 이상	(62)	33.9	48.4	0.0	0.0	17.7	0.4

[BASE: 전체(n=307)]

[부록 표 45]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규모

(단위 : 개, %, 백만 원)

구 분		사례수	없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균
전 체		(307)	47.6	41.0	4.6	5.5	1.3	59.9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46.1	35.3	9.8	7.8	1.0	42.9
	대학	(205)	48.3	43.9	2.0	4.4	1.5	68.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00.0	0.0	0.0	0.0	0.0	0.0
	5천만원 미만	(126)	0.0	100.0	0.0	0.0	0.0	9.1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0.0	100.0	0.0	0.0	59.8
	1억원 ~ 10억원 미만	(17)	0.0	0.0	0.0	100.0	0.0	247.3
	10억원 이상	(4)	0.0	0.0	0.0	0.0	100.0	30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77.5	20.3	1.4	0.7	0.0	3.6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4.7	60.0	5.3	7.3	2.7	109.2
	전담조직 보유	(19)	10.5	42.1	21.1	26.3	0.0	79.4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9.2	32.7	4.1	4.1	0.0	18.5
	2건~5건 미만	(71)	66.2	22.5	4.2	7.0	0.0	24.1
	5건~10건 미만	(52)	40.4	50.0	5.8	1.9	1.9	34.3
	10건~50건 미만	(73)	38.4	52.1	4.1	4.1	1.4	138.9
	50건 이상	(62)	33.9	48.4	4.8	9.7	3.2	62.1

[BASE: 전체(n=307)]

[부록 표 46]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비율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없음	5% 미만	5%~10% 미만	10% 이상	응답 거절	평균
전 체		(307)	36.2	42.0	5.5	9.4	6.8	2.5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36.3	34.3	5.9	17.6	5.9	4.3
	대학	(205)	36.1	45.9	5.4	5.4	7.3	1.6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76.0	17.8	4.8	1.4	0.0	0.67
	5천만원 미만	(126)	0.0	66.7	4.8	13.5	15.1	3.6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0.0	21.4	7.1	64.3	7.1	14.66
	1억원 ~ 10억원 미만	(17)	0.0	76.5	11.8	5.9	5.9	2.03
	10억원 이상	(4)	0.0	75.0	25.0	0.0	0.0	2.23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56.5	32.6	5.8	5.1	0.0	1.6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0.7	49.3	4.0	12.0	14.0	3.2
	전담조직 보유	(19)	10.5	52.6	15.8	21.1	0.0	4.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53.1	16.3	8.2	16.3	6.1	2.6
	2건~5건 미만	(71)	53.5	28.2	8.5	8.5	1.4	2.2
	5건~10건 미만	(52)	28.8	50.0	3.8	13.5	3.8	3.2
	10건~50건 미만	(73)	27.4	49.3	2.7	11.0	9.6	3.5
	50건 이상	(62)	19.4	62.9	4.8	0.0	12.9	1.0

[BASE: 전체(n=307)]

## 5. 연구정보 보호 관련 정책수요

[부록 표 47]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보안 전문 인력 부족	보안 규정·지침의 미비	연구자들의 인식 부족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등 물리적 자원 부족	기업 중심의 관련 법·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움	기관장 및 경영진의 관심 부족	퇴직자 및 파견직 관리의 한계	협력사와의 이해 관계	없음	
<b>전체</b>	<b>(307)</b>	<b>31.6</b>	<b>16.9</b>	<b>16.0</b>	<b>11.7</b>	<b>10.1</b>	<b>3.9</b>	<b>1.0</b>	<b>0.3</b>	<b>8.5</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7.5	20.6	14.7	11.8	10.8	4.9	1.0	0.0	8.8
	대학	(205)	33.7	15.1	16.6	11.7	9.8	3.4	1.0	0.5	8.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37.0	21.2	17.1	9.6	3.4	3.4	1.4	0.0	6.8
	5천만원 미만	(126)	30.2	13.5	12.7	10.3	15.1	5.6	0.0	0.8	11.9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8.6	14.3	21.4	21.4	7.1	0.0	7.1	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9	11.8	17.6	23.5	35.3	0.0	0.0	0.0	5.9
보안 담당조직	10억원 이상	(4)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38.4	23.2	17.4	5.8	3.6	5.1	1.4	0.0	5.1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6.7	12.0	15.3	17.3	14.0	3.3	0.0	0.7	10.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전담조직 보유	(19)	21.1	10.5	10.5	10.5	26.3	0.0	5.3	0.0	15.8
	2건 미만	(49)	34.7	20.4	12.2	0.0	14.3	4.1	0.0	2.0	12.2
	2건~5건 미만	(71)	28.2	19.7	19.7	7.0	11.3	4.2	2.8	0.0	7.0
	5건~10건 미만	(52)	36.5	11.5	13.5	17.3	3.8	5.8	1.9	0.0	9.6
	10건~50건 미만	(73)	27.4	17.8	17.8	15.1	12.3	2.7	0.0	0.0	6.8
50건 이상	(62)	33.9	14.5	14.5	17.7	8.1	3.2	0.0	0.0	8.1	

[BASE: 전체(n=307)]

[부록 표 48] 연구정보 보호·관리에 있어 애로사항 - 1+2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보안 전문 인력 부족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 등 물리적 자원 부족	보안 규정·지침의 미비	기업 중심의 관련 법·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움	연구자들의 인식 부족	기관장 및 경영진의 관심 부족	퇴직자 및 파견직 관리의 한계	협력사와의 이해 관계	없음	
<b>전체</b>	<b>(307)</b>	<b>55.0</b>	<b>28.7</b>	<b>25.7</b>	<b>24.8</b>	<b>24.4</b>	<b>7.8</b>	<b>3.3</b>	<b>2.0</b>	<b>8.5</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54.9	28.4	28.4	25.5	22.5	7.8	2.0	2.9	8.8
	대학	(205)	55.1	28.8	24.4	24.4	25.4	7.8	3.9	1.5	8.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59.6	22.6	29.5	14.4	28.8	7.5	4.8	1.4	6.8
	5천만원 미만	(126)	52.4	31.7	24.6	31.0	18.3	9.5	1.6	0.8	11.9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64.3	42.9	21.4	28.6	21.4	0.0	7.1	14.3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35.3	41.2	11.8	58.8	23.5	5.9	0.0	5.9	5.9
보안 담당조직	10억원 이상	(4)	25.0	50.0	0.0	50.0	75.0	0.0	0.0	0.0	0.0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62.3	21.7	29.7	14.5	29.0	10.9	5.1	0.7	5.1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47.3	36.7	24.0	32.0	22.0	6.0	1.3	2.0	10.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전담조직 보유	(19)	63.2	15.8	10.5	42.1	10.5	0.0	5.3	10.5	15.8
	2건 미만	(49)	51.0	18.4	26.5	28.6	20.4	10.2	2.0	4.1	12.2
	2건~5건 미만	(71)	47.9	26.8	33.8	21.1	28.2	9.9	2.8	2.8	7.0
	5건~10건 미만	(52)	59.6	28.8	25.0	17.3	19.2	9.6	3.8	3.8	9.6
	10건~50건 미만	(73)	60.3	30.1	21.9	30.1	26.0	5.5	4.1	0.0	6.8
50건 이상	(62)	56.5	37.1	21.0	25.8	25.8	4.8	3.2	0.0	8.1	

[BASE: 전체(n=307)]

[부록 표 49]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기술·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연구정보 관리 체계 진단·컨설팅	기술·연구정보 보호 교육 및 상담	유출 피해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지원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 형사 처벌 조치 강화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기타	없음	
<b>전체</b>	<b>(307)</b>	<b>38.4</b>	<b>28.7</b>	<b>14.0</b>	<b>9.8</b>	<b>2.3</b>	<b>2.0</b>	<b>1.3</b>	<b>0.3</b>	<b>3.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36.3	33.3	12.7	12.7	1.0	1.0	2.0	0.0	1.0
	대학	(205)	39.5	26.3	14.6	8.3	2.9	2.4	1.0	0.5	4.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41.1	26.0	15.8	7.5	1.4	2.7	0.7	0.7	4.1
	5천만원 미만	(126)	34.9	31.7	11.1	12.7	4.0	0.8	1.6	0.0	3.2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14.3	35.7	14.3	21.4	0.0	7.1	7.1	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2.9	23.5	23.5	0.0	0.0	0.0	0.0	0.0	0.0
	10억원 이상	(4)	75.0	25.0	0.0	0.0	0.0	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41.3	25.4	14.5	8.7	1.4	2.9	0.7	0.7	4.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36.7	32.0	14.0	10.7	3.3	1.3	0.7	0.0	1.3
	전담조직 보유	(19)	31.6	26.3	10.5	10.5	0.0	0.0	10.5	0.0	10.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44.9	22.4	12.2	6.1	4.1	0.0	2.0	0.0	8.2
	2건~5건 미만	(71)	38.0	33.8	11.3	9.9	0.0	2.8	0.0	1.4	2.8
	5건~10건 미만	(52)	38.5	30.8	7.7	9.6	1.9	3.8	3.8	0.0	3.8
	10건~50건 미만	(73)	32.9	27.4	17.8	13.7	4.1	1.4	1.4	0.0	1.4
	50건 이상	(62)	40.3	27.4	19.4	8.1	1.6	1.6	0.0	0.0	1.6

[BASE: 전체(n=307)]

[부록 표 50]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요 - 1+2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기술·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연구정보 관리 체계 진단·컨설팅	기술·연구정보 보호 교육 및 상담	유출 피해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실효성 있는 행정 제재, 형사 처벌 조치 강화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확보 지원	기타	없음	
<b>전체</b>	<b>(307)</b>	<b>57.7</b>	<b>46.3</b>	<b>33.6</b>	<b>22.8</b>	<b>13.0</b>	<b>8.1</b>	<b>5.2</b>	<b>0.3</b>	<b>3.3</b>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56.9	52.0	27.5	25.5	15.7	4.9	4.9	0.0	1.0
	대학	(205)	58.0	43.4	36.6	21.5	11.7	9.8	5.4	0.5	4.4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61.6	43.2	33.6	21.9	11.6	8.9	2.7	0.7	4.1
	5천만원 미만	(126)	53.2	47.6	34.1	23.8	15.9	8.7	6.3	0.0	3.2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1.4	50.0	35.7	28.6	14.3	7.1	28.6	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17)	82.4	58.8	29.4	17.6	5.9	0.0	0.0	0.0	0.0
	10억원 이상	(4)	75.0	50.0	25.0	25.0	0.0	0.0	0.0	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61.6	44.2	29.7	22.5	13.8	8.7	3.6	0.7	4.3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54.7	49.3	38.7	24.0	13.3	6.0	6.0	0.0	1.3
	전담조직 보유	(19)	52.6	36.8	21.1	15.8	5.3	21.1	10.5	0.0	10.5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1.2	34.7	30.6	20.4	16.3	6.1	8.2	0.0	8.2
	2건~5건 미만	(71)	57.7	52.1	26.8	21.1	14.1	11.3	2.8	1.4	2.8
	5건~10건 미만	(52)	57.7	53.8	25.0	21.2	13.5	7.7	5.8	0.0	3.8
	10건~50건 미만	(73)	54.8	37.0	38.4	30.1	12.3	9.6	8.2	0.0	1.4
	50건 이상	(62)	58.1	53.2	45.2	19.4	9.7	4.8	1.6	0.0	1.6

[BASE: 전체(n=307)]

[부록 표 51] 연구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요

번호	내용
1	■ 학교 자체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인프라가 부족해 연구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인력의 법제화 및 운영에 대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연구 정보보호 성과 및 보호와 유출방지에 이바지 할 수 있음.
2	■ 정보유출 확인이 힘들고 법적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률 진행 경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이 필요함.
3	■ 연구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연구자라면 모두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구보안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지침과 매뉴얼이 현재 미비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및 전담조직, 인력 등이 부족함.
4	■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업무 표준지침 마련 필요함.
5	■ 보안관련 업무 전담인력 확보 필요함.
6	■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업무의 과다로 인해 연구보안관련 행정업무까지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해당 부처에서 소규모대학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7	■ 연구보안이 필요하다는 연구자 인식이 많이 부족함.
8	■ 최근 보안이슈는 정보화된 데이터베이스 보호가 최우선 과제임. 설문작성에서 일반보안과 정보 보안을 구분하였으면 함.
9	■ 연구정보 유출에 대한 정책 추진이 너무 많은 행정이 요구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함.
10	■ 연구자 연구보안 교육개설 및 참여기회 확대.
11	■ 보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플랫폼)등의 지원이 필요함.

## 6. 연구기관 영업비밀 인지도

[부록 표 52] 영업비밀 용어 사용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영업비밀 용어를 사용함	영업비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전 체		(307)	20.5	79.5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21.6	78.4
	대학	(205)	20.0	80.0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3.0	87.0
	5천만원 미만	(126)	27.0	73.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8.6	71.4
	1억원 ~ 10억원 미만	(17)	29.4	70.6
	10억원 이상	(4)	25.0	75.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3.0	87.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26.7	73.3
	전담조직 보유	(19)	26.3	73.7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14.3	85.7
	2건~5건 미만	(71)	16.9	83.1
	5건~10건 미만	(52)	17.3	82.7
	10건~50건 미만	(73)	23.3	76.7
	50건 이상	(62)	29.0	71.0

[BASE: 전체(n=307)]

[부록 표 53] 기관에서 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률상 정의의 일치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법률과 사용 중인 정의가 일치함	법률과 사용 중인 정의가 일치하지 않음
전 체		(63)	95.2	4.8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22)	95.5	4.5
	대학	(41)	95.1	4.9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9)	89.5	10.5
	5천만원 미만	(34)	97.1	2.9
	5천만원 ~ 1억원 미만	(4)	100.0	0.0
	1억원 ~ 10억원 미만	(5)	100.0	0.0
	10억원 이상	(1)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8)	100.0	0.0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40)	92.5	7.5
	전담조직 보유	(5)	100.0	0.0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7)	85.7	14.3
	2건~5건 미만	(12)	91.7	8.3
	5건~10건 미만	(9)	100.0	0.0
	10건~50건 미만	(17)	100.0	0.0
	50건 이상	(18)	94.4	5.6

[BASE: 영업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관(n=63)]

[부록 표 54] 영업비밀이 법률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법적요건 인지 여부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3가지 법적요건을 알고 있음	3가지 법적요건을 모르고 있음
전 체		(307)	54.1	45.9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58.8	41.2
	대학	(205)	51.7	48.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43.2	56.8
	5천만원 미만	(126)	63.5	36.5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64.3	35.7
	1억원 ~ 10억원 미만	(17)	70.6	29.4
	10억원 이상	(4)	50.0	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44.2	55.8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61.3	38.7
	전담조직 보유	(19)	68.4	31.6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38.8	61.2
	2건~5건 미만	(71)	46.5	53.5
	5건~10건 미만	(52)	57.7	42.3
	10건~50건 미만	(73)	57.5	42.5
	50건 이상	(62)	67.7	32.3

[BASE: 전체(n=307)]

[부록 표 55] 영업비밀로서 연구 '부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보호 가능 여부를 알고 있음	보고 가능 여부를 모르고 있음
전 체		(307)	64.5	35.5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67.6	32.4
	대학	(205)	62.9	37.1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54.8	45.2
	5천만원 미만	(126)	71.4	28.6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64.3	35.7
	1억원 ~ 10억원 미만	(17)	88.2	11.8
	10억원 이상	(4)	100.0	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54.3	45.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72.7	27.3
	전담조직 보유	(19)	73.7	26.3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49.0	51.0
	2건~5건 미만	(71)	56.3	43.7
	5건~10건 미만	(52)	63.5	36.5
	10건~50건 미만	(73)	69.9	30.1
	50건 이상	(62)	80.6	19.4

[BASE: 전체(n=307)]

[부록 표 56]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 유무

(단위 : 개, %)

구 분		사례수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를 보유함	영업비밀·비밀자료 관리 부서를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전 체		(307)	30.6	69.4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30.4	69.6
	대학	(205)	30.7	69.3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8.5	81.5
	5천만원 미만	(126)	42.1	57.9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21.4	78.6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2.9	47.1
	10억원 이상	(4)	50.0	50.0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2.3	87.7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44.7	55.3
	전담조직 보유	(19)	52.6	47.4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24.5	75.5
	2건~5건 미만	(71)	21.1	78.9
	5건~10건 미만	(52)	28.8	71.2
	10건~50건 미만	(73)	38.4	61.6
	50건 이상	(62)	38.7	61.3

[BASE: 전체(n=307)]

[부록 표 57]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단위 : 개, %, 점)

구 분		사례수	약함 (0~4)	보통 (5)	강함 (6~10)	평균 (10점)
전 체		(307)	13.7	33.9	52.4	5.8
기관유형	공공연구기관	(102)	14.7	31.4	53.9	5.9
	대학	(205)	13.2	35.1	51.7	5.7
연구보안 예산 규모	예산 없음	(146)	15.8	37.7	46.6	5.5
	5천만원 미만	(126)	12.7	31.0	56.3	6.0
	5천만원 ~ 1억원 미만	(14)	7.1	28.6	64.3	6.1
	1억원 ~ 10억원 미만	(17)	5.9	29.4	64.7	6.1
	10억원 이상	(4)	25.0	25.0	50.0	5.3
보안 담당조직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138)	13.0	35.5	51.4	5.6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150)	14.0	34.7	51.3	5.8
	전담조직 보유	(19)	15.8	15.8	68.4	6.2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2건 미만	(49)	6.1	38.8	55.1	5.9
	2건~5건 미만	(71)	16.9	42.3	40.8	5.3
	5건~10건 미만	(52)	19.2	25.0	55.8	5.9
	10건~50건 미만	(73)	9.6	32.9	57.5	6.1
	50건 이상	(62)	16.1	29.0	54.8	5.8

[BASE: 전체(n=307)]

## 첨부 2 조사표

기관명 :

--	--	--	--	--	--	--	--	--	--

##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연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②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귀 기관에서 기재해주신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그 비밀이 반드시 보장되오며**, 통계 분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 8.

### ▣ 본 조사 시 유의사항

- ▶ 본 조사는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 ▶ 조사 내용 중 특별한 안내문이 없는 한 모든 문항에 답해주십시오.
- ▶ 각 항목마다 지시문을 잘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소정의 답례품을 증정합니다.  
(답례품은 설문조사가 모두 완료된 후 일괄 발송됩니다. 답례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응답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해주세요.)
- ▶ 설문 작성과 관련한 문의는 조사 수행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기관수행  
기관

문의처

(실사) 정연주 과장 / (연구기획) 김홍건 부장, 신유진 대리  
(전화) 02-6374-0701 / (이메일) ip@metrix.co.kr / (팩스) 02-6919-2648



### III. 연구정보 보호(관리)활동 현황

◆ **문3-1, 문3-2**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과제(이하 '보안과제')를 제외한 **일반과제 및 기타과제**(이하 '일반과제 등')의 보호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 비밀관리활동 현황

- ◆ 비밀관리활동이란 내·외부 인력의 접근권한 설정, 소지품 검사, 문서의 보안등급 지정 등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는 노력과 직결되는 활동입니다.
- ◆ 법적 분쟁상황에서 영업비밀의 3가지 법적요건(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중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비밀관리활동은 영업비밀 보호활동 중 가장 중요합니다.

**문3-1. 일반과제 등의 연구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활동 중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구분		수행 여부
문3-1-1. 출입통제	① 외부인 출입통제	<input type="checkbox"/>
	② 접근권한이 없는 내부인 출입통제 (A연구실 연구원의 B연구실 출입통제)	<input type="checkbox"/>
	③ 입구 소지품 검사 및 봉인조치 (스마트폰, 카메라, 녹음기, 휴대용 저장장치)	<input type="checkbox"/>
	④ 출구 소지품 검사 (스마트폰, 카메라, 녹음기, 휴대용 저장장치, 비밀문서)	<input type="checkbox"/>
	⑤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	<input type="checkbox"/>
문3-1-2. 자료관리	① 문서등급지정 (비밀 1급, 2급, 3급 등 세부분류, 대외비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② 전자문서 관리 (인쇄,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이메일 등 관리, 외부 이메일 차단 등)	<input type="checkbox"/>
	③ 비전자문서 관리 (복사, 반출, 폐기 등)	<input type="checkbox"/>
	④ 전산상 접근통제 (내·외부망 분리 등)	<input type="checkbox"/>
문3-1-3. 인적관리	①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징구 및 보관	<input type="checkbox"/>
	② 외부자(협력기관, 컨설팅, 계약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input type="checkbox"/>
	③ 연구자의 경쟁기관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	<input type="checkbox"/>
	④ 정기적으로 연구정보 보안 교육 실시	<input type="checkbox"/>
	⑤ 퇴직 시 비밀보호서약서 징구, 퇴직자 인터뷰 등 퇴직자 관리	<input type="checkbox"/>
문3-1-4. 기술적관리	① 정보시스템(서버·DB 등)에 대한 로그인을 기록하고 보관	<input type="checkbox"/>
	② 정보시스템의 보안설정(방화벽, 백신 소프트웨어 등) 점검	<input type="checkbox"/>
	③ 정보시스템 중 연구정보 저장 영역에 대한 권한·암호 등 설정	<input type="checkbox"/>
	④ 정보시스템 관리 절차 마련	<input type="checkbox"/>
	⑤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input type="checkbox"/>

문3-2. 귀 기관은 일반과제 등의 연구정보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①	②	③	④	⑤

■ 연구보안 교육 현황

문3-3. 연구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보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2021년 기준)

(1) 연구보안 교육 실시 여부	① 예	(2) 연구보안 교육 주기	① 연 1회	② 분기별 1회	③ 월 1회	④ 수시
	② 아니오 (☞문3-7로 이동)					

**【참고】**  
 \* 연구보안 : 「연구기획, 수행, 성과창출 등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수행 중 혹은 수행결과로 도출된 연구정보 및 성과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활동

문3-4. (문3-3의 ① 응답자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에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구분		교육 대상자
대학	① 교수	<input type="checkbox"/>
	② 내국인 대학·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③ 외국인 대학·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④ 관리(행정)직원	<input type="checkbox"/>
공공연구기관	⑤ 연구책임자	<input type="checkbox"/>
	⑥ 일반 연구원	<input type="checkbox"/>
	⑦ 공동연구자	<input type="checkbox"/>
	⑧ 관리(행정)직원	<input type="checkbox"/>

문3-5. 연구보안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 ① 기술보호 관련 법률\*
- ② 타 기관의 기술·연구자료 유출 사례
- ③ 연구노트 작성·관리 방법
- ④ 연구자료의 보관·폐기 방법
- ⑤ 기타 ( )

**【참고】**  
 \*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문3-9-1. (문3-9 ① “예” 응답자만) 해당 규정(지침)이 보안과제\*가 아닌 일반과제 등\*\* 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b>【참고】</b>
* <b>보안과제</b>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과제
** <b>일반과제 등</b> : 보안과제를 제외한 일반과제 및 기타 과제

■ 외국인 연구원(유학생) 관리 현황

문3-10. 연구수행에 있어 외국인이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문3-15로 이동)

문3-11. 귀 기관에서 연구정보의 보안을 위해 외국인 연구원(유학생) 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이행되고 있음	잘 이행되고 있음	보통	잘 이행되지 않음	전혀 이행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문3-12. 귀 기관은 외국인 연구원 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3-13. 외국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보안서약서 등의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작성
- ②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작성
- ③ 작성하지 않음

문3-14. 외국인 연구원에 대해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출입 가능한 지역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을 별도로 발급하고 있습니까?

- ①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발급
- ② 일반과제 등에 대해서도 발급
- ③ 발급하지 않음



**문3-18-2. (문3-18-1 ① “예” 응답자만)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까? (복수응답 가능)**

- ① 변호사 및 외부 전문가와 상담
- ② 항의(직접 방문, 유선 연락 등의 항의)
- ③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 ④ 언론매체 활용
- ⑤ 합의·협상제안
- ⑥ 민사소송
- ⑦ 형사고소·고발
- ⑧ 보안규정 및 시스템 정비
- ⑨ 유출한 대상에 대한 무대응 (☞ 문3-18-3로 이동)
- ⑩ 기타 ( )

**문3-18-3. (문3-18-2 ⑨ “유출한 대상에 대한 무대응” 응답자만)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시간과 비용이 부담돼서
- ② 대응절차를 몰라서
- ③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서
- ④ 피해규모가 작아서
- ⑤ 상대 기관(기업)과 관계유지
- ⑥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 ⑦ 기타 ( )

## IV. 연구정보 보안 인프라 현황

### ■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

문4-1. 연구보안 담당조직 및 인력\*의 보유 여부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 기준)

보안 담당조직	① 보안담당조직 미보유 (☞문 4-6으로 이동)		
	② 보유하고 있음	조직 및 인력의 형태 (☞문4-2로 이동)	① 연구보안만 담당하는 전담조직 보유 <input type="checkbox"/> ② 특정 부서가 소관업무의 일부로 담당 <input type="checkbox"/>

#### 【참고】

\* 연구보안 담당조직 또는 인력은 연구 기획, 수행, 성과창출 등 연구개발 전 단계에서 수행 중 혹은 수행결과로 도출된 연구정보 및 성과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을 의미

문4-2. (문4-1 ② “보유하고 있음” 응답자만)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현황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해당란에 숫자 기입, 없으면 0 표시)

구 분	전담인력*	겸임인력**	필요인력***
전체 보안 담당인력 수	명	명	명

#### 【참고】

\* 전담인력 : 보안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

\*\* 겸임인력 : 기타 부서 업무(총무, 인사, R&D 기획 등)를 하면서 보안 관련 업무를 겸임하는 인력

\*\*\* 필요인력 : 보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데 필요한 전체 전담 인력 수(전담인력 수 + 부족 인력 수)

### ■ 연구보안 담당인력의 직무교육

문4-3. 연구보안 담당인력에 대한 연구보안 직무교육 현황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

직무교육 현황	① 실시하고 있음	직무교육 형태	① 기관 자체적으로 실시 <input type="checkbox"/>
			② 외부기관을 통해 실시 <input type="checkbox"/>
② 실시하지 않음 (☞문 4-6으로 이동)			

문4-4. (문4-3 ① “실시하고 있음” 응답자만) 실시 중인 교육내용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당하는 것 모두에 V표시)

구 분	실시 중인 교육내용
① 기관의 보안규정·지침	<input type="checkbox"/>
② 전자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	<input type="checkbox"/>
③ 비전자문서 관리** 요령	<input type="checkbox"/>
④ 연구정보 보호 제도	<input type="checkbox"/>
⑤ 기술·연구정보 분쟁(소송)·판례 정보	<input type="checkbox"/>
⑥ 보안서약서 작성·운영	<input type="checkbox"/>
⑦ 출입 권한에 따른 출입가능 장소에 대한 교육	<input type="checkbox"/>
⑧ 휴대품 검사 등 보안검색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input type="checkbox"/>

**【참고】**  
 \* 전자문서 관리 : 문서보안시스템, USB 등 승인된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외부로 e-mail 발송 차단 등  
 \*\* 비전자문서 관리 : 내부문서·자료의 복사, 반출, 폐기 등

문4-5. 연구보안인력 대상 추가적인 직무교육을 원하는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은 무엇  
 인가요? 아래 보기 항목 중 우선순위대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기관의 보안규정·지침	② 전자문서 및 연구자료 관리 요령
③ 비전자문서 관리 요령	④ 연구정보 보호 제도
⑤ 기술·연구정보 분쟁(소송)·판례 정보	⑥ 보안서약서 작성·운영
⑦ 출입 허가 등록 절차	⑧ 휴대품 검사 등 보안검색
⑨ 기타 ( )	

**■ 연구보안 예산**

문4-6. 귀 기관의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과 예산규모를 답변해주시시오.  
(2021년 기준 응답)

- 예산비율 : ( )%
- 예산규모 : 약 \_\_\_\_\_ 원

**【참고】**  
 \* 연구보안 교육, 보안시스템(정보통신망 등) 유지보수, 법률자문 등 연구보안 관련 총 예산을 대략 추정

문4-7. 귀 기관의 연구보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비 총액 대비 연구보안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율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비율 : ( )%



## VI. 연구정보 유출 피해경험

◆ 피해경험에 대해 기재하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로 보호되며, 현황 분석 및 정책수립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6-1. 귀 기관은 최근 5년간('17년부터 '21년도까지) 연구정보 유출 피해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6-2로 이동)                      ② 없다 (☞ 문7-1로 이동)

**문6-2. (문6-1의 ① “있다” 응답자만) 귀 기관은 연구정보 유출 피해를 어디에서 경험하였습니까?**

- ① 국내 (☞ 문6-3으로 이동)                      ② 해외                      ③ 국내와 해외 모두

**문6-2-1. (문6-2의 ②, ③ 응답자만) 해외에서 연구정보가 유출된 지역(국가)은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최근 5년간 연구정보가 유출된 지역(국가)을 모두 나열하여 주십시오.)**

국가명 : \_\_\_\_\_

※ 답변 예시 : 미국, 중국, 영국, 베트남 등 국가명을 기입하여 주시고, 정확한 국가명을 모르시는 경우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지역명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출된 지역(국가)을 모르시는 경우 '모름'을 기재해주세요.

**문6-3. 최근 5년간('17년부터 '21년도까지) 연구정보 유출로 인해 귀 기관이 겪은 피해 건수는 몇 건입니까?**

구 분	국내		해외	
피해 건수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건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건

**【참고】**

\* 피해 건수는 연구정보 유출 '사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연구정보에 대한 피해는 **피해 발생 지역**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개별 건으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연구정보에 대해 **침해 주체**가 복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산정합니다.  
 단, **침해 주체**가 동일한 사건인 경우 대응 횟수가 여러 번이더라도 동일 건으로 처리합니다.

**문6-4. 피해를 입은 연구정보 분야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기계    ② 정보통신    ③ 전기·전자  
 ④ 화학    ⑤ 생명공학    ⑥ 기타 (    )





문6-12. 최근 5년간('17년부터 '21년도까지) 연구정보 유출로 인해 귀 기관이 겪은 총 피해 규모\*(추산 금액)는 얼마나 되십니까?

(※ 백만 원 미만 금액은 소수점 단위로 작성해주세요.)

구 분	국내		해외	
총 피해 규모	파악 안 됨 <input type="checkbox"/>	백만 원	파악 안 됨 <input type="checkbox"/>	백만 원

**【참고】**

\* 피해규모는 연구개발에 투입한 자원 및 그 성과를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기대수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산

문6-12-1. 해당 연구과제(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투입한 자원 대비 (문6-12)의 피해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초과 가능)

국내	해외
( )%	( )%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

※ 응답을 완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답례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관리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 ▣ 개인정보 수집·활용 사항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부서/직위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2022년 12월 까지
휴대전화, E-mail	향후 데이터 검증 시 이용 조사 답례품 발송 목적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위의 표와 같이 제공된 사항은 본인 식별 및 조사 답례품 발송에 필요한 사항이며, 거부하실 경우 답례품 발송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2년    월    일

성명	소속	부서/직위
	휴대전화	E-mail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23년 3월

발행인 | 특허청장 이 인 실

발행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www.kipo.go.kr)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이용허락 유형	표시 마크	이용허락범위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care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2022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연구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ISBN : 979-11-6884-104-8 13500

DOI : 10.8080/P9791168841048